

제1권 제1호
2010

한국이민학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연구논문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쟁점과 전망

■ 설동훈

비전문 외국인력제도 활용 실태 및 쟁점

■ 이규용

무국적의 세계적 실태와 대응

■ 이철우

일본 제국 시대의 이주의 정치:
조선인 이주자들의 참정권 사례를 중심으로

■ 이충훈

해외한인 청소년과 민족정체성의 의미: ■ 조혜영 · 박동성 · 양한순 · 최진숙
한국을 일시 방문 중인 해외 한인 청소년들과의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한국이민학회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Association

한국이민학

2010년 제1권 제1호

《한국이민학》은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의 기관지로서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발간한다. 논문기고자격은 원칙적으로 한국이민학회의 회원으로 제한한다. 단, 비회원이 투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전제로 한다.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원고 및 집필요강은 본지의 뒷 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한국이민학》의 정기구독을 원하는 개인 및 단체는 다음 주소로 연락하면 된다.

☎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로 567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 연구실 내 한국이민학회 사무국

전화: (063) 270-2917 팩스: (063) 270-2921

전자우편: kimanet2007@gmail.com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imanet.org>

회원연회비

일반회원: 3만원

대학원생: 2만원

계좌번호: 기업은행 221-253841-04-011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학회 임원진

회 장 단

회 장 이해경 (배재대학교)

차기회장 한경구 (서울대학교)

부 회 장 정기선 (IOM이민정책연구원) 허 재 준 (한국노동연구원)

이철우 (연세대학교) 박 경 태 (성공회대학교)

감 사 하갑래 (단국대학교) 이 정 혜 (IOM한국대표부)

이 사

총무이사 설동훈 (전북대학교) 편집이사 한건수 (강원대학교)

연구이사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이사 이진영 (인하대학교)

섭외이사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이사 김현미 (연세대학교)

한국이민학

2010년 제1권 제1호

연구논문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쟁점과 전망 설동훈	5
비전문 외국인력제도 활용 실태 및 쟁점 이규용	29
무국적의 세계적 실태와 대응 이철우	49
일본 제국 시대의 이주의 정치:	
조선인 이주자들의 참정권 사례를 중심으로 이충훈	103
해외한인 청소년과 민족정체성의 의미:	
한국을 일시 방문 중인 해외 한인 청소년들과의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조혜영 · 박동성 · 양한순 · 최진숙	139

편집위원

한건수(위원장, 강원대) 설동훈(부위원장, 전북대) 김현미(연세대)
서정민(하와이대) 윤홍식(인하대) 이규용(노동연구원) 이승미(우석대)
이정환(청주대) 조현미(경북대) 최현(제주대) 최홍엽(조선대)

편집간사

박순영(전북대)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Vol.1 No.1 2010

Contents

ARTICLES

- The Employment Permit Program for Foreigners in Korea, 2004-2010:
Issues and Prospects
I Dong-Hoon Seol
 - An Analysis of the Foreign Workers Labor Market in Korea
I Kyu-Yong Lee
 - Statelessness: The Worldwide Situation and Global Responses
I Chulwoo Lee
 - Politics of Immigration in the Imperial Japan:
The Case of Immigrant Voting Rights for Chosun Immigrants
I Choonghoon Lee
 - Ethnic Korean Youths Abroad and Their Meanings of Ethnic Identity:
Focusing on In-depth Interviews with Ethnic Korean Youths Visiting Korea
I Hye-Young Jo, Dong-Sung Park, Han-Sun Yang, and Jin-Sook Choi
-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Association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쟁점과 전망*

설동훈**

대한민국 국회는 2003년 7월 31일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그 법에 근거하여,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총칭하는 노동 3권을 갖게 되었고, 상여금, 퇴직금 등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논문은 고용허가제의 핵심 요소를 살펴본다. 그리고 노동시장 보완성 원칙의 관철, 교체순환정책의 견지, 외국인력 선발 시 산업계 수요 반영, 사업장 이동의 규제, 불법체류자 억제, 산업재해 감소 등 고용허가제 운용 과정에서 비롯된 여섯 가지 쟁점을 고찰한다. 결론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제도의 발전 전망을 제시한다.

주제어: 외국인 고용허가제, 취업허가, 외국국적동포 방문취업제, 외국인력 정책, 이주노동자, 노동시장.

* ‘외국인력 정책 포럼’ 제1차 회의(서울 팔레스호텔 다이너스티B홀, 2010년 4월 23일)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I. 서론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한국의 ‘생산직 외국인노동자 고용·취업 제도’다(법제처, 2010).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써,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이라고도 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2004년 8월 17일부터 기존 제도인 ‘외국인 산업연수제’와 병행하여 시행되었으나, 2007년 1월 1일부터 일원화되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산업연수제의 치명적 문제점, 즉 송출비리, 불법체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전 지구적 기준을 준수하는 외국인력제도로 평가된다(유길상·박영범·어수봉·박성재, 2007; 설동훈, 2009a).

한편, 고용허가제의 특례 제도로써 외국국적동포 방문취업제가 2007년 3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Seol and Skrentny, 2009b). 방문취업제는 중국과 구소련지역 거주 동포 등에 대해 5년간 유효한 복수 사증을 발급, 1회 입국하여 3년간 계속하여 체류·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한국에서 선진기술 습득 및 경제적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거주국 귀환 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방문취업제 실시 이후, 취업활동범위가 기존 19개 업종에서 32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되었고,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방문 취업이 가능해졌다. 그렇지만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동포들이 일시에 대거 입국할 경우 국내 노동시장의 교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내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에 대해서는 사증 쿼터를 설정하여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설동훈, 2008a). 고용허가제의 근거 법률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다.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 중에서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취업에 관해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그 법은 외국인노동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외국인인력정책과)다.

<표 1>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2009년 12월말 기준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총 461,203명인데, 그것은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 수 1,168,477명의 39.5%다. 그 중 일반 외국인노동자는 158,198명, 동포는 303,005명이다. <표 2>에는 2005년 이후 외국인노동자 수의 변화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일반 외국인노동자(E-9)와 동포(H-2) 체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다가, 2008년 경기 침체 이후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 구성 비율 면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2007년 3월 방문취업제 시행 이후 동포 규모가 급증하여, 비전문인력 중 동포 비율이 일반 외국인노동자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는 점이다.

<표 1>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수, 2009년

(단위: 명)

외국인력 (690,611)					배우자, 유학, 관광 등
전문인력 (E-1~E-5, E-7)	비전문인력 (461,203)		불법체류자	단기취업 등*	
	일반	동포			
35,536	158,198	303,005	177,955	15,917	477,866

* 단기취업 등: 단기취업(C-4), 산업연수(D-3), 기업투자 연수(D-8), 연수취업자(E-8), 예술홍행(E-6), 선원 취업(E-10).

자료: 노동부(2010).

<표 2> 한국의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노동자 수, 2005~2009년

(단위: 명,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체	104,348 (100.0%)	199,620 (100.0%)	362,460 (100.0%)	454,431 (100.0%)	461,203 (100.0%)
일반(E-9)	52,305 (50.1%)	115,122 (57.7%)	134,012 (37.0%)	156,429 (34.4%)	158,198 (34.3%)
동포(H-2)*	52,043 (49.9%)	84,498 (42.3%)	228,448 (63.0%)	298,002 (65.6%)	303,005 (65.7%)

* 특례고용허가제 취업현황은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은 자(2007년 2월까지) 및 방문취업(H-2)자격으로 입국한 자 중에서 취업교육 이수 후 구직등록을 한 자를 기준으로 작성(2007년 3월 이후 기준변경).

자료: 노동부(2010).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노동자의 취업 실태는 다음과 같다(노동부, 2010). 업종별로 볼 때, 일반 외국인은 대부분이 제조업(89.9%)에 종사하고, 동포는 서비스업(45%), 건설업(28%), 제조업(14%)에 주로 종사한다. 기업규모별로는 일반 외국인과 동포 모두 3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취업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일반 66%, 동포 87%). 국적별 분포는, 일반 외국인의 경우 베트남(27%), 태국(14%), 필리핀(13%), 인도네시아(13%), 스리랑카(8%) 등 순이고, 동포는 중국(98%), 러시아·CIS국가(2%)의 순이다. 성별 분포를 보면, 일반 외국인은 남자 90%, 여자 10%이고, 동포는 남자 51%, 여자 49%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기본 원칙, 주요 행위자, 외국인노동자 도입 절차 등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그리고 노동시장 보완성 원칙의 관철, 교체순환정책의 견지, 외국인력 선발 시 산업계 수요 반영, 사업장 이동의 규제, 불법체류자 억제, 산업재해 감소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 운용에 관한 여섯 가지 쟁점을 고찰한다. 결론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II.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

1. 기본 원칙

고용허가제는 다섯 개의 기본원칙을 가진다(임현진·설동훈, 2000; 이규용·유길상·이해춘·설동훈·박성재, 2007). 첫째는 ‘국내 노동시장 보완성의 원칙’인데, 국내 노동시장의 빈자리를 메우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것을 뜻한다.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은 내국인노동자의 일자리 상실, 그리고 임금과 근로조건 저하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내국인 우선고용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외국인노동자 도입 이전에는 ‘사업주에게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labor market test)를 부여하고(Wasem, 2007 참조), 도입 이후에는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규제’한다.

둘째는 ‘국적에 따른 차별처우금지의 원칙’인데, 사업주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Seol, 2005). 그것은 ‘균등대우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산업연수생' 신분 때문에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였으나, 고용허가제도에 의해 합법적으로 취업하는 외국인은 '근로자'로서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사회보험 및 노동관계법에 의해 내국인과 동등하게 처우된다. 외국인노동자에게 한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주가 한국인노동자보다 그들의 고용을 더 선호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다.

셋째는 '정주화 방지의 원칙'이다. 정부는 저숙련 외국인노동자의 취업을 1회에 3년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만 허용하여 그들이 정착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재취업은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 2010년 6월 4일부터는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노동자"는 "1회에 한정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노동자의 취업기간은 최장 5년 미만으로 연장되었다. 외국인노동자의 취업 기간을 연장하고, 재취업 시 출국 의무 요건을 없앤 것은 사용자와 외국인노동자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지만, 단신 이주노동자만 허용하고 '가족 동반'을 허용하지 않는 현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Seol and Skrentny, 2009a).

넷째는 '외국인노동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송출비리 방지의 원칙'이다. 외국인노동자 선정·도입절차를 투명하게 하여 외국인노동자 충원 과정에서의 송출 비리를 방지하려는 것이다(임현진·설동훈, 2000).

다섯째는 '산업구조 조정 저해 방지의 원칙'이다. 그것은 외국인노동자의 도입이 국내의 산업 및 기업 구조 조정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외국인노동자를 저임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값싼 외국인력에 안주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오늘날 국가와 기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내외의 경제사회환경 속에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가기 위하여 끊임없는 개혁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이 한국의 경쟁력이 없는 사양산업을 연명하게

하여 경제의 고부가가치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산업구조의 조정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이규용 · 조동훈 · 박성재 · 설동훈 · 주무현, 200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명시적으로 ‘산업구조 조정 저해 방지의 원칙’을 천명하지는 않고 있으나, 이 원칙은 고용허가제를 채택한 나라들이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에서도 외국인력정책을 추진하는 데 묵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주요 행위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는 외국인노동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설치할 근거 규정이 있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에서는 매년 국내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하여 적정 외국인노동자 도입규모 · 업종을 결정하고 인력도입국가를 선정한다. 그리고 외국인력 고용제도의 운영 및 외국인노동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는 정부기관, 노사단체, 시민단체, 학계 대표자 등 21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표 3 참조). 그리고 법률에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주한 송출국가 노무관 회의’와 ‘취업교육기관 협의회’가 있다.

〈표 3〉 외국인력 관련 협의체, 2010년 6월

명칭	개최시기	참석자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상 · 하반기 각 1회	법무부 등 정부기관(12명)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상 · 하반기 각 1회	정부기관, 노사단체, 시민단체, 학계(21명)
주한 송출국가 노무관 회의	상 · 하반기 각 1회	고용노동부, 15개 송출국가 노무관
취업교육기관 협의회	2개월 마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취업교육기관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노동자 선발 · 도입은 한국정부와 송출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 인력송출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수행한다. 즉, 각

중 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 인력송출기관의 참여를 배제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의 송출기관은 15개 송출국별로 1개씩 있는데(표 4), 네팔 노동취업촉진국(DOLEP), 동티모르 해외취업사무소(OEO), 몽골 해외인력송출센터(COE), 미얀마 해외인력송출공사(Shwe Inn Wa), 방글라데시 해외취업서비스공사(BOESL), 베트남 해외취업센터(COW), 스리랑카 해외취업국(SLBFE), 우즈베키스탄 해외인력이주청(AFLMA), 인도네시아 송출보험청(NBPLOW), 중국 국제경제협작사무국(EBIEC), 캄보디아 인력훈련 및 해외송출청(MTOSB), 키르기스스탄 정보상담센터(ICC), 태국 취업국(DOE), 파키스탄 해외취업청(OEC), 필리핀 해외취업청(POEA) 등이다.

〈표 4〉 외국인력 송출기관, 2010년 6월

송출국	송출기관
네팔	노동취업촉진국(Department Of Labor Employment Promotion: DOLEP)
동티모르	해외취업사무소(Overseas Employment Office: OEO)
몽골	해외인력송출센터(Center for Overseas Employment: COE)
미얀마	해외인력송출공사(Shwe Inn Wa Services Agency Co. Ltd: Shwe Inn Wa)
방글라데시	해외취업서비스공사(Bangladesh Overseas Employment and Service Limited: BOESL)
베트남	해외취업센터(Center for Overseas Workers: COW)
스리랑카	해외취업국(Sri Lanka Bureau of Foreign Employment: SLBFE)
우즈베키스탄	해외인력이주청(Agency for Foreign Labor Migration Affairs: AFLMA)
인도네시아	송출보험청(National Board for the Placement and Protection of Indonesian Overseas Workers: NBPLOW)
중국	국제경제협작사무국(Executive Bureau of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EBIEC)
캄보디아	인력훈련 및 해외송출청(Manpower Training and Overseas Sending Board: MTOSB)
키르기스스탄	정보상담센터(Information Consulting Center: ICC)
태국	취업국(Department of Employment: DOE)
파키스탄	해외취업청(Overseas Employment Corporation: OEC)
필리핀	해외취업청(Philippine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 POEA)

자료: 법제처(2010).

정부는 외국인노동자 출입국 지원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운용하

고 있다. 또 고용허가제에서는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에 입국한 후 사업체로 이동하기 이전에 취업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업교육(20시간 이상)은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 기초기능 등으로 구성되며 외국인노동자의 조기 국내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다. 취업교육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국제노동협력원, 중소기업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 여섯 개다(표 5).

〈표 5〉 외국인노동자 취업교육기관, 2010년 6월

취업교육기관	취업교육 대상 외국인노동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국적동포
한국국제노동협력원	제조업(베트남, 몽골, 태국, 중국), 냉장·냉동 창고업
중소기업중앙회	제조업(베트남, 몽골, 태국, 중국 제외), 호텔업 및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농협중앙회	농축산업
수협중앙회	어업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한편, 정부는 사업자를 대신하여 외국인노동자 도입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고용허가제 업무 대행기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공기관)과 업종별 사업주 단체(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를 지정하였다. 사업주 단체에서 외국인노동자 도입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지만, 공공성 훼손의 가능성이 발생하므로, 정부에서는 그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010년 4월 10일, 정부는 사용자가 대행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확대하였다. <표 6>은 고용허가제 업무대행기관의 위탁·대행업무 서비스 내용을 보여준다.

한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고용 및 체류지원은 원칙적으로 노동부, 법무부 등 국가기관과 송출국가(기관), 고용허가제 업무대행기관, 비영리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 등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담당하고 있다. 산업연수제에서 외국인노동자로부터 사후 관리비 명목의 금품을 받아왔던 민간영리송출업체는 외국인노동자 관리에 개입할 수 없다.

〈표 6〉 고용허가제 업무대행기관의 위탁·대행업무 서비스 내용, 2010년 6월

가. 신규 외국인노동자

업무수행 범위	서비스		구분	기관
·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지원	노동자 도입위탁 (40,000원)		필수	공단
· 내국인구인신청 /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신청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수령	입국 전 (31,000원)	각종 신청대행 (61,000원)	선택	대행기관
· 고용변동신고 / 재고용신청,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 체류기간 연장 신청 · 외국인노동자 업무상 재해 시 산재신고, 사망신고 등	입국 후 (30,000원)			
· 통역 지원, 고충상담 및 처리 · 외국인노동자의 업무 외 질병 및 상해수습 지원 등 · 전용보험가입 및 지급신청	편의제공 (72,000원)		선택	대행기관

※ 신규 외국인노동자의 취업교육비는 별도임

나. 재고용 외국인노동자 또는 사업장 변경자

대행업무		대행 세부업무		비고	기관	1인당 수수료
재고용 입국자 및 사업장 변경자	재고용 행정 대행	·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서 발급 신청 · 체류기간 연장 신청 · 고용변동 신고,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	재고용자 고용 시	선택	대 행 기 관	20,000원 (2년 미만)
		· 외국인노동자 업무상 재해 시 산재· 사망신고 · 각종 정보제공 등	사업장 변경자 고용 시	선택		800원× 잔여체류 기간(월)
	편의 제공	· 통역지원 · 사용자의 고충상담 · 전용 보험가입 및 보험금신청지원 · 외국인노동자의 업무 외 질병 및 상 해 수습지원 ·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등	재고용자 고용 시	선택		48,000원 (2년 미만)
			사업장 변경자 고용 시	선택		2,000원× 잔여체류 기간(월)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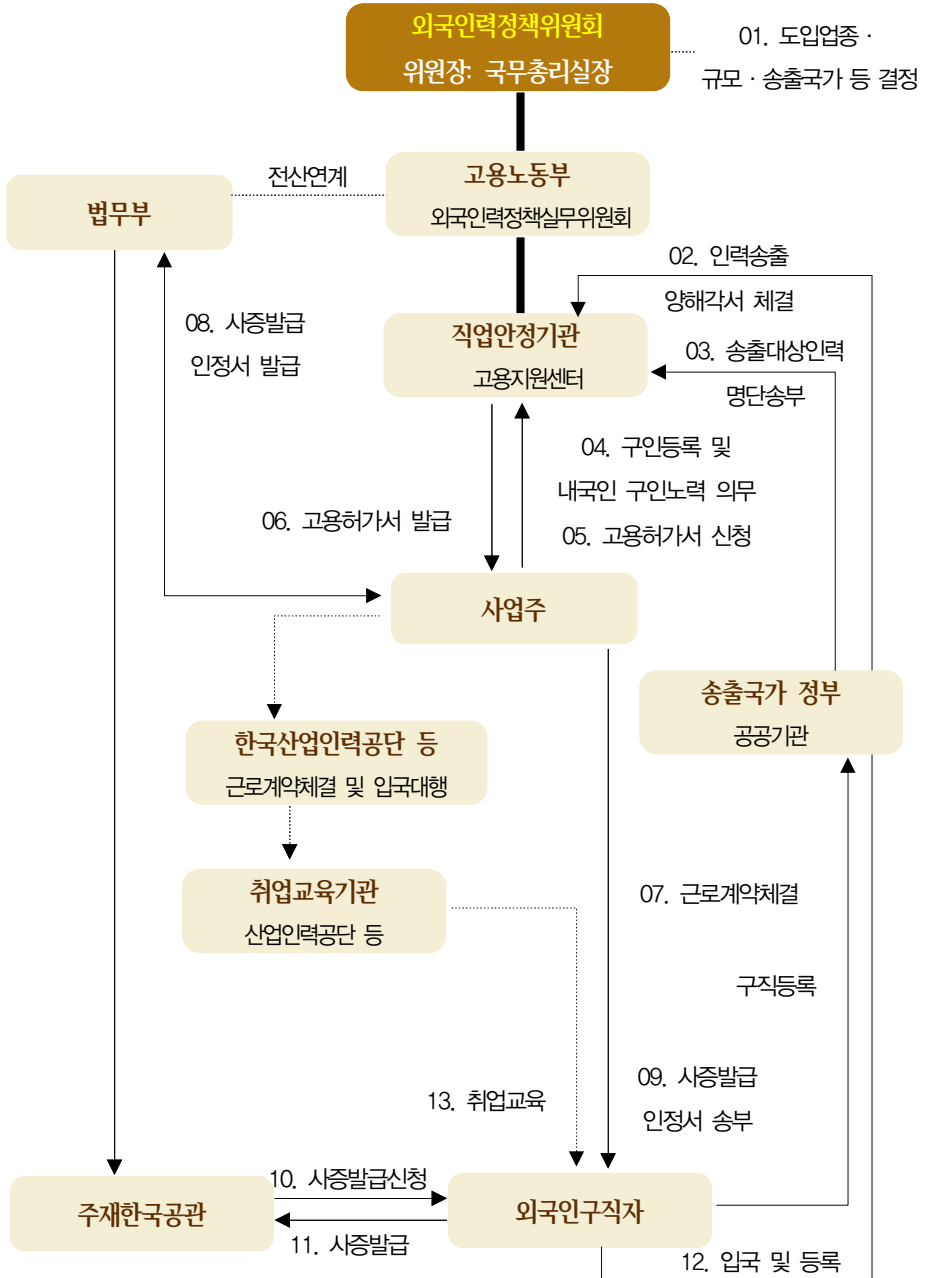
외국인노동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무 가입), 국민건강보험(의무 가입), 고용보험(임의 가입), 국민연금(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는 ‘귀국비용보험’(체류기간 만료 시 자진출국을 유도하여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귀국에 필요한 항공료 등 경비에 충당) · ‘상해보험’(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 등에 대비)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중소기업의 퇴직금 일시지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체류 방지 및 출국 유도) · ‘임금채불보증보험’(외국인노동자의 임금채불에 대비하여 사업주가 가입)에 가입해야 한다.

3. 세부 유형별 외국인노동자 도입 절차

고용허가제는 ‘일반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특례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두 유형이 있다. 그 각각의 대상자는 ‘일반 외국인노동자’와 ‘고용특례자’다(설동훈, 2008a). 첫째, ‘일반 외국인노동자’는 국내 입국 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비전문취업사증(E-9)을 발급받아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양식업, 연근해어업, 서비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냉동 창고업 중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다. 둘째, ‘고용특례자’는 방문취업사증(H-2)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기관에서 취업교육을 수료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장에 알선된 후 근로 개시를 하거나 직접 구직활동을 하여 근로 개시를 한 ‘고용특례 외국인노동자’를 가리킨다. 유흥업 등을 제외한 전 업종 취업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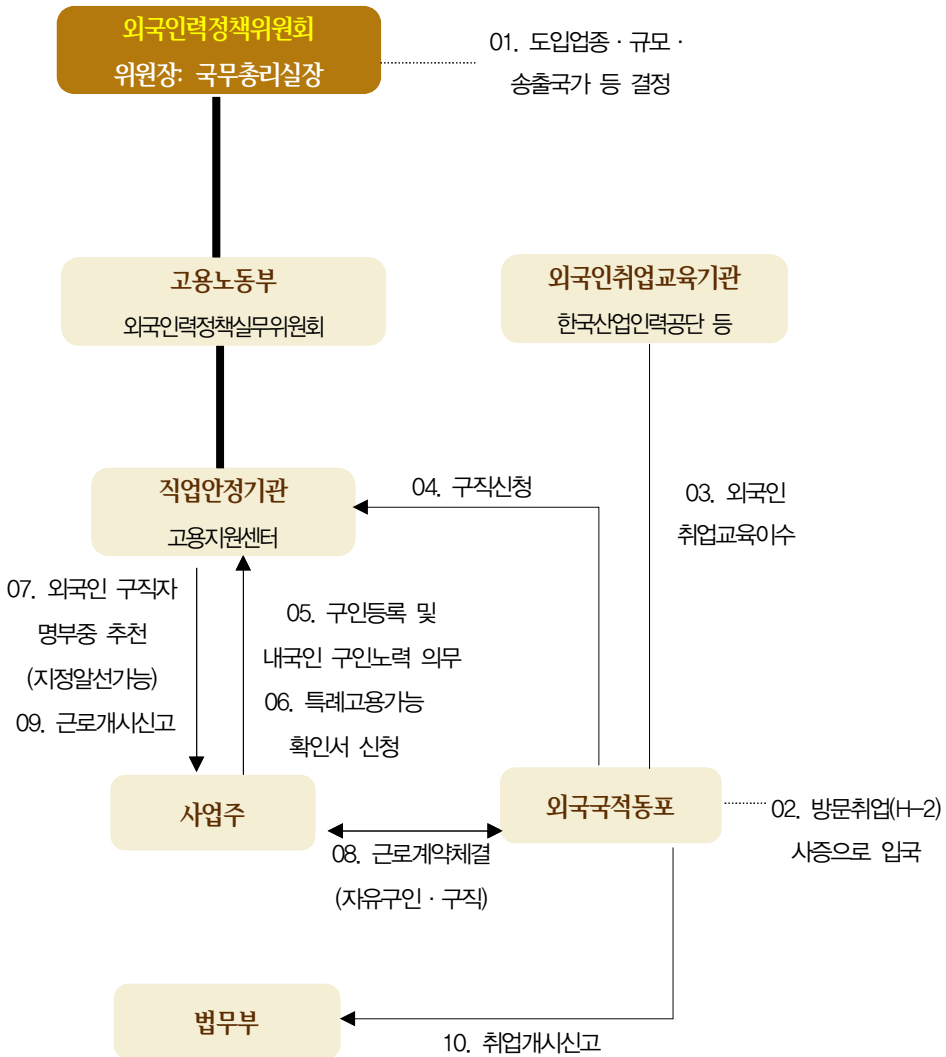
‘일반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한국정부와 노동력 송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열다섯 나라 출신의 외국인노동자를 도입하는 제도다. 일반 고용허가제에서 사용자와 외국인노동자는 각각 한국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와 ‘취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사용자는 국내에서 내국인 노동자 구인 노력을 하였지만 채용하지 못했음을 입증한 후 정부(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는다. 그는 한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외국인은 근로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한국 정부(재외공관)에 제출하여 ‘취업허가’를 받는다. 취업허가는 그의 입국을 허가하는 사증에 표기된다.

〈그림 1〉 일반 외국인노동자의 취업 절차, 2010년



‘특례 외국인 고용허가제’ 또는 ‘방문취업제’는 외국국적동포에게만 적용하는 제도다. 방문취업제는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CIS 지역 등 거주동포들에 대해 5년간 유효한 체류기간 1년의 복수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고용주의 재고

〈그림 2〉 고용특례 외국인노동자의 취업 절차, 2010년



용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허가를 발급한다. <그림 2>에 제시한 것처럼, 방문취업사증(H-2)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취업교육을 마치고 구직 신청 후,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을 받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 자율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그들은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정부에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Ⅲ. 외국인 고용허가제 운용에 관한 쟁점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과거 산업연수제 운용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상당부분 개선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유길상·박영범·어수봉·박성재(2007)는 외국인력 선정·도입 절차를 투명하게 하여 외국인력 도입과정에서의 송출비리를 방지하고, 외국인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여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으며,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을 억제하여 외국인노동자 고용 질서를 확립한 것으로 평가한다. 고용허가제가 제도 운영의 투명성, 외국인력 유입의 신속성, 인권침해 방지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고용허가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노동시장 보완성 원칙의 관철

정부는 매년 초 경제·고용동향, 인력수요, 내국인 일자리 대체 가능성,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결정하여 공표한다. 2008년 하반기 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국내 고용여건 악화에 따라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축소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고용허가제 적용 사업장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보완성이 유지되고 있다. 여러 차례 실시된 연구에서 제조업에서의 보완성은 지켜지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난다(이규용·유길상·이해춘·설동훈·박성재, 2007 참조).

그러나 외국국적동포 방문취업제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과 일부 서비스업에서는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가 침식당하는 것이 확인된다(설동훈·이해춘, 2005).

일자리 잠식은 고용조건 악화, 임금수준 동결(또는 실질임금 수준 하락)까지 초래하는 악영향을 미친다(Wasem, 2007). 그러므로 적정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설정하고 내국인 대체 우려가 있는 동포에 대한 고용관리 강화가 필수적이다.

사용자 관점에서 보면, 고용허가제는 한국어능력시험, 구직자명부, 도입기간, 노동자교육, 사업장 적응도, 각종 노동자 지원제도(각종 보험) 등 외국인력 도입 관련 업무 프로세스 측면에서 양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외국인력고용 편의를 위하여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노동력 부족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점점 간소화한 것은 ‘인력 도입의 신속성’에는 기여하지만 ‘노동력 대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야기한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고용허가제 개선 대책”(내국인 구인노력 대행 확대, 현지 기능테스트를 통한 선발 등)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국내 노동시장, 특히 내국인노동자의 일자리·임금·근로조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와 관련하여, 2010년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내국인 고용 확대를 위한 외국인 고용 제도 개선’ 정책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한다.

정부는 두 가지 방향으로 외국인 고용 제도상 내국인 채용 유도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는 외국인 고용 희망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기업별로 차등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내국인 채용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14일) 중 집중적으로 취업을 알선(모집인원의 3배수의 적격자 알선)하고, 2010년 쿼터 조기 마감 시 구인수요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신속히 내국인 취업을 알선할 계획이다. 내국인 채용 가능성이 낮은 기업(50인 이하, 월 120만원 미만 등)에 대해서는, 내국인 구인신청 즉시 “빈 일자리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하여, 취업장려수당 등 지원을 통해 내국인의 취업을 유도하고 있다. 둘째는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연장 및 기업의 적극적인 구인노력 유도 정책이다. 우선,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기존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고, 면접·일간지 등 구인광고 등 적극적 구인노력을 한 경우에는 기간 단축 혜택을 제공한다. 구인노력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내국인 채용을 거부한 기업을 별도 관리하여 외국인 고용 불허하는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그리고 내국인 채용을 늘린 기업에 세액 공제 또는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대상 선정 시 혜택을 부여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고용허가제를 손질하여,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구조 조정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수적이다. 일시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이 궁극적으로는 한국인 노동자를 선호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2. 교체순환정책의 견지

“무분별한 기업친화적 외국인력정책”은 외국인노동자의 ‘체류기간 연장’과 ‘교체순환정책’의 훼손을 동반하는 경향이 있다. 고용허가제가 일정 단계에 이르게 되면, 외국인노동자의 체류기간 연장과 정착에 관한 한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하여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 ① 사업주는 “숙련”인력을 되돌려 보내야 하는 교체순환원칙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체류기간 연장을 요구한다. ② 외국인노동자는 체류기간 연장을 요구함과 아울러 가족동반 허용을 요구한다. ③ ‘한국인노동자’와 ‘일반 한국인’은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과 정착이 자신들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고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적 문제로 여기기보다는 인권·인도주의의 쟁점으로 파악하여, 그러한 견해에 동조하는 경향이 증가한다. ④ 송출국 사회에서는 두뇌유출보다는 송금 수익을 기대하며 자국인의 해외 정착에 반대하지 않는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외국인노동자의 정착에 반대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은 도입 규모를 확대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사용자의 요구대로 무한정 확대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외국인력 고용이 사용자에게는 편익을 제공하지만 국민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국인 일자리 잠식과 기업구조조정 저해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노동력 부족이 절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이고 부분적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노동자가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하여 정착하는 순간 그들 역시 3D 직종을 기피할 것이므로, 노동력 부족 문제는 전혀 해소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고용허가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제도 개선과 운영에 힘써야 한다.

3. 외국인력 선발 시 산업계 수요 반영

정부는 외국인력 선발 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재설계하여, 기업에 우수 외국인력을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과거 산업연수제 시절 송출비리와 불법체류가 사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설계하면서 외국인력 선발과 충원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송출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기관의 개입을 배제하였다. 즉, 한국과 송출국의 공공기관이 외국인력 송출과 도입 창구 역할을 맡도록 하였다. 그 결과 사업주는 채용하려는 인력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명단에 기재된 기초 자료에 의존하여 외국인노동자를 선발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직종 분류상 ‘단순노무자’여서 인적자본을 따지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가능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우수한 노동자를 충원하려는 사업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존 고용허가제의 인력 충원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한건설협회 직원들이 업주들을 대신하여 외국 현지에 가서 노동자를 면접·선발한 적이 있고, 또 그러한 방식을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행한 적도 있다. 두 가지 선발 방식을 채택한 기업은 ‘명단에서 노동자를 고르는 기존 방식’을 이용한 기업보다 노동자 선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대행기관 즉, ‘전문 영역별 사업주단체’와 ‘기능검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따른 만족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설동훈, 2009e). 그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들이 추가 비용을 지불할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현지에서 직접 노동자를 선발하는 방식’을 ‘업주가 명단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선발하는 기존 방식’에 부가하여 병행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인노동자의 기존 숙련을 반영하여 충원하려는 현지 기능 테스트를 통한 “숙련 보조인력” 선발 방식은 장점이 많으나, 그들이 국내에서 “숙련인력”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노동력 대체 가능성을 억제하는 한편, 현지 선발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비리”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민간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에서는 2009년 6·7월에 실시한 『고용허가제 시행 5주년 이주노동자 노동권 실태조사』를 토대로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서 송출비리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보고서는 확률표집에 의하여 조사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편의표집(convenient sampling)에 의한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일부에서는 “과도한 송출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 정도만 수용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송출비리가 그 전에 비하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송출비리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사업장 이동의 규제

외국인노동자 단체 또는 지원 단체에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게 고용허가제의 맹점이라고 지적한다. 그 중 일부에서는 사업장 이동의 규제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 평가는 오류다.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규정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노동자는 최초의 근로개시를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장의 휴폐업,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관계 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외국인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사업장 이동을 최대 4회까지 허용한다. 재고용으로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변경할 수 있으며, 사업장 변경횟수 산정에 노동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장 이동(변경)사유는 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② 휴·폐업 등 외국인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폭행 등 인권침해,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등으로 외국인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해진 경우, ④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등이다. 외국인노동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1세기 모든 나라 정부는 “취업허가”를 받은 외국인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정 정도 제약한다. <표 7>에서 보듯이, 2004년부터 2009년 3월까지의 집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사업장 이동 과정에서 불법체류자가 된 비율은 3.0%에 불과하다(설동훈, 2008b). 3%는 일반적 통계에서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지만, 외국

인노동자의 권익과 관련되는 면이 없지 않으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허용할 경우,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임금·근로조건을 침해할 것이 확실하므로, 현행처럼 규제를 가하되, 그 운용 과정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7〉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성공률과 실패율, 2009년 3월

(단위: 명, %, 순위)

출신국	신청자 (명)	변경자 (%)	대기자 (%)	변경 실패		
				출국자 (%)	불법체류자	
					%	순위
전체	131,416	91.7	2.3	3.0	3.0	-
베트남	36,975	93.4	2.6	1.3	2.6	7
태국	13,378	91.0	1.4	4.3	3.3	10
인도네시아	12,818	93.7	1.7	2.2	2.4	6
필리핀	19,104	93.8	1.3	3.2	1.7	3
스리랑카	12,959	95.2	2.2	1.4	1.1	1
중국	5,612	84.7	2.3	8.5	4.4	11
몽골	16,976	86.1	1.9	6.0	6.0	12
우즈베키스탄	5,672	90.2	4.7	2.2	2.9	9
캄보디아	1,289	78.2	5.6	4.7	11.5	14
파키스탄	3,163	93.2	3.5	1.5	1.8	4
네팔	992	88.3	7.8	1.0	2.9	8
방글라데시	1,566	93.6	4.7	0.3	1.4	2
미얀마	647	91.7	3.4	2.9	2.0	5
키르기스스탄	265	80.4	5.3	3.4	10.9	13

주: 1) 2004년부터 2009년 3월까지의 집계 자료로, ‘대기자’는 ‘사업장변경신청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중 ‘사업장을 옮기지 못한 채 대기하고 있는 자’를 가리킨다.

2) 불법체류자 항목의 순위는 ‘불법체류율 역순위’로, 낮은 순서부터 매긴 값이다.

자료: 노동부(2009, 내부자료). 비율과 순위는 필자가 계산.

한편, ‘특례 고용허가제’ 또는 ‘방문취업제’는 외국국적동포의 자유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내국인과 유사한 처우를 보장하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정책을 일반 외국인노동자에게 확대하는 것은 무리다. 즉, 방문취업제의 ‘사업장 이동 자유’ 방식은 일반 고용허가제로 확대되어서는 곤란하다.

5. 불법체류자 억제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체류 문제는 개선되고 있다. <표 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09년 2월 기준 비전문취업(E-9) 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 중 불법체류자 수는 5,726명이었다. 그것은 경제활동연령대 전체 불법체류자의 2.9%에 불과하다. 불법체류자 중의 대다수(66.9%)는 단기방문이나 관광 등의 명목으로 입국한 외국인이고, 29.4%(산업연수생 7.5%, 연수취업자 7.7%, 불법체류자 양성화를 통한 비전문취업자 14.3%)는 고용허가제 이전의 외국인력 제도 운영과 관련이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이탈’ 문제는 제도의 미비점 때문에 비롯된 사업장 변경 실패로 인한 경우도 극소수 있지만, 무단이탈한 경우가 대부분이다(설동훈, 2008b).

<표 8>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와 사업장 이탈 이주노동자 수, 2009년 2월

(단위: 명, %)

인원	전체	산업연수 (D-3)	연수취업 (E-8)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 (H-2)	기타
					고용허가제 입국자		
전체	196,885	14,685	15,109	33,783	5,726	1,685	131,623
베트남	15,449	1,997	4,165	4,147	973	0	5,140
태국	14,109	330	802	3,451	1,620	0	9,526
인도네시아	5,387	1,336	1,376	1,931	762	0	744
필리핀	12,865	1,713	1,608	3,738	427	0	5,806
스리랑카	2,566	360	672	544	152	0	990
중국	91,141	4,980	1,731	8,505	32	1,632	74,293
조선족	26,605	2,143	418	3,796	0	1,632	18,616
한족	64,536	2,837	1,313	4,709	32	0	55,677
몽골	13,594	485	618	3,337	1,443	0	9,154
우즈베키스탄	8,326	854	1,017	873	57	41	5,541
캄보디아	755	80	295	149	214	0	231
파키스탄	3,380	259	817	544	18	0	1,760
네팔	2,231	259	997	353	3	0	622
방글라데시	7,934	1,527	372	1,904	6	0	4,131
미얀마	1,571	344	395	133	0	0	699
키르기스스탄	1,279	16	7	49	19	0	1,207
기타	16,298	145	237	4,125	0	12	11,779
이란	938	19	26	144	0	0	749
카자흐스탄	767	109	211	60	0	1	386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09년 2월』, 2009.

한국산업인력공단, 내부 자료, 2009. 필자 계산.

6. 산업재해 감소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재해 요양 승인’ 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최근 3년간의 산업재해 추이를 보면, 재해자 수는 증가하고 있고, 사망자 수는 약간 줄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10,000명 당 재해율을 계산하면, 그 값은 2006년 66.7‰에서, 2007년 63.3‰로 낮아지다가, 2008년 69.9‰로 다시 높아졌다(노동부, 2009).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 통계는 과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합법취업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사례가 간혹 발생한다. 일부 업주는 보험료의 인상을 두려워하여 개인적 치료를 권하기도 한다.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매우 크게 다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신청을 하지 못한다. 그들이 보험급여를 받게 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그 사실이 통보되어, 반드시 출국해야 하기 때문이다(설동훈, 2009b, 2009c, 2009d; 홍승권 · 설동훈 · 서화정 · 홍창웅 · 김영진 · 설미숙, 2006 참조).

IV.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개선 과제

현행 외국인력 정책의 문제점은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고용허가제 정책 대상이 비전문 외국인력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문인력 · 숙련인력 등 전체 외국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없다. 둘째, 중장기적인 경제 · 고용 전망, 저출산 · 고령화 등 사회변화, 자유무역협정 등 인력이동 증가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 외국인력 정책이 없다. 셋째, 결혼이민자, 영주자 등 이민노동자 또는 정착이민자의 노동시장 참여까지 고려한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고용허가제의 운용 모형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고용허가제가 영세기업의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만 활용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외국인력의 도입이 산업구조조정 및 기업구조조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 기업의 대상을 자본금 2억 대만 달러 이상인 업체로 한정하고, 기업의 구조조정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내국인 노동자를 선호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거듭

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경쟁력이 없는 영세기업의 인력난 완화 수단으로만 활용된다면 산업구조 조정을 지연시켜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외국인노동자의 빈번한 사업장 이동에 따른 관리비용의 증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의 발생 가능성 증대 및 이로 인한 불법체류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의 고용허가를 무조건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 해줄 것이 아니라, 경쟁력은 있으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등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만 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전문 외국인력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숙련인력, 다문화가족 등 전체 외국인력을 포괄하는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는 게 필수적이다(한건수·설동훈, 2007; 설동훈·서문희·이삼식·김명아, 2009; 이해경·설동훈·김명아, 2009 참조). 현행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가칭 ‘외국인력 관리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정책 목표별·인력수준별 단기·중장기 정책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인력수급 전망, 외국인력 증가로 인한 사회적·외교적 영향을 고려하여, ‘중장기 외국인력 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거기에는 외국인노동자와 이민(노동)자의 노동시장통합(사회통합의 핵심)을 위한 정책 수립, 체류자격에 따른 외국인, 이민자의 노동력 활용 가능성 평가, 세분화된 사회통합 정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노동부. 2009. 『0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노동부.
- 노동부. 2010. “외국인근로자 관련 현황.” 내부 자료.
- 법제처. 2010.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법제처.
(<http://oneclick.law.go.kr/CSP/CcfMain.laf?csmSeq=3&ccfNo=1&cciNo=1>. 인터넷; 2010년 6월 7일 접속)
- 설동훈. 2008a.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현황과 정책.” 조정남 편, 『신세기의 민족질서와 한민족』. 백상재단. pp. 457-520.
- _____. 2008b.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별 사용자 선호도 차이발생사유 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노동부.
- _____. 2009a.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5주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사용자·외국인근로자·송출국가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고용허가제 시행 5주년 기념 세미나』. 노동부. pp. 3-13.
- _____. 2009b. “한국사회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새로운 ‘소수자 집단’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 『사람』 34: 53-77.
- _____. 2009c. “빈곤의 길목에 선 이주노동자.” 『황해문화』 64(가을): 142-162.
- _____. 2009d.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인권 침해: 현황과 대책.” 『노사저널』 826: 4-9.
- _____. 2009e. 『소수업종 기능테스트 등 시범사업 타당성 검토』. 한국산업인력공단.
- 설동훈·서문희·이삼식·김명아. 2009.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 연구: 다문화가족의 장래연구추계 및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2009. 『고용허가제 시행 5주년 이주노동자 노동권 실태조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유길상·박영범·어수봉·박성재. 2007. 『외국인고용허가제시행 3주년 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노동부.
- 이규용·유길상·이해춘·설동훈·박성재. 2007.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및 중장기 관리체계 개선 방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조동훈·박성재·설동훈·주무현. 2007. 『구조변화와 이주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이혜경·설동훈·김명아. 2009.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사회통합도 측정: 다문화가족 사회통합도 측정』. 법무부.
- 임현진·설동훈. 2000.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 『한국사회과학』 22(3/4): 153-186.
- 한건수·설동훈. 2007. 『이주자가 본 한국의 정책과 제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0.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련 대행제도 변경 알림.”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hrdkorea.or.kr/4/1/5?k=35836&searchType=&searchText=>. 인터넷; 2010년 6월 7일 접속)

- 홍승권 · 설동훈 · 서화정 · 홍창웅 · 김영진 · 설미숙. 2006.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수준 평가와 체계적 관리방안』. 서울대학교병원 건강증진사업단.
- Seol, Dong-Hoon. 2005. "Global Dimensions in Mapping the Foreign Labor Policies of Korea: A Comparative and Functional Analysis." *Development and Society* 34(1): 75-124.
- Seol, Dong-Hoon, and John D. Skrentny. 2009a. "Why Is There So Little Migrant Settlement in East Asia?"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3(3): 579-621.
- _____. 2009b. "Ethnic Return Migration and Hierarchical Nationhood: Korean Chinese Foreign Workers in South Korea." *Ethnicities* 9(2): 147-174.
- Wasem, Ruth Ellen. 2007. "Immigration of Foreign Workers: Labor Market Tests and Protec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RL33977.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설동훈은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분야는 이민사회학이고, 이민정책과 노동시장에 관심이 있다. 저서로는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1999), 『노동력의 국제이동』(2000), 『우리 시대의 소수자운동』(2005) 등이 있다. 전자우편은 dhseol@chonbuk.ac.kr이고, 인터넷 홈페이지는 <http://www.dhseol.org>이다.

(2010. 4. 23. 접수; 2010. 5. 15. 수정; 2010. 5. 31. 채택)

The Employment Permit Program for Foreigners in Korea, 2004-2010: Issues and Prospects

Dong-Hoon Seol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On July 31, 2003,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passed the Foreign Workers Employment Act, which called for an introduction of the Employment Permit Program for Foreigners (EPP) in Korea. According to the Act, foreign workers are entitled to bonus allowance, retirement pay and the three basic labor rights of unionizing,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This paper mainly deals with the key components of the EPP, and six issues on operating the Program — (1) supplement or replacement in the labor market, (2) rotation policies, (3) recruiting process, (4) transferring workplaces, (5) irregular migrant workers problems, and (6) industrial accidents. This paper also suggests the long-term prospects of the EPP and policy alternatives.

Key words: Employment Permit Program for Foreigners, work permit, Visit and Employment Program for Ethnic Koreans with Foreign Citizenship, foreign labor policies, migrant workers, labor market.

비전문 외국인력제도 활용실태 및 쟁점*

이규용**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및 2007년 외국국적동포 방문취업제 실시 이후 외국인력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본 논문은 외국인력의 추이, 임금 및 고용구조를 규명하고 외국인력이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저숙련 외국인력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업종에서 생산관련직종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06년 하반기 이후 일용직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내국인력의 대체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력 생산직 비중의 증가는 내국인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내국인 구인노력의 강화, 고용부담금제도 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구조변화를 고려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외국인력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노동시장 테스트, 고용부담금제도

* ‘외국인력 정책 포럼’ 제2차 회의(서울 팔레스호텔 다이너스티B홀, 2010년 6월 4일)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I. 서론

우리나라에 저숙련 외국인력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며 본격적인 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한 것은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가 시행된 1994년 이후이다. 2004년에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어 2006년까지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하여 시행되어 오다 2007년 1월 1일부터 고용허가제로 단일화되었다. 동포들을 대상으로 취업관리제로 운영되어 오던 동포인력정책은 2007년에 방문취업제로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비전문 외국인력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왔으며 특히 2007년 3월 방문취업제 도입 이후 동포 인력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 이후부터 동포 비율이 일반 외국인을 상회하고 있다. 외국인력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동포인력의 유입증가로 국내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비전문 외국인력의 유입에 따른 내국인 노동시장 보완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력부족에 입각한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추진으로 저숙련 외국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소규모 영세 사업장 중심의 외국인력 수요구조 및 단순 저기능 위주의 외국인력 공급체제로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의 확대기반이 저해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 활용에 따른 내국인 노동시장의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인구구조 및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등 한국사회의 중장기 변화에 부합하도록 종합적인 외국인력 정책 추진체계 및 관련제도의 정비가 요청된다.

외국인력의 유입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갖는다. 외국인력 활용에 따른 순편익을 높이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국인력 활용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외국인력의 경제적 효과는 외국인력의 기술 혹은 숙련수준, 체류기간, 체류 형태, 운영되는 제도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이는 정형화된 이론보다는 실증분석에 의존한다. 일반적으로 저숙련 외국인력의 경우 인력부족 해소라는 경제적 편익과 내국인 노동시장의 교란이라는 부정적인 면을 함께 갖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글

은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로 운영되는 현 비전문외국인력제도의 문제점을 노동시장의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진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외국인력 고용 및 임금구조

1. 외국인력 추이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제도는 일반적으로 전문취업과 비전문취업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이는 숙련수준에 기초한 비자유형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전문외국인력제도는 취업비자인 E-1 비자부터 E-7비자까지를 지칭하며 비전문취업은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구분의 기저에는 전문취업의 경우 대졸이상의 자격과 경력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비전문취업의 경우에는 수행하는 업무가 특별한 기능수준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 업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최근의 외국인력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9. 12월말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117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외국인력 규모를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논쟁적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규용·박성재(2008)와 김정호(2009)의 연구가 있다. 비자유형에 입각하여 외국인력 추이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는 불법체류자를 모두 외국인력으로 추정하고 있는 한계가 있지

<표 1> 연도별 외국인력 규모

연도	전체외국인	비전문인력					전문인력	불법체류자
		산업연수	연수취업	선원취업	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 (H-2)		
2000	285,506	77,448	2,063				17,000	188,995
2001	329,555	46,735	8,065				19,549	255,206
2002	362,597	39,661	12,191				21,506	289,239
2003	388,816	50,721	20,244		159,706		20,089	138,056
2004	420,702	36,555	48,937		126,421		20,306	188,483
2005	347,757	38,290	50,703	212	54,354		23,406	180,792
2006	446,009	44,000	51,517	307	113,524		24,673	211,988
2007	641,035	6,299	14,684	2,828	134,012	228,448	31,300	223,464
2008	693,396	2,305	734	3,641	156,429	298,003	31,795	200,489
2009	682,954	1,170	51	4,078	158,198	303,005	38,497	177,955

자료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만 결혼이민자나 유학생 등의 상당수가 취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통계가 과대 또는 과소추정된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의 추이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는데 2006년 이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동포(H-2)의 체류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07.3월 방문취업제 도입 이후 동포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07년 이후부터 동포 비율이 일반 외국인을 상회하고 있다. 전문외국인력의 규모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저숙련 외국인력의 유입확대는 내국인 노동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표 2> 비전문 외국인력 추이: 불법체류자 제외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총 계	104,348 (100%)	199,620 (100%)	362,460 (100%)	454,431 (100%)	461,203 (100%)
일반(E-9)	52,305 (50.1%)	115,122 (57.7%)	134,012 (37.0%)	156,429 (34.4%)	158,198 (34.3%)
동포(H-2)	52,043 (49.9%)	84,498 (42.3%)	228,448 (63.0%)	298,002 (65.6%)	303,005 (65.7%)

자료 : 법무부

업종별 외국인력 분포는 이규용·박성재(2008)의 연구결과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는 외국인력의 범주로 취업비자(E), 방문취업자(H-2), 단기취업(C-4), 산업연수(D-3), 기업투자연수(D-8), 취업관리(F14) 그리고 불법체류자를 포함하여 추계하고 있다. <표 3>은 이규용·박성재(2008)가 법무부 출입국 월별자료와 기존의 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력의 업종별 규모를 추정한 결과이다. 표에서 보듯이 고용허가제 이후 외국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특히 건설업과 음식숙박업 종사자가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업종별 외국인력 추이

	전산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가사서비스업	기타
2004.12	438,730	197,245	94,912	41,338	10,648	94,587
2005. 6	375,065	171,819	79,970	36,442	9,286	77,548
2005.12	395,708	187,009	79,326	43,484	11,006	74,883
2006. 6	464,347	213,336	96,067	57,115	14,797	83,033
2006.12	502,577	232,280	102,646	63,557	16,822	87,272
2007. 6	533,277	232,878	112,239	71,001	18,635	98,524
2007.12	612,962	238,025	151,246	87,932	22,905	112,855
2008. 5	673,078	247,047	175,017	101,325	26,365	123,324

자료 : 이규용·박성재(2008)에서 재인용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한 외국인근로자DB에는 비전문외국인력 중 집계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2004년에는 활용업체가 2,180개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해 2009년의 경우 57,574개 업체가 1명 이상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였다. 업종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제조업이 80%를 상회해 대다수를 차지하며 이어서 서비스업, 건설업 순이다. 사업장규모는 3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2009년의 경우 81.5%가 30인 미만이며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규모 또한 40%수준에 달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소재지는 수도권이 60%를 상회하며 이어서 경남권, 충청권 순으로 나타났다.

<표 4>는 고용허가제 일반 및 특례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정보와 고용보험 DB를 결합하여 이들 사업장에서 외국인력의 비중 변화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에서 보듯이 2004년에는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15.5%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 27.5%로 나타났다. 2009년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살펴보면 어업이 48.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농축산업(47.1%)과 음식업(39.3%)의 외국인근로자 비율도 높다. 청소·폐기물처리업종, 사회복지·간병, 수리업, 도소매업 같은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외국인근로자비율이 낮다. 사업장규

모별로 보면 규모가 작을수록 외국인근로자 의존비율이 높아 2009년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65.5%에 이르고 있다. 반면 300인 이상 대규모사업장은 2009년에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4.0%에 머무르고 있다. 소규모 업종의 경우 외국인력 의존

〈표 4〉 전체 고용인원 대비 외국인근로자 비율

(단위 :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업종	건 설	9.7	14.9	17.8	19.6	23.4	24.0
	농축산	24.5	33.1	32.2	39.4	47.4	47.1
	어 업			37.8	41.2	44.9	48.0
	가구제조	20.3	28.8	27.7	30.6	36.8	36.8
	(비)금속제조	15.4	24.5	21.7	25.8	31.8	31.5
	섬유·의복제조업	16.7	26.8	22.5	25.8	30.4	31.1
	인쇄출판	12.5	19.4	17.6	20.3	24.7	23.8
	음식료품제조	9.9	16.6	16.5	19.4	23.1	23.2
	기계제조	13.1	17.7	15.6	19.3	23.6	23.5
	화학제품제조	17.8	25.3	22.9	26.7	32.1	32.2
	기타제조	12.6	21.6	21.5	25.4	30.9	30.7
	도소매	21.3	15.6	21.8	16.1	13.2	12.3
	사회복지간병		12.5	33.3	21.2	27.0	15.5
	청소·폐기물처리	2.9	4.9	4.0	4.1	5.4	4.5
	숙박업					32.6	24.5
	음식점	45.7	45.8	46.7	39.6	40.5	39.3
	수리업		11.3	10.4	9.4	10.1	12.1
규모	5인 미만	69.6	63.4	67.5	68.4	70.3	65.5
	5~9인	36.0	48.9	53.6	54.2	57.2	51.5
	10~29인	19.6	30.1	31.8	34.0	39.8	36.8
	30~99인	12.9	17.8	17.7	21.7	27.6	24.7
	100~299인	6.3	8.3	8.5	11.3	14.5	12.8
	300인 이상	1.4	3.9	4.3	5.0	6.5	4.0
전 체		15.5	22.9	20.1	23.2	27.9	27.5

주: 연인원 기준임.

자료: 외국인근로자DB-외국인고용사업장 근로자DB 연결 패널. 이규용외(2010)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발간예정에서 재인용

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외국인력 의존성을 높이는 저숙련 외국인력 정책의 유효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2. 내·외국인 임금 및 근로시간 비교

내외국인력간 임금격차를 분석하기 위해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실태조사가 수행되었다. 노용진·이규용은 2003년도에 제조업·건설업·음식숙박업을 대상으로 동일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수준을 조사하였다(유길상 외, 2003: 108-119). 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3년 조사당시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월평균 101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체류형태별로 보면 불법취업자의 임금이 가장 높았으며(남자는 월평균 126만 원, 여자는 113만 원), 그 다음으로 연수취업자(남자 105만 원, 여자 104만 원), 산업연수생(남자 97만 원, 여자 92만 원), 해외투자기업연수생(남자 75만 원, 여자 65만 원) 순으로 조사되었다.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내외국인간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전체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외국인 근로자보다 높는데, 즉 해외투자기업연수생에 비해서는 82%, 연수생에 비해서는 23.1%, 연수취업자에 비해서는 18.1%, 그리고 불법취업자에 비해서는 7.7%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건설업의 경우 연수생의 월평균 임금은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70.2%, 연수취업자는 55.4% 낮은 반면에 건설업 불법취업자의 임금수준은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10.7% 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음식·숙박업의 경우에는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외국인 근로자에 비해 약 1.6% 가량 높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8년에 제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력 실태조사가 수행된 바 있으며 동 조사도 내외국인력간 임금격차 분석이 가능하도록 자료가 수집되어 있다(이규용·정진호, 2008). 분석결과에 따르면 내국인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82.5만원이고 외국인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37.2만원으로 내국인 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에 비해 약 45만 원 가량 더 많다. 회귀분석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19.7% (충급여 기준 16.1%)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2003년 조사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3년의 분석결과는 업종별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자료작성시점이 고용허가제나 방문취업제 이전이라는 한계가 있고 2008년의 조사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표 5〉 업종별 내외국인 임금격차 분석(2009년)

	건설업(N=474)		농축산업(N=85)		어업(N=84)		음식업(N=172)		제조업(N=539)	
	계 수	표준 오차	계 수	표준 오차	계 수	표준 오차	계 수	표준 오차	계 수	표준 오차
(상수)	6.081	0.046***	5.970	0.100***	5.949	0.058***	5.917	0.136***	5.880	0.038***
성별더미			0.106	0.031***			0.078	0.057	0.068	0.012***
연령	0.002	0.001***	-0.001	0.002*	0.002	0.001*	-0.002	0.002	0.000	0.001
학력더미	-0.021	0.012*	0.016	0.030	-0.039	0.018**	0.023	0.041	0.012	0.011
근 속	-0.004	0.001**	0.001	0.001**	0.006	0.002**	0.000	0.001	0.002	0.000***
근속제급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직종더미	0.072	0.018***	-0.061	0.039	0.064	0.019***	0.012	0.038	0.035	0.010***
근로시간	0.000	0.000	0.000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숙련더미	0.014	0.012	0.044	0.033	0.091	0.028***	0.061	0.044**	0.011	0.010
종업원 수	0.000	0.000	0.010	0.006*	-0.008	0.002***	0.004	0.003	0.000	0.000**
외국인비율	0.000	0.000	0.000	0.001	-0.002	0.001***	0.000	0.001	0.000	0.000*
내외국인더미	0.107	0.013***	0.060	0.040	0.099	0.026***	0.046	0.044	0.073	0.010***
조정된 R2값	0.380		0.386		0.745		0.092		0.356	

주: *** p<0.01, ** p<0.05, * p<0.10.

- 건설업과 어업은 남성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조사
- 학력더미는 중졸 이하와 고졸 이상으로 구분
- 숙련더미는 숙련과 비숙련으로 구분
- 직종더미는 산업별로 직종이 다름
- 외국인 비율=외국인 종업원 수/종업원 수
- 내외국인 더미는 내국인=1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9년 외국인고용 사업체 실태조사

방문취업제 도입이후인 2009년도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간 임금격차를 추정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농축산업

과 음식업은 내외국인 임금격차가 유의하지 않으며 나머지 세 업종은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외국인에 비해 높다. 상대적으로 제조업의 격차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어업, 건설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두 집단의 생산성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만일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낮다고 가정할 경우 생산성을 감안한 두 집단간의 임금격차는 이보다 줄어든 것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숙박비나 식비를 회사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용비용에서 보면 내외국인간 격차는 보다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외국인력의 경우 장시간 근로를 선호하는 만큼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임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저임금 유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외국인력의 내국인 노동시장 영향

1. 외국인력 고용확대와 내국인 일자리 변동

외국인력의 유입이 확대됨에 따라 내국인 노동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1>은 이규용·박성재(2008)의 결과를 이용하여 외국인력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업종에서 내국인 생산관련직종 근로자의 고용비중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¹⁾ <그림 1>에서 보듯이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 취업자 전체에서 내국인 일용직 및 임시직이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하반기 이후 감소폭이 두드러지고 있다. 즉 2005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

1) 추정과정에 대해서는 이규용·박성재(2008)를 참조하라. 여기서 내외국인력의 비중 계산시 분모인 각 업종별 취업자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에 나타난 취업자수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외국인력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력 비중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해당 업종의 취업자를 분모로 하고 추정된 외국인력을 분자로 하여 계산한 것이며, 내국인력 비중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① 전산업 내국인: 전산업 생산직 임금근로자/전산업 취업자. ② 제조업 내국인: 제조업 생산직 임금근로자/제조업 취업자. ③ 건설업내국인1: 건설업 생산직 임금근로자중 일용직 근로자/건설업 취업자. ④ 건설업내국인2: 건설업 생산직 임금근로자중 임시·일용직 근로자/건설업 취업자. ⑤ 음식숙박업 내국인: 음식숙박업 여성 취업자중 임시·일용직 근로자/음식숙박업 취업자.

지 일용 및 일용+임시직 비중은 각각 38~39% 및 49~50%를 유지하다 2008년 상반기에는 각각 36.2%와 46.5%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건설업의 단순기능 외국인력 비중은 2004년 이후 4~5%를 유지하여 오다 2007년 하반기에 7.27% 그리고 2008년 상반기에 9.13%를 기록하고 있다. 음식숙박업의 경우에도 여성 임시·일용직 비중이 이전의 38%대에서 2008년 상반기에 37.35%로 하락하였으며, 같은 업종의 외국인력 비중은 2007년 하반기와 2008년 상반기에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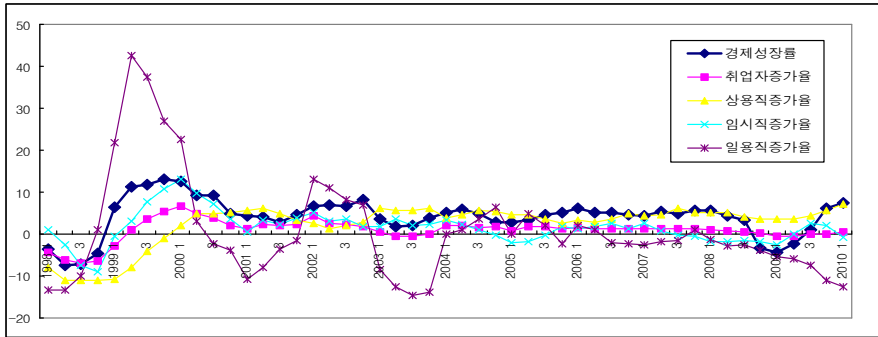
〈그림 1〉 업종별 내외국인 생산관련 직종 근로자 비중추이



자료: 이규용·박성재(2008). p.33의 <표 6>을 수정 보완하여 그림으로 표현하였음.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인력의 고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 업종에서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력과 상대적으로 일자리 경쟁관계에 있는 내국인 종사자의 비중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현상이 경기적 영향인지 외국인력 유입확대에 따른 영향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외국인력이 어떤 형태에서든지 내국인 고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 경제성장률과 종사상 지위별 일자리증가율 추이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주: 2010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속보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 2010. 4.

〈표 6〉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일자리 변동
(단위 : 천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고용증감							
	2009 1/4	1월	2월	3월	2010 1/4	1월	2월	3월
전체	-146	-103	-142	-195	132	5	125	267
임금	73	20	117	82	371	244	329	541
상용직	318	287	390	276	651	609	593	752
임시직	-136	-134	-192	- 83	- 37	-121	- 24	35
일용직	-108	-133	- 81	-112	-243	-244	-239	-247
비임금	-220	-124	-259	-277	-239	-239	-204	-274
고용주	- 46	- 25	- 80	- 34	43	62	46	22
자영자	-150	- 87	-176	-188	-149	-175	-115	-157
무급가족종사자	- 23	- 12	- 4	- 54	-133	-127	-135	-13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주목하여 살펴봐야 할 특징 중의 하나가 최근 일용직 근로자의 변동이다.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다른 고용형태에 비해 경기변동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즉 경기 후퇴기에는 일용직근로자의 고용감소폭

이 가장 크며 경기회복기에는 고용확대가 빠르게 이루어진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외환위기 이후 경기변동과 종사상지위별 고용동향을 보면 2006년 시기까지 일용직은 경기변동에 따른 증감폭이 다른 고용형태에 비해 크게 나타났으나 2007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전년동기 대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2007년 이후에는 일용직의 고용조정 패턴이 과거와는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는 외국국적동포들의 유입이 급격히 확대되었던 기간과 맞물려 있고 특히 일용직 감소가 확대된 업종과 외국국적동포들의 취업이 집중되고 있는 업종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국적동포의 유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10년 들어 경기회복에 따라 고용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도 임금근로자 중 일용직의 감소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표 6 참조).

일용직 근로자의 감소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일 외국인근로자가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거의 포착되지 않는다면 혹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일용직의 감소는 전체 일용직 일자리의 감소가 아닌 내국인 일용직의 감소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2007년 방문취업제 이후 급격히 늘어난 동포들이 주로 음식업이나 건설업의 일용직근로자로 많이 종사하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으며 통계상으로 이들이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일용직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한편, 2010년 들어 외국인력의 추가 유입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2>에서 보듯이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2010년 1/4분기에 일용직 근로자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경기회복에 따라 일용직 수요가 증가하면서 경기침체기 동안 미취업상태에 있었던 외국인력 중심으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²⁾

2. 외국인력이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력이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분석자료 상의 제약으로 이와 관련한 국내의 연구들이 많지 않으며 특히 최

2) 한국노동연구원 실태조사(2009년 8-9월)에 따르면 2009년 경기침체기에 외국국적동포의 29.1%가 미취업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의 외국인력 동향을 토대로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한 최근의 연구결과로는 유경준·이규용(2009), 김정호(2009), 이규용·이승렬(2010)의 연구가 있다. 이 중 유경준·이규용(2009)은 회귀분석모형을 통해 건설업과 음식숙박업에서 외국인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음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를 이용하여 후속 작업으로 수행한 단위근 검정을 통해 시계열의 불안정성을 제거한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규용 외, 2010).

여기서는 고용탄력성을 이용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내국인 대체가능성 문제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계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외국인근로자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외국인근로자의 상당수는 사업장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들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가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외국인력의 거주 특성상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의 고용률은 매우 높다. 따라서 외국인력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비록 모집단에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지만 가중치 부여문제가 남아 있고 대체표본에 따른 내국인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상대적으로 외국인취업자가 과소 추계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방문취업제 유입증가로 외국인력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추이가 전체 취업자 통계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전체 외국인력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 통계에 포함되는 비중을 4가지로 가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김복순·이규용, 2010).

<표 7>은 외국인근로자 추이와 취업자 통계에 외국인력의 반영정도를 네 가지로 가정하여 고용탄력성³⁾을 추정한 결과이다. 고용탄력성 추계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고용탄력성을 계산할 경우 시기구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탄력성 값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분석시기의 구분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경기변동을 고려하거나 통계적 방법에 의거

3) 고용탄력성은 취업자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누어 구한 값으로 성장률 1%에 따른 취업자 증가율을 의미한다.

하는 방법도 있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증가가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 있기 때문에 특정시점을 고정하고 시기를 늘려가면서 탄력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표에서 보듯이 외국인근로자가 100% 반영되어 있다고 가정한, 즉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취업자 통계를 기준으로 탄력성을 추정할 경우 2000~06년 기간의 고용탄력성은 0.33(2000~03년도 같은 값으로 나타남)이지만 2007년과 2008년에는 200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0.31로 그리고 2003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0.30으로 각각 2%p, 3%p 하락하였다. 그런데 만일 외국인근로자가 취업자 통계에 일부만 반영되어 있거나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할 경우 고용탄력성은 높아지고 2007년 이후 고용탄력성의 하락규모가 변하지 않거나 1%p 하락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

〈표 7〉 외국인력 변화와 고용탄력성 추이

		외국인력이 100%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	외국인력의 일부만 취업자 통계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		
			70% 포함	50% 포함	포함되어 있지 않음
시기구분 1	2000-06	0.33	0.34	0.34	0.36
	2000-07	0.31	0.33	0.34	0.36
	2000-08	0.31	0.32	0.33	0.36
	2000-09	0.30	0.31	0.32	0.34
시기구분 2	2003-06	0.33	0.34	0.34	0.36
	2003-07	0.30	0.32	0.33	0.35
	2003-08	0.30	0.32	0.33	0.35
	2003-09	0.28	0.30	0.31	0.33

주: 1) 외국인 근로자 통계는 김정호(2009) 자료를 이용.

2) 탄력성은 취업자 증가율(외국인근로자 규모 반영)/실질 GDP 증가율로 계산하였으며 분석대상기간의 기간평균값임.

이는 통계상으로 제시되고 있는 일자리 규모에 비해 실제 일자리 규모는 하락하지 않았거나 하락비중이 매우 미미하며 따라서 이러한 가정이 맞다면 일용직 일자리 감소 규모의 일부분은 일종의 통계적 착시현상으로 볼 수 있다. 2007년을 전

4) 외국인력의 「경제활동인구조사」 포함에 대한 논의는 유경준·김정호(2010) 참조. 동 자료에서도 일용직 감소원인으로 외국인력 영향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후로 동포의 유입규모가 증가하여 왔고, 이들은 주로 건설업이나 서비스업의 일용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다. 따라서 외국인력이 경찰의 통계조사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의 일용직 일자리 규모는 현재의 통계에서 보여지는 감소 규모보다는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실제로는 외국인근로자에 의해 충원되고 있는 일용직 일자리가 통계상으로 포착되지 않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8〉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내국인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효과 추정 결과
(근로자 전체; N = 11,199)

	Fixed-effect	Random-effect	Pooled OLS
전체	-0.004	-0.003	-0.002
남자	-0.005	-0.003	-0.001
여자	-0.003	-0.007	-0.013**
관리직	-0.007	0.005	0.054**
전문가/준전문가	0.003	0.003	0.004
사무직	-0.001	0.003	-0.0004
서비스/영업직	0.004	-0.003	-0.010
생산기능직	-0.005	-0.011**	-0.016***
단순노무직	-0.036**	-0.020*	-0.018

주: 1)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2) 연령, 학력, 근속년수, 성, 결혼 여부, 종사상 지위, 사업체규모, 산업(중분류/대분류), 직종(6분류), 연도 dummy(Pooled OLS의 경우)를 설명변수에 포함한 회귀분석 결과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2004, 2005, 2007, 2008; 이규용 · 이승렬(2010)에서 재인용

이규용 · 이승렬(2010)의 연구에서는 노동부의 인력수요동향조사에 나타난 산업별, 직종별, 규모별 그리고 성별 외국인력 비중 자료와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자료를 결합하여 외국인력의 유입에 따른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 및 실업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저숙련 외국인력 뿐 만 아니라 전문외국인력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종합적인 분석이라고 볼 수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력이 내국인 임금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모형에 따라 다르지만 외국인력 생산직 비중의 증가는 내국인 생산직근로자의 임금에 음의 효과를 갖는 반면에 외국인력 관리직 비중의 증가는 내국인 관리직의 임금에 양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표 8참조).

IV. 비전문외국인력 제도 개선과제

외국인력 활용문제는 많은 정책과제를 안고 있지만 본 고의 목적은 외국인력정책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아닌 외국인력 활용과 내국인 고용창출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앞에서의 논의를 요약하면 외국인력이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질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외국인력의 활용에 따른 순편익을 국내 고용창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첫째, 외국인력이 내국인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도록 하거나, 둘째, 외국인력의 유입이 생산효과를 거쳐 내국인 고용창출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외국인력의 활용과 내국인 고용창출 및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외국인력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산출효과의 확대라는 측면과 둘째, 외국인력활용이 내국인력의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도록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이 두 과제를 아우르는 것으로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외국인력의 유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외국인력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인식하에 외국인력제도 개선과제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국인 구인노력 강화 및 취업지원 확대이다. 이를 위해 현재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국인 구인노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를 통해 구인-구직알선 체계가 개선되어 왔으나 외국인력 고용허가 사업장은 일자리 알선의 사각지대에 머무른 측면이 있다. 따라서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종 중 내국인 구인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부문에 대해서는 내국인 구인의무노력의 강화 및 내국인의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력부족발생의 주원인이 내국인 근로자의 취업회피 및 잦은 이직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고용허용 업종의 내국인 취업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사업장 중 내국인 충원율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취업지원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며 직업능력개발, 일자리 비전제시, 장기근속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내국인 근로자 유인체계를 마련

하여 일자리 정착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고용부담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부담금제도는 내외국인 차별금지라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이는 내국인력 보호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 제도는 내국인 근로자 보호기능이라는 소극적 수단을 벗어나 내국 인력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는데 기여하며 산업구조조정정책에도 부합하며 기업으로 하여금 외국인력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유인함으로써 내국인근로자의 보호와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따른 경제사회적 편익의 증대를 도모하는 기능을 한다. 다만 고용부담금제도는 외국인력 고용비용을 증가시키는 만큼 사회적 파장을 줄이기 위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먼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외국인력 활용 후 추가적인 외국인력 고용시 고용부담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외국인근로자 일몰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취업알선·이직률 완화 등 내국인 인력부족 완화를 위한 지원제도의 병행, 외국인력 고용분야에 종사하는 내국인 근로자나 사업주에 대한 훈련, 창업 및 전직지원 등 다양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확대 그리고 고용비용 상승에 따른 임금·생산성 격차 완화를 위한 외국인력의 생산성 제고방안 마련하며 고용비용 상승으로 저임금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동포정책과 일반외국인력 정책의 조화다. 최근 외국인력의 내국인 노동시장 대체문제는 주로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한 동포인력의 유입증가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 문제의 핵심은 현재와 같이 동포를 일반 외국인력과 같이 쿼터 조정을 통해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인력정책이 아닌 동포정책으로서 우리사회의 생산가능인구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있다. 동포정책의 기본방향으로는 동포의 유입 규제정책을 유지하되 동포인력 활용 정책은 국내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취업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포를 일반 외국인력대신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동포인력과 일반 외국인력의 차이, 사업주의 다양한 외국인력 수요, 노동이동 허용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떨어진다. 끝으로 동포의 정주화와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데 현재 동포정책은 부분적으로 국내 영주권 부여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우 동포의 정착에 따른 사회경제적 통합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동포인력

이 지방 중소기업이나 농축산업에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 받으며 이후 2년 이상 계속 근무시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낮은 보수 등으로 그 다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포의 정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동포인력에 대한 인적자본 기회의 확대, 취업지원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노동시장 및 사회통합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동포지원정책 및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동포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종합적인 외국인력 정책추진체계 수립이다. 현행 비전문외국인력과 전문인력으로 양분되어 있는 외국인력 정책을 결혼이민자, 유학생, 기타 단기취업 및 FTA에 따른 인력이동문제까지 포괄하여 종합적인 정책으로 통합하여야 한다. 산업구조, 인구구조 및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등 한국사회의 중장기 변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정책 추진체계 및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며 이를 위해 외국인력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 및 관련 통계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참고문헌

- 김복순·이규용. 2010. “최근 일용직 일자리의 구조변화와 원인.” 《노동리뷰》 2010년 5월호.
- 김정호. 2009. 『저숙련 외국인력유입의 경제적 영향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09-15.
- 법무부. 각 연도.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 유경준·김정호. 2010. 『외국인력의 대체성과 통계문제』. KDI 정책포럼 제226호. 한국개발연구원.
- 유길상 외. 2003. 『저숙련 외국인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유길상·이규용. 200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 외. 2010.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발간예정.
- 이규용·박성재. 2008. “외국인력 고용구조와 영향.” 《노동리뷰》 2008년 9월호.
- 이규용·이승렬. 2010.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영향.” 미간행 논문.
- 이규용·정진호. 2008. 『각국의 외국인력 임금수준과 최저임금 적용현황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중앙회.
-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 각호.
- 한국은행. 각 연도. 『국민계정』. 각호.

이규용은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전공분야는 노동경제학인데, 노동시장분석, 외국인력연구 및 일자리 창출 정책에 관심이 있다. 저서로는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및 중장기관리체계 개선방향 연구』(2007), 『독립전문가 양허대상 분야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2008), 『일자리지원사업의 효율화방안』(2008) 등이 있다. 전자우편은 leeky@kli.re.kr이다.

(2010. 6. 4. 접수; 2010. 6. 11. 수정; 2010. 6. 14. 채택)

An Analysis of the Foreign Workers Labor Market in Korea

Kyu-Yong Lee (Korea Labor Institute)

[Abstract]

The *Employment Permit Program for Foreigners* in 2004 and the *Visit and Employment Program for Ethnic Koreans with Foreign Citizenship* in 2007 gave impetus to the recent rapid increase of unskilled migrant workers in Korea. This paper examines the trends, employment and wage structures of migrant workers, and investigates the effects of migrant workers on wages and employment of the native workers for the perio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Employment Permit Program for Foreigners* and the *Visit and Employment Program for Ethnic Koreans with Foreign Citizenship*.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unskilled foreign workers has a possibility of reducing employment of the native workers, especially daily workers in the construction and the hotel-café-restaurant business sectors. Second, the ratio of unskilled migrant production workers has partially negative effects on wages of the unskilled native workers. Finally this paper suggest to strengthen labor marke test and introduce levy system

key words: Employment Permit Program for Foreigners, Visit and Employment Program for Ethnic Koreans with Foreign Citizenship, labor market test, levy system

무국적의 세계적 실태와 대응*

이철우**

이 글에서는 무국적의 의미와 유형, 다양한 배경에서 발생한 세계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무국적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검토한다. UNHCR과 난민단체들은 지구상에 1,200만 명이 넘는 무국적자가 있다고 추정한다. 여기에는 법률상의 무국적자와 사실상의 무국적자가 모두 포함된다. 이 글에서는 법률상의 무국적과 사실상의 무국적 사이의 구별이 얼마나 명확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법률상의 무국적을 중심으로 무국적자의 지위를 규정하고 무국적을 감소하려는 국제규범의 한계를 지적한다.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무국적을 발생케 하는 배경을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살피고, 다양한 배경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유형화하여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계 무국적자의 현황 및 한국 내 무국적자의 상황을 간략히 언급하는 것으로써 결론에 갈음한다.

주제어: 국적, 무국적, 난민, 국가승계, 종족성, 인구, 귀화

* 이 글은 정인섭·박정혜·이철우·이호택(2009)의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중 이철우의 집필 부분을 수정, 재정리한 결과물임을 밝힌다. 동 연구용역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4인을 저자로 출간한 논문(Chung *et al.*, 2010)에 요약되어 있다.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서론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실(UHCR)은 2008년 말 현재 전 세계 58개국에 걸쳐 약 660만 명의 무국적자가 존재한다고 발표했다(UHCR, 2009). UHCR이 파악한 무국적자를 국가별로, 그 규모가 큰 순위로 나열하면 <표 1>과 같다.

UHCR은 2003년 처음으로 모든 유엔 회원국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무국적의 실태를 탐지했다. 그 해 설문지를 수령한 191개국 중 74개국이 답신했다(UHCR, 2004). 그때부터 2008년까지 무국적자가 존재한다고 보고한 국가의 수는 30, 48, 49, 54, 58개로 증가했으며, 파악된 무국적자의 수도 증가해왔다. 2007년에서 2008년까지 불과 1년만에 UHCR이 파악한 무국적자는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350만의 무국적자를 보고한 태국의 조치에 기인한다. 태국은 2007년까지만 해도 무국적자의 추계가 힘든 나라였다. 그러다가 2008년 8월 민사등록법(Civil Registration Act)과 국적법(Nationality Act)을 개정해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와 등록을 제도화함으로써 무국적자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UHCR, 2004: 20-21).

그러나 660만 무국적자는 전체 무국적자의 일부에 불과하다. UHCR은 캄보디아, 콩고, 코트디부아르,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짐바브웨, 앙골라, 니제르, 인도에 무국적자가 다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며, 전 세계적으로 약 1,200만 명의 무국적자가 존재할 것으로 추산한다(UHCR, 2004: 21). 이러한 무국적 인구는 난민과 같은 규모다. 워싱턴에 소재한 난민지원 비정부단체 레퓨지 인터내셔널(Refugee International)의 추산도 이와 같다. 레퓨지 인터내셔널은 80개가 넘는 나라의 무국적자를 조사하여 2005년부터 보고서를 발간해왔으며, UHCR이 공식적으로 실태를 인정한 국가 외에도 여러 나라를 조사해 왔다. 레퓨지 인터내셔널에서 파악한 무국적의 실태는 <부록>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무국적이란 무엇인가? 무국적은 국적을 가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 국적이 없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무국적은 어느 나라의 국민으로도 취급받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어느 나라의 국적법에 의하더라도 국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특정 국가의 국민임을 주장할 근거가 있지만 실제로 그 나라의 보호를 받지도, 그 나라의 여권을 발급받지

도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또한 국민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가?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무국적, 즉 법률상의 무국적과 사실상의 무국적의 의미를 음미하고, 현실적으로 중요성을 갖는 사실상의 무국적을 취급하는 국제사회의 태도를 살핀다.

〈표 1〉 국가별 무국적자 수, 2008년 12월 31일

국가	무국적자	국가	무국적자
태국	3,500,000	그루지아	1,544
네팔	800,000	몬테네그로	1,500
미얀마	723,571	핀란드	1,397
라트비아	365,417	카타르	1,200
시리아	300,000	마케도니아	1,051
이라크	230,000	프랑스	1,006
에스토니아	110,315	슬로바키아	911
케냐	100,000	폴란드	839
쿠웨이트	92,000	이탈리아	722
사우디아라비아	70,000	벨기에	548
우크라이나	56,350	노르웨이	489
러시아	50,000	오스트리아	464
말레이시아	40,001	몽골리아	358
키르기스스탄	19,943	포르투갈	273
세르비아	17,050	그리스	258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10,000	루마니아	253
독일	9,322	타지키스탄	249
투르크메니스탄	8,500	헝가리	241
벨라루스	7,818	대한민국	236
카자흐스탄	7,602	영국	205
베트남	7,200	크로아티아	180
스웨덴	6,239	룩셈부르크	162
리투아니아	5,900	아이슬란드	116
네덜란드	4,591	스위스	75
슬로베니아	4,090	이집트	64
덴마크	3,687	스페인	26
터키	2,734	콜롬비아	11
아제르바이잔	2,078	파나마	1
몰도바	1,807		
일본	1,573	계	6,572,167

자료: UNHCR. (2009: Annex).

무국적은 왜 발생하는 것인가? 제3절에서는 무국적 발생의 배경을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개관한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무국적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살펴본다. 마지막 절에서는 한국계 해외 체류 무국적자와 한국내 무국적자 취급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으로서 결론에 갈음한다.

II. 무국적의 유형: 법률상의 무국적과 사실상의 무국적

지구상에 1,200만 명의 무국적자가 존재한다고 할 때, 그 가운데에는 “어떠한 국가에 의하여도 그 국가 법률의 시행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 자,” 즉 법률상의(de jure) 무국적자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서류의 미비 등으로 “국적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실효적 국적(effective nationality)이 없고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실상의(de facto) 무국적자도 포함된다.¹⁾ 1991년 소비에트연방의 해체로 출신 공화국 외부에 거주하던 2억8천7백만 소비에트 공민은 연방의 시민권을 상실하고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해야 했으나 많은 사람들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무국적 상태로 전락했다. 이는 법률상 무국적의 대표적 예다. 이와 달리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서 숨어 지내는 북한인으로부터 출생한 자녀는 법적으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임을 주장할 자격이 있으나 그 지위를 등록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이는 사실상 무국적의 좋은 예다.

사실상의 무국적자는 지구상의 무국적자의 상당한 비율을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의 무국적이 법률상의 무국적에 비해 더 해소하기 어렵다. 법률상의 무국적이 국민의 자격 범위를 넓히는 법적 조치로 해소되는 것

1) 위의 법률상의 무국적자에 대한 정의는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제1조 제1항에 의한다. 위에서 인용한 사실상 무국적자의 정의는 무국적자에 “국적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람을 포함한 유엔총회 결의 UNGA A/RES/50/152 (9 February 1996) 및 UNHCR & IPU (2005: 11)에 따른다. 후자의 한국어본인 「국적과 무국적: 국회의원을 위한 편람」에서는 effective nationality를 “유효한 국적”이라 번역했으나 유효하다는 표현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뜻으로 오인될 수 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국적을 가지지만 실제로 국적에 수반되는 권리와 지위를 누릴 수 있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데 적합한 “실효적 국적”이라는 번역어가 바람직하다. 학자 중에는 법적(legal) 무국적과 실효적(effective) 무국적이라는 용어로서 양자를 구분하기도 한다(Lee, 2005: 4).

임에 비해 사실상의 무국적은 행정의 여러 층위에서 작용하는 실무와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의 태도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제도적 결정만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법률상의 무국적과 사실상의 무국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사실상의 무국적을 만들어내는 행위의 태양(態樣)은 법률상의 무국적자를 취급하는 데 포함되어 나타나고 법률상의 무국적이 해소된 후에도 지속된다. 사실상의 무국적은 국적에 수반되는 권리와 지위를 행사할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정의되지만 그렇게 된 이유가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적국이 보호를 제공하는 데 소극적이거나 보호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면 국적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법률상의 무국적과 구별하기 어렵다. 무국적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방글라데시의 비하르인과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출생한 아이티인의 경우를 보자.

1971년 동·서파키스탄의 분열 속에 동파키스탄(방글라데시)에 남겨진 수십만의 우르두(Urdu) 언어 사용 비하르인(Biharis)은 37년에 걸친 무국적 상태를 경험했다. 이들은 무슬림으로서 내전 중에 서파키스탄을 지지했으나 내전 후 파키스탄 정부는 이들이 자국민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거주국인 방글라데시는 다수 민족인 벵갈인과 구별되는 그들에 대해 국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도미니카공화국에서 거주하는 아이티인으로부터 출생한 자는 도미니카공화국 헌법이 출생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미니카공화국의 국적을 얻지 못했다. 법적인 체류자가 아니라 통과중(in transit)인 일시체류자라는 이유에서였다.²⁾ 비하르인과 아이티인은 공식적으로 국적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법률상의 무국적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들은 모두 해당국의 국적을 가져야 마땅하다는 사법적 결정을 이끌어냈다. 비하르인의 경우에는 일부 인사가 방글라데시 국내 법원에 정부를 제소함으로써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졌는바, 2005년 방글라데시 고등법원(High Court)은 방글라데시에서 출생한 우르두어 구사자, 또는 부 또는 조부가 방글라데시에서 출생한 자로서 1971년 당시 방글라데시에서 영주하고 있었거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주해온 자는 “법의 작용에 의해(by operation of law),” 즉 당사

2) 이는 도미니카공화국 대법원이 취한 입장이다.

자의 신청 등 별도의 절차 없이 국적을 갖는다고 선언했다.³⁾ 이에 따르면, 비하르인은 법적으로 방글라데시 국민이지만 정부의 잘못된 행정에 의해 무국적자로 취급되었을 뿐이다.

아이티인 사건은 이와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사법적 결정이 아이티 국내 법원이 아닌 미주인권재판소의 결정이었고 아이티 정부는 여전히 독자적인 법해석과 적용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출생한 아이티 아동의 출생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것을 다투어 2인이 국가를 상대로 미주인권위원회(Inter-American Commission of Human Rights)에 진정함으로써 개시된 사건에 대해 미주인권재판소(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조치가 국적에 대한 권리와 평등보호를 규정한 미주인권협약(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제20조와 제24조 등을 침해했다고 판시하고 원고의 국적을 인정하고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⁴⁾ 그러나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아이티인이 통과 중의 일시체류자라서 출생지주의에 의한 국적 취득을 할 수 없다는 도미니카 대법원의 결정에 구속된다고 주장한다. 도미니카 대법원은 미주인권재판소의 결정을 비웃는 듯 원고들이 무국적자가 아니라 혈통주의에 의해 아이티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했다. 비하르인의 국적을 부정한 것이 위법하였음을 방글라데시 국가가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달리 도미니카공화국은 아이티계 출생자가 도미니카공화국 국적을 가지지 않음을 공식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도미니카공화국이 2004년에 이민법(Migration Law)을 제정해서야 비로소 통과체류자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바 이를 그 이전에 출생한 자에게 소급적용해 출생자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Margerin, 2008; Wooding, 2009: 24). 즉 도미니카공화국 법을 올바르게 해석하면 아이티계 출생자는 도미니카 국적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미주인권협약의 당사국을 구속하는 미주인권재판소의 결정

3) *Sadakat Khan et al. v. The Chief Election Commissioner*, 18 May 2008 (Southwick and Lynch, 2009: 17; Southwick and Calabia, 2008 참조).

4) *Yean and Bosico v. Dominican Republic*, 8 September 2005. 판결 전문은 <http://www.unhcr.org/refworld/publisher/IACRTHR/CASELAW/44e497d94,0.html>에서 접근 가능 (접속: 2010. 3. 12). 언론보도로는 “A Rights Advocate's Work Divides Dominicans,” *New York Times*, 29 September 2007.

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그러나 무국적 여부를 판단하는 상위의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관련되는 국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를 수밖에 없다. 즉 도미니카공화국이 아이티계 출생자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거부한 결과 그들이 어느 나라의 국적도 가질 수 없다면 설사 도미니카공화국의 판단이 법리에 반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그 결과로써 국적을 갖지 못하는 자는 법률상의 무국적이 되는 것이다.

아무튼 비하르인에 대한 방글라데시의 처우처럼 당해국의 현행법에 의해서도 마땅히 국적을 가져야 하는 사람에 대해 정부가 위법하게 국적을 부정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어떤 집단의 국적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출생신고와 등록을 어렵게 해서 결국 국적을 주장할 수 없게 하고 사실상 무국적 상태가 되게 하는 것과 구별되지 않는다. 또 위법하게 국적을 부정당하거나 국적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자와 국가의 일관되고 (형식적으로) 적법한 법 적용에 의해 국적을 부정당한 자 사이에 얼마나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다. 앞에서 소개한 각국 사례들을 보아도 “어떠한 국가에 의하여도 그 국가 법률의 시행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 자”와 국적을 입증할 수 없거나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의 구별은 애매하다. 한편 어느 나라의 국적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무국적임을 입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즉 어떤 사람이 무국적임을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국제법상의 처우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를 받은 국가가 그과연 무국적자인지, 아니면 국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지위를 주장하거나 행사하지 않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⁵⁾

법적으로는 국적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향유할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은 무국적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법적 노력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을 수 없었다. 유엔 창립 직후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와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유엔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무국적에 대한 정책적 연구를 수행하도록 했다. 사실상의 무국적은 그 단계에서부터 쟁점으로 등장했다. 여기에서 채택된 보고서 「무국적의 연구」(A Study of Statelessness)에서는 사실상의 무국적을 “국적을 박탈당하지는 않았으나

5) 무국적자지위협약도 무국적을 누가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의 문제는 다루고 있지 않다.

국가 당국의 보호와 원조를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자,” 즉 “국적국을 떠나 국가 당국으로부터 더 이상 보호와 원조를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당국이 보호와 원조를 부여하기를 거부하거나 본인 스스로 국적국의 원조와 보호를 포기한 자”로 정의했다(United Nations, 1949: 7).

이러한 사람을 무국적자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무국적자지위협약으로 약칭함)을 체결할 때 격론을 불러일으켰다. 소극적인 견해는 사실상 무국적자의 지위가 당사자에 의해 남용될 수 있음에 주목했다. 이 견해가 시사하듯이 사실상의 무국적을 논의할 때 초점에 둔 것은 국적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를 포기하는 당사자를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라는 협소한 문제였다(Robinson, 1995: 8). 즉 「무국적의 연구」(A Study of Statelessness)에서 정의한 사실상의 무국적 상태 가운데 국가가 보호와 원조를 거부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결국 무국적자지위협약을 체결한 뉴욕회의에서는 협약 본문에서는 법률상의 무국적만을 규정하고 사실상의 무국적은 회의의 최종의정서(Final Act)에 권고의 형태로 언급하여 협약에 부속시키는 데 합의했다. 이때의 사실상의 무국적은 본인이 국적국의 보호와 원조를 포기한 경우로 제한했다. 최종의정서는 “각 체약국은 한 국가의 국적을 가진 자가 그 국가의 보호를 포기함에 있어서 유효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본 협약이 무국적자에게 부여하는 처우를 부여하는 것의 가능성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고 권고했다(유엔난민기구/국제의회연맹, 2005: 11).

「무국적의 연구」에서 정의한 사실상의 무국적자는 난민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원래 제2차 세계대전기와 그 직후에 나타난 난민의 다수는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무국적자이기도 했으므로 무국적과 난민은 UNHCR의 전신인 국제난민기구(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에 의해 공히 다루어졌다. 그러나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무국적을 연구할 시간적 제약 때문에 무국적을 다루기 위해 기초된 의정서의 채택은 뒤로 미루어져 결국 3년 후인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으로 체결되었다(유엔난민기구/국제의회연맹, 2005: 10). 난민과 무국적이 별개의 협약으로 다루어지게 됨에 따라 두 협약의 적용대상이 문제가 되는데 양자가 경합할 경우 난민협약이 더 강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상의 무국적자

와 난민의 일치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되던 협약 체결 당시에는 사실상의 무국적을 난민보호의 차원에서 다룸으로써 족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해서 이상할 것은 없다.⁶⁾ 그러나 양자의 중첩이 혼하기는 하지만 난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상의 무국적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UNHCR은 근래에 문제가 되는 무국적자 중에는 법적으로 무국적자가 아니면서 난민으로 비호 받을 수도 없는 자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이는 1949년 연구에서도 이미 감안되었다(유엔난민기구/국제의회연맹, 2005: 12; United Nations, 1949: 7-8).⁷⁾ 게다가 1954년 최종의정서에서 사실상의 무국적자의 처우를 규정한 것에는 논리적인 모순도 보인다. 즉 본인 스스로 국적국의 보호를 포기한 사람은 무국적자로 취급될 여지가 있지만 이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국적국으로부터 보호를 거부당한 사람은 난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아무런 국제법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1961년의 「무국적의 감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이하 무국적감소협약으로 약칭함)은 1954년 무국적자지위협약과 마찬가지로 법률상의 무국적을 중심으로 한다. 사실상의 무국적은 그에 부속된 「향후 무국적의 제거 또는 감소에 관한 국제연합 최종의정서」(Final Act of the United Nations on the Elimination or Reduction of Future Statelessness)에 담긴 결의(Resolutions)에서 규정할 뿐인데, 사실상의 무국적이 무엇인지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는 “사실상의 무국적자가 실효적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법률상의 무국적자로 취급할 것을 권고”했다. 1995년 UNHCR 집행위원회는 무국적자 보호를 위한 UNHCR의 역할을 적극 규정하고 포괄적 지침을 부여하기 위한 결정을 채택하면서 무국적에 “국적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으며, 같은 문언은 이듬해 난민보호에 관한 UNHCR의 지속적 역할을 확인하고 요청하는 유엔총회의 결의에 재생되었다.⁸⁾ 또 2006년에 채택된 UNHCR의 결

6) 국적/무국적 자체가 법적 개념이므로 사실상의 무국적은 잘못된 용어라는 지적도 있다. 그에 따르면 무국적자는 법률상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de jure unprotected person*)과 등치되며 사실상 보호받지 못하는(*de facto unprotected*) 난민과 대비된다(Weis, 1979: 164).

7) 다만 후자에서는 난민이 아닌 무국적자의 처지를 다소 나이브하게 인지했던 것 같다. 난민은 자기의 민사신분에 관한 기록을 얻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무국적자의 경우 정부가 기록을 제공하는 것까지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8) UNHCR Executive Committee Conclusion on the Prevention and Reduction of Statelessness

정에서는 “확정되지 않은(undetermined) 국적을 가진 개인들”을 “무국적자”와 나란히 언급했다.⁹⁾ 이는 법률상의 무국적자를 엄격한 의미의 무국적자로 정의하고 사실상의 무국적자를 무국적자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그에 준해 취급해야 할 자인 것처럼 규정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앞의 유엔총회의 결의에서처럼 “국적을 입증하지 못하는” 자를 무국적의 제2범주로 적극 규정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Marly, 2008: 32 참조).

III. 무국적의 원인과 배경

알려진 무국적 사례들을 중심으로 무국적의 원인과 배경을 범주화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¹⁰⁾

첫째, 국가승계는 무국적의 대량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다. 제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발생한 영토의 변경, 전후 식민제국의 해체와 신생국의 독립의 와중에서 많은 무국적자가 발생했으며, 1990년대에도 소비에트연방의 해체로 인해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대규모의 무국적 인구가 탄생했다. 둘째, 종족분쟁(ethnic conflict) 및 내전에 따른 국적박탈 또한 중요한 원인이다. 특히 국가승계에 따른 무국적 발생 배경을 살펴보면 국가의 동일성이 변경되는 것 자체가 종족분쟁에 의하거나 종족분쟁이 국가의 동일성을 변경시키고 이로 인해 특정 집단을 국민으로부터 배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배제를 필연적으로 야기하는 국적법의 규정에 따라 무국적이 발생한다. 부계혈통에 의해서만 선천적 국적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법제 및 후천적 국적취득의 요건으로서 원국적을 먼저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법제, 국적의 상실을 용이하게 하는 법제에서는 당연히 무국적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 넷째, 행정적 미비와 관료주의로 인해 사실상의 무국적

and the Protection of Stateless Persons, Conclusion No. 78 (XLVI), 1995; UNGA A/RES/50/152, 9 February 1996.

9) UNHCR Executive Committee Conclusion on Identification, Prevention and Reduction of Statelessness and Protection of Stateless Persons, Conclusion No. 106 (LVII), 2006.

10) 세계의 무국적 사례를 총괄적으로 소개하는 <부록>을 참조.

이 발생한다. 출생한 아동의 등록 및 인구의 파악이 불철저한 국가에서는 국적을 인정받기에 필요한 정보가 관리되지 못해 국민의 범위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러한 배제가 단지 국가의 기능적 결함이나 약체성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집단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 발생하는 무국적은 법률상의 무국적과 큰 차이가 없다. 다섯째, 경제적 동기에 의한 불법 이주를 배경으로 무국적이 발생한다. 불법체류 중에 있는 이주자가 계속적인 체류를 위해 국적을 주장하지 못하거나 출생하는 자녀의 국적을 확인받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체류국의 국적을 얻거나 주장하기 위해 출신국의 국적을 스스로 방기하는 경우도 있다. 여섯째,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이주하는 전통을 가진 종족집단은 체류국 또는 거주국의 행정에 복속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국적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오늘날 유목민은 사라지고 이동하던 종족도 정주하게 되었지만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에 의해 거주국에서 신분등록을 소홀히 하든가 거주국의 다수집단으로부터 차별을 받아 등록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상의 원인과 배경을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가승계에 따른 무국적의 발생

1990년대에 들어와 많은 사람들은 국민국가는 낡은 것이 되었고 국가를 초극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말하지만 사실 1990년대는 60년대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수의 국가가 생성된 시기였다(Roader, 2007: 6). 이 시기의 국가 발생을 가져온 가장 주된 사태는 소비에트연방의 해체와 유고사회주의연방 및 체코슬로바키아의 분열이다.

1991년 민스크협정(Minsk Agreement)에 의해 법적으로 개시된 소비에트연방의 해체는 15개의 주권 국가를 탄생시켰으며, 구 소비에트 공민들의 소속체계를 일변시켰다. 소비에트 공민은 단일의 연방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union republic)에의 소속은 거주에 기초한 기술적인 신분에 불과했다.¹¹⁾ 소

11) “오늘날 소비에트 법리에서 한 연방구성공화국에 거주하는 것과 그 공화국의 시민권을 보유하는 것은 거의 동일한 표현이다.... 공화국 시민권의 법적 속성들을 밝히는 데 입법적으로 실패했다는 사실은 빠진 해답을 찾는 데 거주의 개념 외에는 아무런 실천적 대안을 남기지 않는다. 공화국

비에트연방은 연방 내부의 여행자에게 국내여권(internal passport)을 발급했다. 여기에는 소지자의 민족소속(natsional'nost')과 주민등록(propiska)이 기재되었다.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된 후 어디에 정주하고 있는가가 새로이 탄생한 주권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주된 기준이 되긴 했으나 국적으로 자동적으로 전환한 것은 아니었다. 아울러 거주 및 생활의 현실과 등록된 사실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그 괴리 속에서 무국적이 발생했다. 다음의 기구한 사연은 포스트소비에트 무국적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2007년 당시 35세의 알렉세이 마르티노프(Alexei Martinov)는 러시아인 부모로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 출생했다. 1990년 그는 우크라이나에 유학하기 위해 주민등록(propiska)을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우크라이나로 이전했다. 그러다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일시 귀환했을 때 소련방이 해체되었다. 돈을 마련하지 못한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으나 우크라이나에서는 공공요금 미납을 이유로 주민등록 이전을 거부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반 러시아 정서가 용출하여 그의 부모는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이주했고 그는 배우자를 좇아 배우자의 친정이 있는 카자흐스탄으로 옮겼다. 그러나 이곳에서 주민등록을 얻지 못하게 되자 부모가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재이주했다. 그의 부친은 그 전에 사망했고 모친과 누이는 현지인과 결혼하여 투르크메니스탄 국적을 취득한 뒤였다. 알렉세이 마르티노프는 여기에서도 국적은 물론 주민등록을 얻지 못했다. 좌절한 그의 배우자는 자녀를 두고 친정으로 돌아가버렸고, 두 자녀와 그는 투르크멘 당국에 의해 우즈베키스탄으로 퇴거되었다. 그러나 돌아가고 싶지 않은 우즈베키스탄에조차 입국할 수 없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이 있음을 주장할 아무런 서류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와 자녀는 열차의 종착점인 타지키스탄에 도착했고 이곳에서 구호기관의 도움을 받아 막노동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타지키스탄 당국은 그가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스탄의 어느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 중인데, 그는 러시아연방의 동포재정착 프로그램에 따라 러시아로 가기를 희망한다(Tan, 2007: 10-11).

시민권의 득상의 요건을 규정하는 모든 지방입법이 1939년 6월 2일의 연방 명령에 따라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개인이 어느 공화국의 시민권을 부여받았는가의 문제를 결정하는 유일한 객관적 기준으로 주소만이 남게 된 것이다”(Ginsburgs, 1983: 31-32).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되었을 때 구소련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은 대체로 거주 사실에 기초하여 국적을 부여했지만 알렉세이 마르티노프의 예에서 보듯이 거주를 입증하는 주민등록을 결여하는 경우 국적을 얻지 못했다. 이에 비해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에서는 훨씬 더 배제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최초 국민의 범위를 정했다. 양국은 독립을 선포하면서 법적 상태를 스탈린의 무력에 의해 소비에트에 병합된 1940년으로 돌렸고 국적 또한 그에 따라 인정했다. 즉 양국은 1940년 병합 당시 당해국의 국민인 자와 그들의 직계비속만을 국민으로 인정한 후 그 외의 모든 사람은 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도록 했다. 귀화에는 당해국의 언어 구사능력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입법조치에 의해 양국에 거주하던 다수의 구 소비에트 연방 공민이 무국적자로 전락했다. 1992년 에스토니아에서는 무국적자가 전 인구의 32%에 달했고 귀화에 의해 무국적자가 점진적으로 감소했지만 부록에서 보았듯이 2004년 EU 가입 당시에도 162,000명, 2005년에도 이르러서도 10%를 상회하는 136,000명의 정주자가 무국적 상태에 있었다. 라트비아에서도 1993년 전 인구의 28%가 거주국 국적을 가지지 않았으며 2005년에도 비국적자가 20%를 상회했다. 부록에서 보았듯이 2004년 EU 가입 당시 라트비아 인구 중 29%가 러시아계였는데 그 중 절반만이 라트비아 국적을 가졌고 47%는 무국적 상태에 있었다. 러시아계 무국적자는 34만에 달했고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계도 10만여 명으로 추산되었다. 다만 라트비아에서는 구소비에트연방공민법(Former USSR Citizens Act)을 제정하여 구 소비에트연방 공민으로서 무국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반 외국인이 누리지 못하는 일정한 권리—일각에서는 이를 기능적 국적(functional nationality)이라 말한다—를 부여했다.¹²⁾

12) 소비에트연방 해체 후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의 국적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야르브(Järve, 2007)와 크루마(Krūma, 2007a)의 연구를 참조. 발틱 3국 중 리투아니아는 에스토니아 및 라트비아와 달리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되기 전인 1989년 국적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대부분의 거주자가 리투아니아 국적을 가지도록 했다. 1991년 독립 후 새 국적법을 제정하여 국적취득의 요건을 좀더 엄격하게 했으나 이미 대다수의 인구가 국적을 취득했으므로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다. 1940년 병합 이전의 기준에 의해 국민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에 대한 민족성원의 지지도 에스토니아 및 라트비아에 비해 현저히 낮아 1993년 여론조사에 의하면 에스토니아인의 44%, 라트비아인의 52%가 그러한 조치를 지지한 것에 비해 리투아니아에서는 16%만이 지지를 보냈다. 리투아니아 국적법에 대해서는 크루마(Krūma, 2007b) 참조.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를 제외한 구 소비에트연방구성공화국에서 거주를 기준으로 국민의 범위를 새로이 확정한 것에 비해 체코슬로바키아와 유고슬라비아에 서는 연방구성공화국에의 형식적 소속(즉 공화국 시민권)을 기준으로 최초 국민을 정의했다(Baršová, 2007: 180). 체코공화국은 체코슬로바키아 국민 중 체코 시민권을 가진 자, 즉 체코인으로 등록되었던 자에 한해 체코공화국 국적을 부여했다. 그러면서 슬로바키아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는 2년 이상 체코 지역에 거주했고 전과기록이 없는 자에 한해 정해진 기간에 본인의 선택에 의해 체코 국적을 부여했는데 슬로바키아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나 체코에 거주하던 많은 수의 로마(Roma, 집시)가 그로부터 배제되었다. 체코에 거주하는 로마는 25-30만에 이르나 그 중 얼마나 많은 수가 무국적 상태에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체코공화국은 1999년 국적법을 개정하여 구 체코슬로바키아 국민으로서 체코공화국의 영토가 된 지역에서 영주해왔음을 여러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그 경우 전과 여부를 묻지 않도록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 슬로바키아는 체코공화국과 달리 처음부터 체코슬로바키아 국민 중 거주지에 관계없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 슬로바키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¹³⁾

유고사회주의연방을 구성했던 공화국들은 연방 당시 공화국에의 소속을 기준으로 국민의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국적의 계속성을 보장하고 법률상의 무국적을 방지하고자 했으나 등록된 공화국이 아닌 곳에서 정주하던 사람이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랐고 발칸전쟁의 여파로 문서를 상실하여 소속을 입증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발생했다. UNHCR은 상주(habitual residence)에 기초하여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을 독립 공화국들에 권고했다(UNHCR Regional Bureau for Europe, 1997). 등록된 공화국을 떠나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거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등록된 공화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무국적의 문제는 발생하지

13) 유엔난민기구/국제의회연맹(2005: 37)과 바르소바(Baršová, 2007: 175)에서는 체코공화국 국적법이 법률상의 무국적을 발생케 했다는 지적이 근거 없는 비판이라고 말한다. 체코공화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외국(슬로바키아) 국적을 취득했으며 단지 국적국이 아닌 곳(체코)에 거주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체코에 거주하는 비체코인에게 슬로바키아가 일방적으로 국적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슬로바키아 국적을 가질 자격을 준 것이고 슬로바키아 국적을 신청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슬로바키아 국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주장은 타당치 않다. 같은 글에서는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입법의 차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않는다. 그러나 등록이나 서류상의 입증 자체가 어렵다면 사실상의 무국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슬로베니아에서는 거주자명부에서 비슬로베니아계 거주자를 말소했는데 이로 인해 다수의 로마가 무국적자가 되었다(Hammarberg, 2008).

2. 종족갈등에 따른 무국적의 발생

국가승계로부터 발생하는 무국적은 종족 또는 민족집단간의 갈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국가의 동일성이 변동하면서 발생하는 무국적이라도 국가승계에 따른 무국적과 구별하여 종족분쟁의 측면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앞에서 언급한 동·서파키스탄의 분열에 따른 비하르인의 무국적화도 국가승계와 관련되어 있지만 공산권 붕괴로 인한 국가승계와는 다른 점이 있다. 국가승계에 따르는 국적 문제는 어떤 영토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 국가가 바뀔 때 원래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영토에 거주하던 자의 국적을 정하는 문제이다. 비하르인의 문제는 동·서파키스탄의 분열 후 동파키스탄, 즉 방글라데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종교와 종족적 배경이 다른 특정 집단을 배제한 것이어서 영토의 귀속주체가 달라지면서 그 영토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국적을 정하는 일반적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하는 문제와는 다르다. 이처럼 신생국이 그 영토에 거주하는 사람 중 종족적 배경을 기준으로 배제하는 것은 식민지 상태에서 독립한 국가가 국민의 범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종종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로 스리랑카의 고지대 타밀족(Hill Tamis)을 들 수 있다.

스리랑카의 타밀인은 1820-1840년에 영국 식민 당국이 차(茶)생산에 활용하기 위해 인도로부터 들여온 노동자의 자손이다. 실론이 독립한 후 제정한 1948년의 국적법은 2세대 이상에 걸쳐 실론에 거주한 자에게만 국적을 부여했는데 고지대 타밀인은 거주 역사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위해 인도로 돌아가는 경향과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국적 취득에 실패했다. 1949년에는 인도파키스탄인 거주자법(Indo-Pakistani Resident Act)에 의해 7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거주했고 일정한 재산 요건을 충족한 인도-파키스탄계 거주자에게 국적을 부여했으나 많은 타밀인은 이 역시도 충족하지 못했다. 무국적 상태에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실론과 인도는 여러 차례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은 인도와

실론이 목표를 정해 국적을 부여하고 인도는 인도 국적을 택한 사람들의 이주를 받아들인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50만여 명이 인도 국적을, 47만 명이 스리랑카 국적을 신청했는데 인도의 국적 취득 절차가 지연되다가 1984년 인도가 협정의 효력 상실을 선언함으로써 협력은 종료되었다. 당시 국적 신청을 하고 대기 중인 자가 86,000명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 인도계 무국적자의 일부에 불과했다. 결국 스리랑카는 1988년 무국적자 시민권부여법(Grant of Citizenship to Stateless Persons Act)을 제정하여 인도계 무국적자에게 국적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2003년에 이르러서도 무려 30만의 무국적자가 남아 있었다. 이에 스리랑카 정부는 인도출신인 시민권부여법(Grant of Citizenship to Persons of Indian Origin Act)을 제정하여 남아 있는 무국적자가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무국적자의 수는 일거에 190,000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많은 고지대 타밀인 무국적자가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절차가 번거로워 국적 취득을 미루는 실정이다(Perera, 2007: 20-21).

식민지 지배에 의한 이주와 종족적 구성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국적 박탈 자체는 독립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버마 아라칸(Arakan, 후에 Rahkine로 명칭 변경) 주는 19세기 초 버마에 의해 정복된 후 다시 영국-버마전쟁에 의해 영국의 인도 지배의 일부가 되었다가 버마가 독립하면서 버마의 영토가 된 곳이다. 버마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로HINGYA(로HINGYA)를 이질적인 민족으로 간주하다가 급기야 그들의 국적을 박탈했다. 즉 1982년 국적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버마 국적을 영국의 지배가 시작되는 1823년 이전에 버마에 정착해 있던 135개의 종족(national races)에 속했던 사람의 자손에 한정했고 로HINGYA를 그로부터 제외했다. 국적을 박탈당한 로HINGYA는 거주이전의 자유도 부정당하고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로HINGYA는 승인을 받지 않고는 결혼을 할 수 없고 1994년부터는 출생자 등록도 받아주지 않는다. 70만여 로HINGYA 중 20만 이상이 방글라데시로 망명하고 다른 일부는 보트피플이 되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다른 나라로 피신했으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UNHCR의 난민재정착 프로그램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해외에 있는 자는 국내의 신원등록이 말소되어 귀환할 수도 없다. 미얀마 당국은 로HINGYA를 방글라데시와 같은 벵갈인으로 간주하나 방글라데시 역시 이들을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국에 망명한 로HINGYA를 위해 충분한 원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Lewa, 2009: 11-13; Garcia and Olson, 2008).¹⁴⁾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리아의 사례는 국가승계와 종족갈등이 결합한 대표적인 예다. 1993년 에리트리아는 에티오피아로부터 평화롭게 독립했다. 신생국 에리트리아의 국적은 희망에 따라 취득할 수 있었으며 많은 에리트리아계 에티오피아인이 에리트리아 국적을 취득했다. 이들은 독립을 결정하는 국민투표에도 참여했다. 당시에는 양국이 국적을 어떻게 구획지를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었다. 그러나 1998-2000년 국경을 놓고 분쟁을 벌인 결과 에리트리아계 에티오피아인의 국적 박탈이라는 사태가 발생했다. 에티오피아는 7만 명을 에리트리아로 추방하면서 이들이 에리트리아 국민투표에서 투표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국적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국내에 남아 있던 에리트리아인에 대해서는 외국인등록을 강요했다. 에리트리아 역시 7만 명의 에티오피아인을 추방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이 사태는 결국 에티오피아가 2003년 12월에 국적법을 개정하여 에티오피아 영토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에티오피아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Lynch and Southwick, 2008; Southwick, 2009: 15-17; 유엔난민기구/국제의회연맹, 2005: 18).

3. 무국적을 발생케 하는 국적법 규정: 부계혈통주의, 귀화 요건으로서 선행적 국적포기, 국적의 박탈 등

국가승계나 종족분쟁에 수반되는 정치적 동기에 의해 모습지어진 국적법이 아니라도 국적 부여의 기준과 요건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무국적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선천적 국적취득의 원리로서 부계혈통주의를 택하는 경우 무국적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많은 나라가 해외에서 출생한 자의 국적 취득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중동의 이슬람권과 가부장적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는 부계혈통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부록에서 보았듯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오만, 카타르, 요르단, 이라크 등이 부계혈통주의를 취하고 있다. 부탄은 부모 중 어느 일방이라도 외국인이라면 국적을 취득할 수 없게 하여 일반적인 부계혈통주의보다 더 국적 취득을 어렵게 한다. 바하마제도도 부계혈통주의를 취하는 한편 모가 국민인 자에 대해서는 18세에 국적 취득 기회

14) CNN이 2009년 6월 28일 방영한 “A Forgotten People” 참조.

를 부여하나 신청 기간이 짧고 요건이 복잡하여 실제로는 국적을 얻기 힘들다. 알제리와 케냐는 해외 출생자에게는 부계혈통에 의해서만 국적을 부여한다. 인도도 양계혈통주의를 취하지만 부모 양자 중 어느 일방이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는 그로부터 출생한 자에게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집트와 레바논은 양계혈통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팔레스타인인을 부모 하여 출생한 자에게는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다. 팔레스타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팔레스타인인의 정체성을 존중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자국 내 팔레스타인계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이집트 외에도 이란, 바레인, 모로코, 인도네시아 등이 2004년 이후 양계혈통주의로 법을 개정했으나 모든 나라에서 남녀가 완전 평등해졌거나 법 개정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아직도 부계혈통주의 국가로 분류되기도 한다(이상 뒤의 <부록> 참조).

거주국에서 국적을 부여받지 못하게 되면 외국인인 부(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데 많은 나라는 해외에서 출생하는 자에게 혈통주의에 의해 국적을 부여하면서도 국내에서 출생하는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지는 않으므로 국적 취득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아이티인 부모로부터 출생한 자에 대해 도미니카공화국이 국적을 부여하지 않음을 앞에서 보았는데, 그들에게는 아이티 역시 국적을 부여하는 데 인색하다. 혈통주의에 의해 해외 출생자에게 국적을 부여한다고 하지만 부모 역시 아이티에서 출생한 경우에만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Margerin, 2008). 이런 제한은 선·후진국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미국은 해외에서 출생한 미국인으로부터 출생한 자에 대해서는 그가 출생하기 전 부 또는 모가 미국 내에 거주했어야 한다는 요건을 부가한다(이철우, 2004b: 240). 그 외에도 많은 나라가 해외에서 출생한 자에게는 국적보유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만 국적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적을 갖지 못한다.¹⁵⁾ 이처럼 국민의 자녀라고 해서 그가 어디에서 출생하든지 당연히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해외 출생자의 국적 취득을 제한하는 나라의 국적을 갖는 부와 부계혈통주의를 취하는 나라의 국적을 갖는 모로부터 모의 국적국에서 출생한

15) <부록>에서 보듯이, 캐나다는 해외 출생 2세대에 대해서는 일단 출생과 더불어 국적을 가지게 하지만 28세가 되기 전에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않으면 28세가 될 때 국적을 상실시킨다.

자는 무국적자가 되기 쉽다.

특히 부계혈통주의 국가에서 미국인 남성과 현지 여성의 혼외관계에서 출생한 자는 무국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은 해외에서 출생한 자에 대해 부모양계혈통주의에 의해 시민권을 부여하지만 부가 미국 시민이고 모가 외국인인 자가 부모의 혼외(out of wedlock) 상태에서 출생한 경우 까다로운 요건을 부가하기 때문이다. 즉 혈연관계를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써 입증해야 하고, 당사자가 18세에 이를 때까지 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해야 하며, 당사자가 18세에 이르기 전에 그의 거주국 또는 주소국의 법에 따라 인지하거나, 부가 선서 하에 작성한 서면으로 부자관계를 인정하거나, 법원의 재판에 의해 부자관계가 확증될 것을 요구한다.¹⁶⁾ <부록>에서 보듯이, 일본은 2008년 위헌판결이 있기 전까지 일본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서 혼외자로 출생한 자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기 어려웠다.

무국적감소협약은 자국 영토에서 출생한 자가 다른 방법으로 국적을 갖지 못한다면 자국적을 부여하도록 한다(제1조 제1항). 또 체약국인 모의 국적국에서 유효한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가 무국적자가 될 사정에 있다면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제1조 제3항). 아울러 외국에서 출생했더라도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체약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달리 국적을 갖지 못한다면 그에게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제4조). 2003년 UNHCR의 설문조사에 답변한 74개국 중 23%만이 무국적 감소협약의 당사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응한 국가의 79.7%가 자국

16) 8 USC §1409(a). 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에 주둔하던 미군과 현지 여성 사이에서 출생한 혼혈인을 아메라시안(Amerasians)이라한다. 이들은 미국 시민을 부(父)로 하여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갖는 경우가 적다. 혼외관계에서 출생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거주국 국적 또한 취득하지 못하여 무국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2003년 미 하원의원 로프그렌(Zoe Lofgren)은 베트남계 아메라시안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아메라시안귀화법(Amerasian Naturalization Act)을 발의했고 2004년 짐 모란(Jim Moran)은 5개국 아메라시안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으나 모두 입법화에 이르지 못했다. 이 법안들은 아메라시안이민법에 의해 이미 미국에 이주한 아메라시안만을 대상으로 하며 출생한 나라에 계속 거주하는 자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 미군과 한국 여성 사이에서 출생한 혼외자는 부를 알 수 있는 한 부계혈통주의를 취한 한국 국적법 때문에 무국적자가 되기 쉬웠으나 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의 국적에 따른다는 다른 규정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다. 아메라시안의 국적 문제와 귀화법안에 대해서는 이철우(2004a)를 참조.

영토에서 출생한 아동이 달리 국적을 갖지 못한다면 무국적 방지 차원에서 국적을 부여한다고 답했고, 90.5%가 국민의 자녀로서 외국에서 출생한 자가 달리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면 국적을 부여한다고 보고했다(UNHCR, 2004). 사실 무국적이 될 아동에 대해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은 어느 정도 보편적 인권으로 인식되어 있다.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7조 제2항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아동이 무국적자가 되지 않도록 출생을 등록하고 국적 취득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그렇지만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러한 보호가 세계적으로 확립된 관행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무국적을 발생시키는 국적법 중에는 귀화의 요건으로서 미리 원국적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입법례가 있다. 가까운 타이완만 하더라도 귀화 신청을 할 때 국적 포기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을 무국적자로 만든다. 원국적을 포기한 후 귀화허가가 내려질 때까지 무국적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귀화허가가 내려지기 전에 혼인이 해소되면 귀화허가를 받지 못해 무국적으로 남는 것이다. 또 원국적 포기 후 남편이 배우자의 열악한 지위를 악용하면서 귀화에 협조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McKinsey, 2007: 26-27). 대한민국은 국적 취득 후 원국적을 포기하게 하므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본 연구보고서가 상세히 보여주듯이 위장결혼을 통해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귀화를 취소함으로써 무국적 상태를 만든다.

대한민국에서는 위장결혼에 의한 간이귀화를 비롯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다(국적법 제21조). 한국이 1961년 무국적감소협약에 가입하더라도 이러한 규제는 유지할 수 있다. 동 협약이 허위진술이나 사기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국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제8조 제2항).

무국적감소협약은 허위진술이나 사기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에도 국적 박탈을 꽤 넓게 허용하고 있다. 제3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동 협약의 해당 조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제7조 ④ 귀화자가 7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체약국의 법률로 규정된 기간 동안 해외

에 거주하면서 국적 보유의사를 관계기관에 명백히 하지 않았을 경우 그의 국적은 상실될 수 있다.

- ⑤ 해외에서 출생한 체약국 국민에 대해, 그 국가는 법으로써, 그가 성년에 도달한 후 1년이 지난 후부터는 그 당시 국가 영토에 거주하거나 관계기관에 등록한 것을 조건으로 국적의 보유를 허용할 수 있다.

제8조 ① 체약국의 국적 박탈로 무국적자가 되는 경우에는 체약국은 그 국적을 박탈할 수 없다.

- ② 이 조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체약국의 국적을 박탈당할 수 있다.

(a) 제7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국적 상실이 허용되는 경우

(b) 허위진술 또는 사기에 의해 국적을 취득한 경우

- ③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약국은 이 협약에 서명, 비준 또는 가입할 때 다음의 사유 중 국내법에 정한 바에 따라 국적을 박탈할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

(a) 해당자가 체약국에 대한 충성의무에 배치되게

i) 체약국의 명시적 금지를 도외시하고 타국에 역무를 제공했거나 계속 제공하는 경우 또는 타국으로부터 보수를 받았거나 계속 받는 경우

ii) 그 국가의 중대한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b) 타국에 대해 충성을 선서하였거나 이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경우 또는 체약국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 ④ 체약국은 이 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허용된 박탈의 권한을 법률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없으며, 그 법률은 해당자에게 법원 또는 독립된 기관에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무국적감소협약의 당사국은 2010년 3월 현재 37개국인데 그 중 오스트리아,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튀니지가 제8조 제3항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적을 박탈할 수 있는 입법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사국이 국적 박탈을 허용할 수 있는 폭은 어느 정도인가? 다른 나라가 포괄적으로 국적 박탈의 권한을 유보하고 있음에 비해 튀니지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튀니지 국민의 지위와 양립하지 않고 튀니지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타국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서 튀니지 법상 범죄를 범하여 징역 5년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은 튀니

지의 유보선언이 제8조 제3항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으며 동 협약의 목적에 반한다는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여전히 어느 정도까지 국적 박탈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애매하다. 튀니지는 병역기피를 이유로 하는 국적 박탈에 대해서도 입법권을 보유함을 선언했는데 개별 사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독일도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¹⁷⁾ 터키는 병역기피를 이유로 여권을 취소함으로써 무국적자를 발생시킨 바 있다(부록 참조).

동 협약은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또는 정치적 이유로 국적을 박탈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타국 국민투표에서 투표했다는 이유로 국적을 박탈하더라도 에티오피아처럼 자의적인 기준과 민족적 배제의 동기 하에 그리하는 것이라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많은 나라에서 국적 박탈은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

4. 행정적 미비, 관료주의, 배제적 행정, 부패에 기인한 사실상의 무국적

전술했듯이, 무국적의 사례 중 다수는 법적으로는 국적을 부인당하지 않으나 국가가 개인을 국민으로 파악하는 정도가 낮거나 행정이 미비하여 국민으로 인치되지 않는 경우이다. 지리적 여건이나 기타 이유로 국경관리가 허술한 나라에서는 인구조사와 등록을 통한 인구의 파악과 관리가 어렵다. 그런 나라는 많은 국민이 타국으로 불법이주하며 그 인구는 정확히 파악되지 못한다. 이로부터 사실상의 무국적이 발생한다. 전술한대로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출생한 아이티인 중에는 부모가 아이티에서 출생하지 않아 국적을 얻지 못한 법률상의 무국적자가 다수 존재하지만 부모가 서류 미비로 본인들이 아이티에서 출생했음을 입증할 수 없어서 사실상의 무국적자가 된 자도 허다하다. 아이티의 민사신분등록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이다(Margerin, 2008). 스리랑카의 고지대 타밀인은 2003년의 법제정으로 인해 법률상의 무국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신분증을 신청해도 발급의 지연으로 여전히 무국적 상태로 있는 자가 많다(Perera, 2007: 21-22).

17) Declarations and Reservations to the 1961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http://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V-4&chapter=5&lang=en (최종접속: 2010. 3. 19).

국가에 의해 국민으로 인지되지 않거나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국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행정력의 결핍 때문만은 아니다. 관료주의와 부패에 의해 그리 되는 경우가 많다. 키르기스스탄은 1994년 주민등록(propiska)을 갖는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국적을 부여하고 2007년에는 부계혈통주의를 양계혈통주의로 개정하는 등 법률적 차원에서는 전향적인 조치들을 취해왔지만 만연한 부패로 국적 취득의 비용이 다대하다(Lynch, 2007). 국적법에 따르면 당연히 국적을 주장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사람도 등록 서식에 필요 사실을 기재할 수 없어서 실효성 있는 국적을 향유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집트에서 바하이(Baha'i) 교파에 속한 자들은 오래도록 개인정보를 등록할 때 종교를 기재할 수 없음으로 인해 신분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부록 참조). 전술한대로 이런 행정이 특정 집단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려는 의도에 따른 경우 사실상의 무국적은 법률상의 무국적과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다.

5. 국경과의 불일치와 지리적·사회적 주변성에 따른 무국적

국민으로부터 배제되는 집단 중에는 어느 한 국가에 완전히 포섭될 정도의 정착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지리적 경계가 모호하거나 국가행정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약한 이유로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들은 단지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다는 물리적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해당 국민국가의 국민들과 같은 종족적 배경을 갖지 않거나 그 국가에 충분히 정착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타자화되고 차별된다. 가장 잘 알려진 예는 로마(집시)이다.

로마는 사회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정착성이 낮은 집단으로 여겨져 유대인 대학살에 비견되는 박해를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중동부 유럽 국가에서 국적을 부여받았으나 1990년대 초 그 국가질서가 해체되는 와중에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무국적화의 위협에 직면했다. 우선 발칸전쟁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내몰린 로마는 분리 독립한 승계국과의 유대가 희박한 까닭에 승계국의 국적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앞에서 보았듯이 체코공화국은 구 체코인으로 등록되었던 사람에게만 자동적으로 국적을 부여하고 슬로바키아인으로 등록되었던 사람은 일정기간의 거주와 전과기록이 없음을 조건으로 해서만 귀화할 수 있게 했으

므로 슬로바키아인으로 등록되었던 로마 중 많은 수는 체코공화국 국적을 얻지 못했다. 슬로베니아는 이보다 더 가혹하여 거주자 중 부(父)가 슬로베니아인으로 부터 등록되어 있지 않았던 18,300명의 주민등록을 말소시켰는데 이 중에는 로마가 다수 포함되었다. 다른 발칸 국가에서도 내전으로 내몰린 로마들이 새로 정착한 국가와의 유대를 입증하거나 창설하지 못해 무국적화되었다. 발칸 국가 중에는 특히 마케도니아와 몬테네그로의 상황이 열악하다. 마케도니아에서는 독립 당시부터 로마가 국적을 취득하는 데 난점이 많았다. 2000년대 들어서는 세르비아와 코소보로부터 이주한 로마의 문제가 복잡하다. 근래 독립한 몬테네그로 역시 코소보로부터 이주한 로마가 문제이다. 이들은 독립 코소보의 국적 또한 인정받기 힘든 상황에 있다(Dedić, 2007; Arraiza and Öhman, 2009; Selm 2009).

비둔 진시아(bidun jinsiya)는 아랍어로 시민권 없는(without citizenship)사람들을 뜻한다. 여러 나라에 걸쳐 생활하던 이들은 거주국 사이에 경계가 확정됨에 따라 국적 문제에 부딪혔다. 쿠웨이트에는 8-14만에 이르는 비둔 인구가 법률상 무국적 상태에 있다. 1959년 쿠웨이트 국적법은 1920년 당시 쿠웨이트에 정착해 있었고 국적법이 공포될 때까지 정상적인 거주를 지속해 온 사람만을 국민으로 규정했는데 1920년 당시 많은 베두인(Bedouins)이 정착된 인구로 분류되지 못함으로써 그들의 후손이 비둔으로 전락했다. 그래도 1985년까지는 국적이 없더라도 국민에 준해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1985년 이후 많은 권리를 박탈당했다. 그들은 출생, 결혼, 사망 등 민사신분의 변동을 등록할 수 없다. 아랍권에서 비둔에 국적을 부여하는 움직임은 바레인과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 의해 선도되고 있다. 2001년 바레인에서는 2,000여 명의 이란계 비둔을 귀화시켰고,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서는 2006년 7개 분방 군주가 모두 모인 최고연방이사회(Supreme Federal Council)에서 귀화를 통한 비둔의 국적 취득에 대해 적극적 결정을 내려 10,000명의 비둔이 국적 취득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Barbieri, 2007; Etefa and Van Genderen Stort, 2007).

유랑하는 민족은 아니나 강제이주로 인해 여러 나라에 분산됨으로써 국민국가와의 일체성을 가지지 못해 국적이 불안정하게 된 집단으로는 메스케티안 투르크인이 있다. 이들은 그루지아 남부의 터키와의 접경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스탈린 시대에 여러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아제르바이잔에 10만여 명, 카자흐스탄에 8-10만, 러시아에 5-7만 외에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그

루지아, 터키에 분산하여 거주하고 있다. 소비에트연방의 해체 후 거주에 기초해 당해 공화국의 국적을 인정받았지만 아제르바이잔과 그루지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그러하지 못하여 유럽평의회와 UNHCR 등의 국제기구가 개입해 국적 취득을 가능케 하는 법 개정을 권유해왔다(부록 참조).

10만여 명에 달하는 케냐의 누비언(Nubians)은 유목민은 아니나 영국의 동아프리카 지배 정책에 의해 케냐에 분산되었고 케냐 국가의 관점에서 볼 때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까닭에 국적이 부여되지 않은 집단이다. 이들은 원래 하나의 부족이 아니었으나 수단에서 영국을 위해 군사적으로 복무하면서 공통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영국에 의해 수단으로부터 분리되어 케냐에 분산 정착한 이들은 영국 식민당국이 케냐의 인구를 부족 소속에 기초해서 분류할 때에도 배제되었다. 이러한 처우는 독립 이후에 이어져 결국 케냐 국민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었다. 케냐 국민은 종족적 소속을 매개로 국가에 연결되었는데 누비언은 확실한 종족적 소속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근래에야 누비언으로 기록되게 되었다. 2003년과 2006년 각각 케냐 국내 법원과 아프리카인권위원회(African Commission of Human and Peoples' Rights)에 제소한 후 사정이 좋아져 등록의 문턱도 낮아지고 신분증도 발급되었다(Adam, 2009).¹⁸⁾

변경지대에 거주하는 집단은 생활상의 정체성과 국경이 일치하지 않아 국적이 불안정하게 될 수 있는데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접경지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좋은 예다. 예로부터 그리고 소비에트연방 치하에서 이들은 같은 생활공동체를 이루었으나 소련방 구공화국들이 독립한 결과 영토의 경계가 중요해짐에 따라 생활공동체와 국경이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했다. 양국의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사람의 10-30%는 미등록 상태이다. 이 중에는 생활상의 요구 때문에 형식적인 국적국의 행정절차에 따르지 않고 미등록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이 많다(Lynch, 2007).

태국에서도 고산 지대에 거주하는 아크나(Akna), 라누(Lanu), 리수(Lisu), 야오(Yao), 산(Shan), 몽(Hmong), 카렌(Karen) 등의 부족원 중 수십만 명의 무국적자가

18) "Kenya Voices: A Nubian Elder's Reflections on Ending Statelessness,"

<http://www.refintl.org/blog/refugee-story/refugee-voices-nubian-elder%E2%80%99s-reflections-ending-statelessness> (최종접속: 2010. 3. 12).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부록 참조).

정체성과 지리적 여건의 견지에서 한 국가와의 일체성이 의심되거나 확인을 얻지 못하는 소수자들은 단지 배제와 박해의 대상에 머물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한 국가의 정치적 판도를 바꾸는 변수가 되는 집단도 있다.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에 자리잡은 반야르완다(Banyarwanda)가 그러했다. 이들은 식민지 지배에 의해 정체성이 다른 집단에 혼효되고 국경이라는 지리적 구획과 어긋나는 종족성을 가짐으로써 국적이 불안정하게 되었다. 콩고 동부의 북키부(North Kivu)와 남키부(South Kivu)에 거주하는 이들은 킨야르완다(Kinyarewanda) 어를 사용하는 집단으로서 투치(Tutsi)와 후투(Hutu)를 모두 포함하는데 이 중 특히 투치는 스스로를 반야물랭게(Banyamulenge)라 부른다.¹⁹⁾ 벨기에 지배하의 콩고가 르완다와 브룬디의 많은 지역을 포함했으므로 반야르완다와 르완다의 브룬딘 사이의 구별은 상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과 콩고의 다른 집단과의 구별도 큰 중요성을 가지지 못했다. 콩고 독립 후 제정된 1964년 헌법은 독립 콩고의 영토 내에 1908년 당시 정주하고 있던 부족에 속한 사람의 직계비속에게 콩고 국적을 부여한다고 규정했는데 여기에는 반야르완다도 포함되었다. 1908년 이후에 이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미 1908년 정주해 있던 집단의 성원을 조상으로 하는 만큼 국적을 갖는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국적을 부정당하는 사건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1971년 모부투 정부는 1960년 독립 당시 정주하고 있던 르완다-브룬디 출신인을 모두 자이레인으로 인정한다는 명령을 내렸고 1972년 국적법이 이를 확인했다. 이 기조가 변경된 것은 1981년이었는데 모부투 정부는 1971년의 명령을 무효화하고 1885년 당시 콩고의 영토에 정주하던 사람들의 자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만이 콩고 국적을 갖는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그러한 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대부분의 반야르완다와 특히 1950년대 후반부터 르완다의 불안한 정세를 피해 콩고로 이주한 많은 투치들이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했다. 또 반야르완다 중 후투와 투치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후투는 다른 종족집단과 연대하여 투치를 견제했고, 반야르완다의 문제는 반야물랭게의 문제와 동일시되었다. 이런 상

19) 반야물랭게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다. 반야물랭게는 좁게는 남키부에 거주하는 투치만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반야르완다 중 투치 전체를 뜻하기도 한다.

황에서 1994년 르완다 내전의 여파로 대량의 난민이 국경을 넘었고 르완다의 투치 정부는 후투 반군을 박멸한다는 명목으로 콩고에 개입했다. 이 와중에서 반야물랭게는 로랑 카빌라(Laurent Kabila)가 지도하는 반군에 가세하여 모부투 정권을 전복했다. 반야르완다의 국적 문제는 2004년의 국적법과 2005년의 헌법 개정에 의해 독립 당시 정주하던 사람의 자손임을 입증하면 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반야물랭게는 로랑 카빌라 및 그를 승계한 조세프 카빌라와 반목하면서 반군을 지원했으며 이와 별개로 르완다가 콩고에 개입함으로써 콩고의 여타 종족과 투치계 사이의 갈등은 오히려 확대되었다(Deng, 2001; Pouilly, 2007).

6. 불법이주자와 난민의 무국적

외국에 불법체류하거나 국적국으로부터 도피한 까닭에 국적과 기타 법적 지위를 주장하지 못하거나 국적국의 행정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도 사실상의 무국적 중 간과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한다. 불법체류자나 난민 본인은 국적을 입증할 수 있다 해도 그로부터 출생하는 자녀는 무국적자가 되기 쉽다. 불법체류자로서 사실상의 무국적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인신매매의 위험에 빠지기 쉽다. 난민 중에는 국적국에 의해 국적이 말소되어 법률상의 무국적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해외로 망명한 사람의 국적을 박탈하는 나라로 미얀마가 있음을 앞에서 보았다. 그렇지 않더라도 국적국의 공관으로부터 필요 서류를 취득할 수 없음으로 인해 체류국에서 자기의 국적을 주장하지 못한다. 무국적 사례로 거론되는 것 중에는 외교적 이유로 인접국으로부터 오는 난민을 거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중앙아시아의 사례들이 있다. 부록에서 보았듯이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체첸공화국, 중국,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도피한 사람들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들 및 그들의 자손이 사실상의 무국적 상태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IV. 무국적에 대한 세계의 대응

무국적에 대한 대응으로는 i) 무국적을 규제하는 국제협약에의 가입을 통한 무국적자의 보호와 무국적의 억제, ii) 국가승계에 따른 무국적을 발생하기 위한 국

제적 협력, iii) 무국적 판정과 무국적자 보호를 위한 행정적 절차의 합리화, iv) 철거한 인구 파악과 신원등록제도의 완비 등을 들 수 있다. 그밖에 무국적을 가져오거나 무국적자의 현실을 규정하는 다양한 원인에 대응하는 수다한 방식이 있다. 본절에서는 위의 4가지 대응에 수반되는 실천양태를 관전한다.

1.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무국적의 감소에 관한 협약」에의 가입 고무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1년 「무국적의 감소에 관한 협약」은 무국적자를 보호하고 무국적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 기본조약이다. 2010년 3월 현재 무국적자지위협약의 당사국은 65개국, 무국적감소협약의 당사국은 37개국이다. 당사국 수가 꾸준히 늘고 있긴 하지만 1951년의 난민지위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의 당사국이 각각 144개국임과 비교하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무국적자지위협약이 당사국에 그렇게 막중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심각하게 생각되었던 무국적에 대한 관심이 20세기 후반에는 상대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면 무국적감소협약에의 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그것이 일정한 경우 국적 부여를 의무화하기 때문에 국민을 정의하는 주권적 결정이 제한되는 것을 피하려는 국가들의 성향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두 협약은 모두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무국적자지위협약은 체약국의 이행여부를 감시할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지 않다. 무국적감소협약은 한편으로는 국적 부여를 강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의 인권선진국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이상적인 규정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무국적으로 귀결될 수 있는 국적 박탈을 지나치게 넓게 용인하고 있다. 또 2003년 UNHCR의 조사에 응한 74개국 중 대다수가 협약에 가입함이 없이도 아동의 무국적 방지를 위한 국적 부여 등 협약이 강제하는 입법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한 조치는 아동권리협약 등 다른 인권조약에서도 추상적이거나 요구하는 것이므로 굳이 무국적감소협약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렇지만 UNHCR은 무국적자의 보호와 무국적 억제를 위한 일차적 조치로서 국가들로 하여금 두 협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한다(UNHCR,

2003: 41). 무국적감소협약은 법의 소극적 저축에 의해 발생하는 법률상의 무국적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간 법이 상충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제공한다.²⁰⁾

한편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경험에 기초해 만든 두 협약의 기준을 상회하여, 점점 높아지는 인권 기준에 맞추어 무국적 규제에 더 철저함을 기하는 노력도 찾아볼 수 있다. 1997년의 유럽국적협약(European Convention on Nationality)이 좋은 예다. 이 협약은 사기 또는 허위진술에 의해 취득한 국적은 박탈할 수 있지만, 다른 국적의 자발적 취득, 외국 군대의 자발적 복무, 중대한 국익 침해 행위, 해외 상주 및 국가와의 진정한 유대 결여, 아동의 국적 취득 요건 불이행, 입양으로 인해 외국인인 양부모의 국적 취득을 이유로 국적을 상실시킬 때에는 그로 인해 무국적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제7조).

2. 국가승계에 따른 무국적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무국적감소협약 제10조는 영토 이양에 관한 조약 체결 시 무국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고 그러한 조항이 없는 경우 해당 영토에 대해 주권을 갖게 되는 국가가 무국적자로 되는 자에게 국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국적협약도 제18-20조에서 국가승계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협약 자체에는 추상적인 원칙만을 제시하고 협정에 의한 해결을 촉구할 뿐 국적 부여의 의무적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1990년대 초 동유럽의 변동에 자극되어 유엔은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의 주도로 「국가승계 시 자연인의 국적」(Nationality of Natural Persons in Relation to the Succession of States)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총회에서 채택했다.²¹⁾ 이는 승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영토에 거주하는 사람은 승계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각국은 당해국과 상당한 연관이 있는 자가 국가승계의 결과 무국적이 될 수 있는 경우 그에게 국적선택의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일부 적극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20) 두 협약의 성격, 내용, 한계, 그리고 한국이 무국적자지위협약을 이행하고 무국적감소협약에 가입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서는 정인섭 외 3인(Chung et al., 2010)의 연구를 참조하라.

21) UNGA Resolution A/RES/55/153, 30 January 2001.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차원에서도 국가승계에 따른 무국적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1996년 베니스위원회는 「자연인의 국적에 미치는 국가승계의 결과에 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Consequences of State Succession for the Nationality of Natural Persons)을 채택했고, 1999년 각료위원회(Committee of Ministers)는 「무국적 회피와 감소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on the Avoidance and Reduction of Statelessness)를 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발전시켜 2006년 「국가승계시 무국적 회피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Avoidance of Statelessness in Relation to State Succession)을 채택했다. 여기에서는 승계국에 상주했거나 상당한 연관을 가진 자가 무국적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에게 국적을 부여하도록 요구하고, 선행국은 승계의 결과 무국적 우려가 있는 국민의 국적을 상실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²²⁾ 이 협약은 2009년 5월 발효했다.

UNHCR은 국가승계에 의한 무국적 문제에 직면한 국가와 협조하여 무국적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전술한 체코공화국의 국적법 개정은 체코공화국이 UNHCR에 지원을 요청해 이루어진 공조의 결과이다(유엔난민기구/국제의회연맹, 2005: 36-37). UNHCR이 또 하나의 모범 사례로 부각시키는 것은 크림미아 타타르인을 상대로 한 우크라이나의 사례이다.

1944년 크림미아 지역에 거주하던 20만 이상의 타타르인은 나찌 점령군에 협력했다는 혐의를 받아 소비에트연방의 여러 지역, 특히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그 후 1987년 소비에트 당국은 타타르인의 혐의가 근거 없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귀환을 허용했다. 이어 소련방이 해체되자 크림미아가 속한 우크라이나는 1991년 새로 제정한 국적법을 통해 1991년 독립 선언 당시 소비에트연방의 국민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에 거주하고 있던 자를 우크라이나 국민으로 인정했고 독립부터 3개월 후 국적법 발효 시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주민등록을 한 자에게도 국적을 부여했다. 이로써 약 15만 명의 크림미아 타타르인들이 우크라이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1991년 11월 국적법 시행 후 크림미아로 귀환한 10만 8천여 명의 타타르인이었다. 그 중 8만 명은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다른 독립 공화국의 국적을 취득한 상태였고 28,000여 명은 무국적 상태였다. 이들

22) 유럽평의회의 노력과 동 협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새어러(Schärer, 2006) 참조.

은 우크라이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5년의 거주, 충분한 소득, 우크라이나 언어 구사 등의 요건을 갖추어 귀화해야 했다. 이러한 사정을 개선하기 위해 UNHCR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국적법 개정을 독려하는 한편 기술적 지원을 제공했다. 이에 자극되어 우크라이나 의회는 국적법을 10년간 7번이나 개정하여 언어와 소득 요건을 제거하는 한편 강제 이주된 자의 후손은 그 조상이 크리미아 출신이라는 근거로 우크라이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하여 28,000명의 무국적 귀환자를 구제하는 한편, 이미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취득한 자의 우크라이나 국적 취득을 위해 UNHCR 및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도움을 받아 1998년 우즈베키스탄과 협약을 체결하여 국적 변경을 간소화했다. 즉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포기과 우크라이나 국적의 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무국적을 방지했다. 이로써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귀환한 80,000명이 우크라이나 국적을 취득했다. 유사한 협약은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1999), 카자흐스탄(2000), 타지키스탄(2001), 키르기스스탄(2003)과도 체결되었다(유엔난민기구/국제의회연맹, 2005: 29-30).

3. 무국적 판정과 무국적자 보호를 위한 행정적 절차의 합리화

무국적자지위협약은 무국적자를 정의하고 있을 뿐 무국적자의 청구를 심사하고 판단하는 절차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2003년 UNHCR의 조사에 응한 74개국 중 54.1%만이 무국적 사례를 판단할 절차를 가지고 있고 47.3%만이 난민신청자 중 무국적자를 식별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다(UNHCR, 2004). 2005년 UNHCR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럽연합 회원국이 무국적자를 확인하고 인정하기 위한 절차를 아직 마련하지 않았으며 대신 난민인정절차를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한다. 일부 국가는 정부 내에 무국적자의 청구를 심사하고 판단하는 기관을 지정 또는 설치했으나 대부분은 특별한 절차가 없어서 난민인정 절차를 활용한다(유엔난민기구/국제의회연맹, 2005: 19-20). 프랑스는 무국적자를 난민과 병행하는 개념으로 취급하면서 양자에 대해 사법적, 행정적 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을 두고 있다. 난민 및 무국적자 보호사무소(Office for the Protection of Refugees and Stateless Persons, OFPRA)가 그것이다. 무국적의 인정은 이 기관에서 담당하며 신청자는 이 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내무부가 담당하

는데, 스페인에서는 경찰서 또는 비호 및 난민사무소(Office for Asylum and Refugees, OAR)에 신청하면 동 사무소가 조사를 하여 내무부에 보고서를 전달한다. 이처럼 무국적을 인정하는 절차와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무국적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국가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유엔난민기구/국제회의연맹, 2005: 19-20). UNHCR은 여러 나라와 공조하면서 공통의 절차와 기준을 도입하려고 노력한다.

4. 철저한 인구 파악과 신원등록제도의 완비

사실상의 무국적이 얼마나 광범히 존재하는지는 앞에서 보았다. 사실상의 무국적을 방지, 감소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은 인구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신원등록의 확실을 기하기 위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신원등록의 불철저함 때문에 가장 크게 희생되는 집단은 아동이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24조 제2항은 “모든 아동은 출생과 더불어 등록되어야 하며 성명을 가져야 한다.”고 선언하며, 제3항은 “모든 아동은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출생 직후 등록되어야 하고 출생 시부터 성명과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져야” 하며 (제7조 제1항), “당사국은 국적을 포함하여 신원(identity)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제8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많은 수의 아동이 출생과 더불어 등록되지 않는다. UNICEF의 보고에 의하면 2006년 한 해에만 전 세계에서 5,100만 아동이 출생 시 등록되지 않았다. 등록되지 않은 아동은 그 해 출생한 아동의 1/3에 달하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2/3에 이를 정도이다(UNICEF, 2007: 42). UNHCR은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여 「보편적 출생등록 운동」(Universal Birth Registration Campaign)을 펼치고 있다. 운동은 UNICEF 등 국제기구,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의 정부 및 NGO와의 협력을 통해 전개되며, 중앙정부에 대해 법 개정을 촉구하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 못지않게 신고와 등록이 미비한 지방과 지리적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이동등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돕는다(Heap and Cody, 2009: 20-22).

근래 들어 아동의 등록에서 보인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태국의 법 개정이다. 2008년 8월에 발효한 민사등록법과 국적법은 부모의 자격과 무관하게 태국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을 등록하도록 했다. 이로써 버마 등으로부터 온 난민 자녀 등 지금까지 서류상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고, 고산지대에 거주하는 등 여러 여건으로 무국적 상태에 있던 350만 인구의 파악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UNHCR, 2009: 21).

출생신고와 등록이 미비한 원인은 입법과 행정의 결함에만 있지 않다. 부모의 태도도 중요하다. 불법이주의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자녀의 출생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신원등록의 중요성이나 절차를 잘 알지 못하여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특히 이주자의 경우 출신국과 거주국 중 선호하는 나라의 국적을 원하는 나머지 국적을 제공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자녀를 등록하는 것을 스스로 회피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도미니카공화국에 거주하는 아이티인이 아이티 공관에서 등록하는 데 많은 난점이 있음은 앞에서 보았지만 등록이 가능한 사람도 등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자녀에게 도미니카공화국 국적을 얻어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내전이나 박해를 피해 타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본국에 귀환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체류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등록을 회피하기도 한다. 1980년대 후반 모리타니아로부터 축출된 비아랍계 흑인 중 세네갈에 체류하는 사람 중에는 모리타니아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세네갈에서 출생한 자녀를 등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Lynch and Teff, 2009). 이런 사람들의 국적 문제는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지만 아동보호라는 보편적 이상에 대한 교육에도 좌우된다.

등록 캠페인은 법률상의 무국적을 시정하는 의미 있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가 없어 사실상의 무국적 상태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규모면에서 가장 주목된 근래의 경험은 네팔에서 찾을 수 있다. 1951년 네팔 국적법은 출생지주의에 의해 관대하게 국적을 부여했고 귀화의 요건도 엄격하지 않았으나 1960년대부터 귀화를 억제했고 1990년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출생지주의를 부계혈통주의로 대체했다. 이로써 등록되지 않은 사실상의 무국적자를 포함 350-500만에 달하는 무국적자가 발생했다. 2006년의 민주화의 결과 국적법이 개정되어 출생지주의가 부활되었고 무국적 인구에 대해 국적 취득의 기회가 부여되었다. 문제는 2년의 시한 내에 신청을 받아 등록을 시키는 일이었는데

2006년 4개월 동안 75개 지역에 4,000명의 요원을 파견하여 등록 캠페인을 추진한 결과 260만 명이 국적서류를 얻게 되었다. UNHCR은 아직도 800,000명의 사실상 무국적자가 남아 있고 국적 취득 과정에서 여성인권이 침해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으나 캠페인이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고 2011년 인구센서스를 통해 등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White, 2009).

스리랑카의 사례는 규모면에서 네팔보다 작으나 UNHCR이 더 깊이 관여한 결과 모범사례로 언급된다. UNHCR이 UNDP와 함께 추진한 이 캠페인은 「정의에의 접근」(Access to Justice)이라 불린다. 고지대 타밀인을 비롯한 인도출신인(persons of Indian origin, PIO)에 대해 시민권을 부여한 스리랑카의 2003년 입법이 실효성을 거두게 하기 위해 각지에 이동사무소를 개설하고 훈련된 자원봉사자를 배치함으로써 19만여 명이 국적을 가질 수 있게 지원했다(유엔난민기구/국제의회연맹, 2005: 46-47). 그밖에 투르크메니스탄 등에서도 UNHCR의 등록 캠페인이 주효했다.

V. 결론에 갈음하여

무국적은 한국인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국적국으로 선택하지 않고 조선적(朝鮮籍)으로 남아 있는 재일동포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되지만 그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실효적 국적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구소련 동포 중에도 무국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했다. 현재 독립국가연합(CIS)의 고려인은 약 54만 명인데 그 중 222,000명이 러시아에, 176,000명이 우즈베키스탄에, 104,000명이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있다.²³⁾ 불과 몇 년 전까지 고려인 최대 거주국은 우즈베키스탄이었다.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되기 직전에는 전체 고려인 중 약 42%가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했다(고려인돕기운동본부, 2007: 25, 54). 이는 소비에트연방 해체 후 많은 고려인이 출신 공화국인 우즈베키스탄을 떠나서 러시아로 이주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로 이주하는 한인의 정착지는 극동 러시아와 볼고그라드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2001년 후자에는 2만 명가량

23) 재외동포재단, http://www.korean.net/morgue/status_1.jsp?tCode=status&dCode=0101 (최종 접속: 2010. 3. 19).

이 무등록 상태로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유의정 · 안승환, 2007). 9천이 채 못 되는 고려인 인구를 가졌던 우크라이나에도 고려인이 유입되었다. 우크라이나 거주 고려인은 공식적으로는 13,000명으로 집계되지만 실제로는 2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크림미아 타타르인의 귀환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취했던 우크라이나는 독립 후의 우크라이나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고려인 무국적자의 국적 문제에도 협조적인 자세를 보였다. 즉 2007년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응답하여 우크라이나 정부는 고려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에 응한 고려인을 체류자격 결여를 이유로 추방하지 않으며, 한국 대사관이 신분을 증명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했다.²⁴⁾

극동 러시아로의 이주는 강제이주의 출발점으로 귀환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러시아는 1993년 4월 「러시아 한인 명예회복에 대한 연방법령」을 제정하여 강제이주 및 그 이후의 탄압이 불법적, 범죄적이었음을 인정하고 강제이주 이전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러시아로 재이주하는 고려인이 자동적으로 국적을 취득하고 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으나 법령은 집행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2년 7월 새 법령이 공포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소비에트연방이 내부이주를 허용한 1956년 말 이전에 이주된 지역에서 출생한 자는 재판을 통해 강제이주 사실을 확인 받아 국적을 회복할 수 있게 했다(최진욱 외 4인, 2004: 114면). 이어 2006년에는 국적법을 개정하여 2002년 7월 1일 이전에 중앙아시아로부터 입국했거나 2008년까지 임시거주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월 1일까지 국적 신청할 길을 열어주었다(고려인돕기운동본부, 2007: 52-53).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계 무국적자에 대해서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그들의 거주국으로 하여금 국적을 부여 또는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인 데 비해 한국에 거주하는 무국적자에 대해서는 무국적을 발생케 하는 사유를 줄이고 발생한 무국적자의 취급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거주 무국적자의 수는 확실치 않다. 국적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하거나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1조). 위장결혼이 대표적인 예다. 2009년 상반기 법무부가 제공

24) 중앙일보, 2009. 6. 25. 1면.

한 정보에 의하면 63명이 국적 취득이 취소되어 무국적자가 되었다(Chung et al., 2010: 21). 앞에서 본대로, 무국적감소협약은 허위진술이나 사기로 인한 국적 취득은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동 협약에 가입하더라도 위장결혼 등을 이유로 귀화허가를 취소하는 현재의 규제는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개정 국적법이 결혼으로 인한 간이귀화자에 대해 복수국적을 용인함으로써 귀화허가 취소로 인한 무국적의 사례가 감소할 수는 있다.

무국적의 또 다른 주된 사례는 북한이탈주민임을 주장하나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2004년에서 2008년까지 5년간 총 496명이 북한이탈주민임을 이유로 국적판정을 신청했는데 그 중 44건이 ‘판정불가’로 귀결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확정적으로 아니라는 판단도 아니다. 판정을 얻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등록이나 체류관리를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다. 국적판정절차를 개선하여 실제적 판단을 하도록 하고, 국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처우 및 체류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난민 중에도 국적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 한국은 무국적을 판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무국적 판정 절차를 난민인정 절차와의 유기적 연관 속에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무국적임을 주장하면서 판정을 기다리는 사람과 무국적자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 적절한 체류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Chung et al., 2010; Choi 2010).

참고문헌

- 고려인돕기운동본부. 2007. 『고려인, 그들은 누구인가?』.
- 유엔난민기구/국제의회연맹. 2005. 『국적과 무국적』.
- 이철우. 2004a. “피로써 구별되는 국민들: 혼혈인과 한국사회.” 정인섭 엮음.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박영사.
- _____. 2004b. “이중국적의 논리와 유형.” 정인섭 엮음. 『이중국적』. 사람생각.
- 정인섭 · 박정혜 · 이철우 · 이호택. 2009. 『무국적자 관리 및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연구』. 법무부연구용역보고서.
- 최진욱. 2004.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통일연구원.
- Adam, Hussein Adam. 2009. “Kenyan Nubians: Standing up to Statelessness.” *Forced Migration Review* 32: 19-20.
- Arraiza, Jose Maria and Linda Öhman. 2009. “Displaced Kosovo Roma and Property Rights.” *Forced Migration Review* 32: 43-45.
- Barbieri, Patrick. 2007. *About Being Without: Stories of Stateless in Kuwait*. Washington DC: Refugees International.
- Baršová, Andrea. 2007. “Czech Citizenship Legislation between Past and Future.” in Rainer Bauböck, Bernhard Perching and Wiebke Sievers, eds., *Citizenship Policies in the New Europe*,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 Choi, Hong-Yop. 2010. “Comparison between International Instruments on Statelessness and the Korean Laws: Commissioned by the UNHCR Represent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Korea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13(1): 31-56.
- Chung, In Seop, Chulwoo Lee, Ho Taeg Lee, and Jung Hae Park. 2010. “The Treatment of Stateless Persons and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Policy Suggestions for the Republic of Korea.” *Korea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13(1): 7-30.
- Dedić, Jasminka. 2007. “Roma and Statelessness.” Committee on Civil Liberties, Justice and Home Affairs. European Parliament. Brussels. 26 June 2007.
- Deng, Francis M. 2001. “Ethnic Marginalization as Statelessness: Lessons from the Great Lakes Region of Africa.” in T. Alexander Aleinikoff and Douglas Klusmeyer, eds., *Citizenship Today: Global Perspectives and Practices*.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Etefa, Abeer and Astrid van Genderen Stort. 2007. “The Bidoon.” *Refugees*. 147(3): 15.
- Garcia, Sean and Camilla Olson. 2008. “Rohingya: Burma's Forgotten Minority.” *Refugees International Field Report*. Washington DC: Refugees International.
- Ginsburgs, George. 1983. *The Citizenship Law of the USSR*. The Hague: M. Nijhoff Publishers.

- Hammarberg, Thomas. 2008. "No One Should Have to Be Stateless in Today's Europe." (<http://www.unhcr.org/refworld/docid/48abd54e5.htm> 최종접속: 2010. 3. 19).
- Heap, Simon and Claire Cody. 2009. "The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Campaign." *Forced Migration Review* 32: 20-22.
- Järve, Priit. 2007. "Estonian Citizenship: Between Ethnic Preference and Democratic Obligations." in Rainer Bauböck, Bernhard Perching and Wiebke Sievers, eds., *Citizenship Policies in the New Europe*,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 Krūma, Kristīne. 2007a. "Checks and Balances in Latvian Nationality Policies: National Agendas and International Frameworks." in Rainer Bauböck, Bernhard Perching and Wiebke Sievers, eds. *Citizenship Policies in the New Europe*.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 _____. 2007b. "Lithuanian Nationality: Trump Card to Independence and Its Current Challenges." in Rainer Bauböck, Bernhard Perching and Wiebke Sievers, eds. *Citizenship Policies in the New Europe*.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 Lee, Tang Lay. 2005. *Statelessness, Human Rights and Gender: Irregular Migrant Workers from Burma in Thailand*. Leide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Lewa, Chris. 2009. "North Arakan: An Open Prison for the Rohingya in Burma." *Forced Migration Review* 32: 11-13.
- Lynch, Maureen and Katherine Southwick. 2008. "Ethiopia-Eritrea: Stalemate Takes Toll on Eritreans and Ethiopians of Eritrean Origin." *Refugees International Bulletin*, 30 May (<http://www.refintl.org>).
- Lynch, Maureen and Melanie Teff. 2009. "Childhood Statelessness." *Forced Migration Review* 32: 31-32.
- Lynch, Maureen. 2007. "Kyrgyz Republic: Powerful Neighbors Imperil Protection and Create Statelessness." *Refugees International Bulletin*, 20 December (<http://www.refintl.org>)
- Manly, Mark. 2008.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s and Instruments Relating to Statelessness and the Right to a Nationality." Proceedings of the Worksho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Nationality Law and the International Instruments regarding Statelessness, co-hosted by the UNHCR and ILA Korea Branches, organized by the Global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5 June 2008.
- Margerin, Marselha Gonçalves. 2008. "Dominican Republic: Time to Move Forward to Resolve Statelessness." *Refugees International Bulletin* 28 May (<http://www.refintl.org>).
- McKinsey, Kitty. 2007. "Lose a Husband, Lose a Country: The Stateless Brides of Viet Nam." *Refugees* 147(3): 26-27.
- Perera, Sulakshani. 2007. "Sri Lankan Success Story." *Refugees* 147(3): 20-23.
- Pouilly, Cécile. 2007. "African's Hidden Problem." *Refugees* 147(3): 28-29.

- Roader, Philip G. 2007. *Where Nation-States Come From: Institutional Change in the Age of Nation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ärer, Roland. 2006. "The Council of Europe and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Refugee Survey Quarterly* 25(3): 33-39.
- Selm, Joanne van. 2009. "Stateless Roma in Macedonia." *Forced Migration Review* 32: 46-47.
- Southwick, Katherine and Dawn Calabria. 2008. "Bangladesh: Maintain Momentum to Guarantee Citizenship Rights." *Refugees International Bulletin*, 25 Sept. 2008, <http://www.refugeesinternational.org>.
- Southwick, Katherine and M. Lynch. 2009. *Nationality Rights for All: A Progress Report and Global Survey on Statelessness*. Washington DC: Refugees International.
- Southwick, Katherine. 2009. "Ethiopia-Eritrea: Statelessness and State Succession." *Forced Migration Review* 32: 15-17.
- UNHCR and IPU. 2005. *Nationality and Statelessness: A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 UNHCR Regional Bureau for Europe. 1997. "Citizenship and Prevention of Statelessness Linked to the Disintegration of the Former Socialist Republic of Yugoslavia." *European Series* 3(1): 1-122.
- UNHCR. 2003. *Agenda for Protection*. 3rd ed.
- _____. 2004. *Final Report Concerning the Questionnaire on Statelessness Pursuant to the Agenda for Protection*.
- _____. 2009. *2008 Global Trends: Refugees, Asylum Seekers, Returnees, Internally Displaced and Stateless Persons*.
- UNICEF. 2007. *Progress for Children: A World Fit for Children Statistical Review*.
- United Nations. 1949. *A Study of Statelessness*. New York: United Nations.
- Vivian Tan. 2007. "Chasing the Propiska." *Refugees* 137(3): 10-11.
- Weis, Paul. 1979. *Nationality and Statelessness in International Law*. 2nd ed. Leiden: Sijthoff & Noordhoff.
- White, Paul. 2009. "Reducing *de facto* Statelessness in Nepal." *Forced Migration Review* 32: 28-29.
- Wooding, Bridget. 2009. "Contesting Discrimination and Statelessness in the Dominican Republic." *Forced Migration Review* 32: 23-24.

〈부록〉 세계 각국의 무국적 실태와 무국적 발생의 배경

사우스윅과 린치(Southwick and Lynch, 2009)에 의해 수행된 레퓨지 인터내셔널(Refugees International)의 조사연구 중 글로벌조사(Global Survey of Statelessness)를 요약하면서 부분적으로 정보를 추가한다.

A. 동아시아

- 대한민국: 해외 영주하는 중국인의 중국 국적 취득이 어려움으로써 재한중국인 중 무국적 발생 가능성.²⁵⁾
- 말레이시아: 1984년부터 로HING야의 입국이 시작되어 1992년에 절정. 15,000-20,000명 정도가 등록되었으나 비공식적으로는 7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말레이시아 헌법에 의해 무국적이 되는 국내 출생자에게 국적을 부여. 그러나 로HING야에게는 적용을 배제. 로HING야에게는 무국적자 신분증을 주고 일시 체류를 허용하나 노동허가는 거부. 동부 사바(Sabah) 지역의 플랜테이션에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출신의 불법이주노동자 고용. 이 중 인도네시아 출신 36,000의 아동이 무국적 상태. 필리핀 출신 무국적 아동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 부모들은 이들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방치한 채 체포되거나 추방.
- 미얀마: 북서부 라키네(Rakhine, 역사적으로는 Arakan) 주에 거주하는 70여만 명의 로HING야(Rohingya)가 가장 규모가 크고 사정이 심각한 무국적자 집단. 이 지역은 1824-26년에 영국 지배에 편입되었고 영국은 인도인의 이주를 권장. 1948년 독립 버마 정부는 이러한 이주가 불법임을 주장하고 이주자를 뺑깁인으로 간주. 1974년에는 비상이민법(Emergency Immigration Act)을 제정하여 버마 국적을 박탈하고 탄압. 1978년 22만 명의 로HING야가 방글라데시로 피신. 1982년 국적법에서는 외국인거주자로 규정. 135개의 구성민족(national race)에 포함되지 않으며, 완전국민(full citizen), 준국민(associate citizen), 귀화국민(naturalized citizen)

25) 정보의 출처인 레퓨지 인터내셔널(RI)의 보고서에서는 대한민국의 무국적 발생 배경을 주로 재한 화교와 화인(華人)에 한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한국의 무국적 발생 사유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라는 공식범주에서도 배제. 4세대 이상을 버마에 거주한 인도출신인(Persons of Indian Origin, PIO)중 2천명만이 인도 여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아무 서류 없이 무국적 상태. 1983년의 인구조사시 인도출신인은 428,000에 달했으나 현재는 60만 정도로 추산되며, 인도 정부는 250만으로 추산. 미얀마 정부는 불법 출국 또는 망명한 자의 국외 출생 자녀에게 국적 부여 거부. 이로써 2백만 이주노동자와 15만 난민은 국적 서류 없이 무국적 상태로 전락.

- 베트남: 캄보디아로부터 입국한 난민 중 다수가 귀환했으나 중국계 캄보디아인 9,500명이 무국적 상태로 체류 중. 베트남 정부가 이들의 귀화를 약속. 해외로 시집간 결혼이주여성이 현지 국적 취득 후 이혼하고 현지 국적 상실함으로써 무국적화.
- 인도네시아: 2.1억 인구 중 중국계가 1천만 차지. 중국이 이들의 국적을 주장하는 것에 대응해 이들에게 국적 선택을 요구. 1965년 쿠데타를 중국이 배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중국계에 대해 차별적 정책 시행. 정부 발표에 의하면 1993년부터 208,820 중국계 무국적자의 국적 신청을 받아 14만 명이 국적 취득. 2006년의 법률에 의해 출생지주의에 의해 국적을 취득하되 부모의 국적이 다르면 18세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이로써 중국계도 국적 취득 가능. 1999년 동티모르에서 서티모르로 피신한 25만 명 중 3만 명이 인도네시아 영내에 체류. 민간의 추계에 따르면 그 수는 10만을 상회. 2003년 이들에 대한 등록을 시작해 인도네시아 국적을 부여. 일부는 동티모르 국적을 희망하나 동티모르와의 협력 부재와 절차 미비로 동티모르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 다수.
- 일본: 일본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서 혼외자로 출생한 자의 국적을 부정하는 법률에 대해 2008년 최고재판소가 위헌판결. 그 이전에는 아동이 출생하기 전에 부가 인지할 것을 요구.²⁶⁾ 버마 난민 로힝야(Rohingya)가 체류 중이며 이에 대해 특별거주자격을 부여하라는 요청.
- 중국: 10만의 북한인 체류 중. 북한인으로부터 출생하거나 북한인과 중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의 무국적화. 부모 중 1인이 중국인이면 중국 국적을 취득하

26) 레퓨지 인터내셔널 보고서에서는 재일한인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조선적(朝鮮籍) 한인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정보의 불충분성을 시사한다.

나, 부모 일방의 북한 송환을 피하기 위해 등록을 하지 않아 호구를 받지 못하기도.

- 캄보디아: 베트남계 소수민족 등 크메르 종족성을 가지지 않은 집단의 국적 불안정. 출생 및 민사등록제도의 불비, 과도한 비용 및 부패 등으로 인해 등록되지 않은 자 발생. 베트남 남부에 거주하는 크메르인인 크메르크롬(Khmer Krom)의 캄보디아 국적을 인정하지만 이들은 국적을 주장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얻는 데 난점.
- 태국: 아크나(Akna), 라누(Lanu), 리수(Lisu), 야오(Yao), 샨(Shan), 몽(Hmong), 카렌(Karen) 등 2백만이 넘는 고산족 중 NGO에 의하면 337,000명에서 절반 가량이 무국적자. 미얀마에서 탈주해 온 난민 중 15만 명이 난민촌에 거주하며 2백만 이상이 불법체류. 이들로부터 출생한 자는 미얀마와 태국 모두의 국적을 결여. 라오스, 베트남, 버마로부터 온 50만 이주노동자로부터 매년 3,000-15,000명의 아동 출생. 2006년 탁신 총리는 2백만 명의 무국적자에게 국적을 부여하겠다고 했으나 실각.

B. 남아시아

- 네팔: 총 340만 명 가량의 무국적자가 존재했으나 근래 260만 명 감축. 2만여 명의 티베트 난민이 무국적 상태. 원칙적으로는 국적 취득이 가능하나 원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한다고 당국이 설명. 1989년 이전에 이주한 2만여 명은 티베트난민신분증을 소지. 그러나 5,000에 달하는 그들의 자녀와 1989년 이후에 입국한 자에 대해서는 신분증 발급 거부. 부탄에서 축출된 10만여 네팔계 부탄인에 대해 네팔 국적 거부. 이들은 힌두교를 믿음으로써 불교를 믿는 다수의 네팔인과 구별. 2006년의 네팔국적법(Nepalese Citizenship Act)의 제정에 의해 1990년 4월 전에 네팔에서 출생했고 네팔에 영주하는 자의 국적을 인정. 네팔인과 결혼하는 자는 원국적 포기를 조건으로 국적 취득 가능.
- 몰디브: 이슬람으로부터 종교 개종이 샤리아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국적 박탈 가능.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소멸하는 경우 타국적 취득하지 않으면 무국적화 가능성.

- 방글라데시: 인도 비하르로부터 이주해온, 우르두(Urdu)어를 사용하는 무슬림 소수자 비하리(Biharis)가 대표적 무국적 집단. 20-50만으로 추산되는 이들은 1971년 동서파키스탄 분열 때 서파키스탄을 지지했으나 결국 파키스탄 국적도 취득 못하고 방글라데시에서는 다수를 점하는 벵갈리로부터 차별 당해 무국적 상태. 2008년 방글라데시 고등법원(High Court)의 결정에 의해 국적 인정. 1978년 버마로부터 로힝야의 이주가 시작되었고 1991-1992년에 제2차 이주. 28,000명은 난민촌에 살고 있으나 20만 가량은 불법체류. 미얀마와 방글라데시는 이들이 상대국의 국민이라 주장. 인도와의 접경지대에 20만 명의 인도계 주민 거주. 양 국간 인구조사 놓고 갈등이 빚어져 국적 불안정.
- 부탄: 부모가 모두 국민인 자에게서 출생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폐쇄적인 국적제도로 인해 국적 취득하지 못하는 자 다수 발생. 네팔로 축출된 10만여 명의 네팔계 부탄인들은 귀환에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귀환하더라도 국적 취득에 난점.
- 스리랑카: 19세기 영국이 인도로부터 모집해 차와 고무 재배 플랜테이션에 배치한 타밀인들은 1947년 독립 후 스리랑카 국적 부여 대상에서 제외. 1950-1980년대 인도-스리랑카간 몇 차례 협정에 의해 그 중 일부가 인도로 귀환하고 나머지는 스리랑카 국적을 취득하도록 되었으나 인도가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다가 1984년에 파기. 인도는 1988년에 법을 개정해 인도 국적을 신청한 적이 없는 인도출신인의 스리랑카 국적 취득을 허용하면서도 50만 고지대 타밀인(Hill Tamils)은 배제. 그리하여 2003년 현재 30만 명이 무국적자. 2003년 인도출신인 시민권부여법(Grant of Citizenship to Persons of Indian Origin Act)에 의해 1964년 이후 스리랑카에서 거주한 인도출신인과 그 후손에게 국적 부여. 이들은 인도 국적 포기를 선언해야 국적을 취득. 1930년대 중국에서 이주한 중국계 스리랑카인 200명도 조부가 스리랑카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국적 취득을 못하여 무국적자로 있다가 현재는 국적 취득 가능.
- 인도/파키스탄: 1947년 인도/파키스탄 분열로 인해 동파키스탄으로부터 아루안찬 프라데시(Aruanchal Pradesh)로 이주한 3만여 명의 차크마인(Chakmas)과 하종인(Hajongs)은 국적을 얻었으나 자녀들은 실패. 현재 65,000에 달하는 차크마인들은 국적이 있으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권리의 행사에서 많은 제한. 1947년

파키스탄으로부터 이주한 2만여 힌두 가족은 무국적 상태. 1955년 제정된 시민권법(Citizenship Act)과 1965년의 시민권규정(Citizenship Rule)의 개정에 의해 국경지대에서 5년 이상 거주한 파키스탄인에 국적 부여. 파키스탄에 편입된 펀잡(Punjab) 주의 시알코트(Sialkot) 지구로부터 잠무(Jammu)와 카시미르(Kashmir)로 이주한 10만 이상의 펀잡 난민과 그들의 자손은 여전히 무국적. 2003년 국적법 개정에 의해 부모 중 일방이 인도인이라도 다른 일방이 불법체류자인 경우 국적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무국적 발생 가능성 증대.

C. 중앙아시아

- 아제르바이잔: 2007년 UNHCR에 의하면 2천여 명의 무국적자 존재. 주로 그루지아와 이란에서 온 아제르인(Azeris). 그러나 10만여 명에 달하는 메스케티안 투르크인(Meskhetian Turks)의 지위도 불안정. 이들은 그루지아 남부 터키 접경 지대에 거주하다가 스탈린 치하에 다른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이주 당하여 8-10만이 카자흐스탄에, 5-7만이 러시아에, 2.5-3만이 키르기스탄에, 1.5-4만이 우즈베키스탄에, 5천-1만이 우크라이나에, 2만여 명이 터키에 거주. 아제르바이잔에서는 UNHCR의 지원 아래 1998년 국적법을 개정하여 이들에게 국적을 부여. 그러나 병역을 거부하는 남성은 배제. 미국이 수천 명의 메스케티안 투르크인을 수용하기로 결정.
- 우즈베키스탄: 50만 무국적자 존재. 여권이 아닌 거주허가서를 소지. 생활은 할 수 있으나 여행 불가능.
- 카자흐스탄: 2007년 카자흐 정부에 의하면 7,538 CIS 국가 출신 거주자가 있고 이 중 449명이 무국적자.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 체첸공화국, 중국,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온 난민을 인정하지 않아 이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무국적 상태에 빠질 우려. 1991년 국적법은 귀화를 허용하나 비카자흐계의 귀화를 어렵게 하는 실무. 원국적 포기를 조건으로 귀화 허가하기 때문에 무국적 발생 가능성. 카자흐계의 귀환자를 오랄만(Oralman)이라 칭하면서 받아들였으며 2002년 법개정에 의해 이들에게는 원국적 유지 허용. 오랄만은 초기에 절차가 번거로워 출신국으로 귀환. 현재에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무국적 우려 없음.

- 키르기스스탄: 5-10만 무국적자 추정. 2007년에는 타지키스탄으로부터 피신해온 9천명의 키르기스인에 귀화 허가. 1994년 국적법 시행. 주민등록된 사람은 자동적으로 국적 부여하고,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국적 신청 수리. 그러나 절차가 번거로워 많은 사람 포기. 2007년 국적법 개정 전에는 부계혈통주의에 의해서만 선천적 국적취득. 귀화시 원국적을 먼저 포기하도록 했는데 이 규정은 현재 개정됨. 국경지대 거주자 중 10-30%는 미등록자. 우즈베키스탄, 체첸, 중국 난민 불인정으로 이들의 무국적 가능성 상존. 우즈베키스탄과의 접경지대에서는 과거부터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통혼도 했으나 국경이 설정됨으로써 갈라진 사람들이 문제. 우즈베키스탄 인들은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야 여권 갱신이 가능한데 갈 수 없는 사람도 있어서 무국적자 발생.
- 투르크메니스탄: 2006년 16,000명에게 국적 또는 거주자격 부여. 수혜자는 타지키스탄 내전을 피해온 투르크멘인, 러시아인, 우즈베크인.

D. 중동

- 레바논: 40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유엔의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UNRWA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ian Refugees in the Near East)의 지원 아래 생존. 레바논 인구의 10%에 해당. 1994년 입법에 의해 팔레스타인인의 국적 취득의 길이 열렸으나 실효성 취약. 부계혈통주의에 의해 팔레스타인인을 부로 하여 출생한 자는 레바논 국적 취득 못함. 7.5-10만의 쿠르드 무국적자 존재. 1994년 귀화령이 제정되었으나 1-1.8만의 쿠르드인만이 국적 취득.
- 바레인: 9,000-15,000에 달했던 비둔에 대한 국적 부여가 진전을 보아 1,300명을 제외한 비둔이 무국적을 면함. 부계혈통주의에 따른 무국적 발생. 여성단체들이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라고 요구.
- 사우디아라비아: 비둔 무국적자. 부계혈통주의에 의해 무국적 발생. 287,000명의 팔레스타인은 거주자격만을 가짐.
- 시리아: 30만 무국적 쿠르드인. 40만 무국적 팔레스타인인.
- 아랍에미리트연합(UAR): 2006년의 정책 결정으로 잔지바르(Zanzibar) 출신, 이란 또는 아시아 출신을 포함한 1만여 명의 무국적자의 귀화 추진하여 수천 명

이 귀화. 부계혈통주의에 따른 무국적 발생.

- 오만: 부계혈통주의에 따른 무국적 발생. 외국인 남성 배우자는 귀화 불가능.
- 요르단: 가자지구 출신의 13만 난민을 제외한 팔레스타인인은 요르단 국적을 보유. 부계혈통주의에 의해 무국적자와 요르단 여성 사이에서 출생한 자는 무국적.
- 이라크: UNHCR의 추산에 따르면 무국적자 13만. 2003년 미국의 침공 이전 팔레스타인인이 3만 명. 이들은 1948년 이라크로 이주한 자의 자손으로서 이라크 내전 중 박해를 받아 시리아와 요르단으로 피신을 시도. 그러나 그들 국가가 수용을 거부함으로써 4천여 명은 다마스쿠스에 불법체류하고 3천명은 시리아-이라크 국경지대에 설치된 난민촌에 수용. 부계혈통주의에 따른 무국적 발생.
- 이란: 7,000여 명의 시아파 쿠르드족이 무국적 상태. 1970년대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부가 시아파 쿠르드족은 이란인이라 주장하며 이들을 이란으로 추방함으로써 50만 명의 시아파 쿠르드인이 이란에서 무국적 상태로 존재. 2005년 이라크 신헌법이 제정되어, 국적을 상실한 자가 국적을 회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다수의 쿠르드인이 이라크로 귀환. 부계혈통주의에 의한 무국적 발생.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요단강 서안(West Bank)과 가자지구(Gaza Strip)에 330만, 이스라엘 내에 100여만 팔레스타인인 존재. UNRWA가 규정하는 팔레스타인인의 정의는 1946-48년에 팔레스타인에 거주했으나 1948년 아랍-이스라엘 무력충돌로 인해 거처와 생활기반을 상실한 자. 460만에 달하는 이들은 UNHCR이 아닌 UN기구로부터 보호 및 원조를 받는 결과 1954년 무국적자지위협약 제1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동 협약의 대상에서 제외됨.²⁷⁾
- 카타르: 1,200-1,500명의 비둔. 2005년 알그프란(Al-Ghfran) 부족원 5천여 명의 국적을 박탈. 그 후 회복의 길을 열었으나 2천명만이 회복. 2005년 국적법이 귀화를 허용하면서 25년 계속 거주요건을 부과. 연간 귀화허가 건수는 50건에 불과. 부계혈통주의에 의해 무국적 발생.
- 쿠웨이트: 8만에서 14만에 달하는 비둔 무국적자 존재. 비둔은 비둔 진시아(bidun jinsiya)의 약어. 쿠웨이트의 비둔은 베두인족의 후손. 1959년 국적법은

27) 무국적자지위협약 제1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본 협약은 다음과 같은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i)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 이외의 국제연합의 기관 및 단체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받고 있는 자로서 그러한 보호와 원조를 받는 한에서.”

1920년에 쿠웨이트에 정착한 자로서 상주 상태를 유지해온 자를 쿠웨이트 국민으로 정의. 이에 따라 1/3은 완전 국민으로 취급되고, 1/3은 귀화한 국민 또는 부분적인 시민권만을 향유하는 국민으로 취급. 나머지 1/3은 비둔 진시야. 1985년 비둔을 공직에서 축출하고 비둔 아동의 교육권을 박탈했으며 비둔의 여권도 박탈. 부계혈통주의에 의해 무국적

E. 유럽

- 그루지아: 메스케티안 투르크인이 주요 무국적 집단으로서,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가입 조건으로 이들을 재수용하겠다고 약속. 2011년까지 재수용을 추진한다는 법을 2007년에 제정했으나 약 1천 명 정도만 재수용된 상태.
- 그리스: 1978년 입법에 의해 로마도 국적 취득 가능하게 되었으나 절차에 필요한 서류 미비 등의 문제로 상당수가 여전히 무국적. 1955년 국적법 제19조에 의해 터키계 6만 명 국적 상실. 이 법은 1998년에 폐지. 그러나 마케도니아와 터키인은 절차에서 차별받는다라는 비판.
- 네덜란드: 4,461명으로 UNHCR 발표.
- 독일: 10만 명의 독일 국적 없는 로마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 독일은 UN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로마 보호를 위한 결의 제62호”에 대해 43개국 중 유일하게 반대. 1992년 루마니아와 협정을 맺어 루마니아 출신 로마 중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는 자는 루마니아로 송환. 4.5만 명 송환한 것으로 추정. 1994년에는 로마를 거주자격 부여대상으로부터 제외. 보충적 출생지주의의 도입으로 터키계 이민 자녀의 국적 취득이 쉬워졌으나 여전히 국적 선택을 강제. 터키에서는 병역의무를 불이행 하는 자의 여권을 취소함으로써 100명의 터키계 무국적자 발생. 유럽 거주 15만 팔레스타인인 중 8만 가량이 독일에 거주. 대부분 무국적 상태.
- 라트비아: 2004년 인구의 28.8%가 러시아계이며 그 중 절반만이 라트비아 국적 보유. 47%는 무국적자이며 3%만이 외국국적자. 러시아계 무국적자는 34만 명,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계는 10만여 명으로 추산. 1998년 국적법 개정으로 인해 1991년 라트비아에서 출생한 자는 부모의 의사표시에 의해 자동적으로 국적 취

득. 그러나 여전히 많은 아동이 라트비아 국적 결여.

- 러시아: 22-40만에 달하는 로마(집시) 중 무국적자 수 미상. 소비에트연방 해체 후 소비에트 여권을 러시아 여권으로 전환했으나 로마에게는 거부. 5-7만의 메스케티안 투르크인 거주. 1992년 국적법에 의해 러시아 국적을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러시아 국적 부여. 그러나 크라스노다르(Krasnodar) 주에 거주하는 메스케티안은 많은 차별에 직면.
- 루마니아: 정부는 로마 인구를 43만으로 추정하나 NGO들은 2.5백만으로 추산. 인구조사에 잘 잡히지 않는 이유는 차별을 두려워해 피하기 때문.
- 마케도니아: 코소보로부터 이주한 5천명을 포함해 로마가 주된 무국적 집단. 2004년 국적법 개정으로 장기거주자의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면서 알바니아 계와 로마의 국적 취득을 위한 캠페인 전개.
- 벨기에: 동유럽 출신의 로마 무국적자 존재. 이들은 출신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출신국의 정세변화로 무국적화.
- 벨라루스: 구 소비에트내 다른 공화국 출신 무국적자 16,000명.
-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4-5만의 로마 중 상당수가 무국적. 2005년 유럽평의회 (CoE)가 난민과 무국적자의 귀화를 용이하게 하는 법개정을 주문했으며, 합법 체류 및 인정된 난민에 대해 귀화 허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 추진.
-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무국적자 총수 불명. 구유고연방의 다른 나라에서 출생한 자와 난민 중 다수가 무국적 상태. 비세르비아계 구유고연방 주민, 난민, 해외 이주자와 해외로 피신한 난민 등의 국적을 불안정하게 하는 1997년 국적법을 2004년에 개정. 로마는 소수민족에 포함되지 않으며 헌법의 소수민족 보호에서 배제.
- 슬로베니아: 발칸전쟁 발발 후 슬로베니아에 남겨진 무국적자 12,000-13,000명에게 영주자격 부여.
- 알바니아: 그리스계 알바니아인 중 일정 집단의 국적 불안정. 2006년 그리스는 그리스계 알바니아인의 이중국적 허용.
- 에스토니아: 소비에트연방 해체 후 배제적 국적법에 의해 무국적자 대량 발생. 2004년 EU 가입 당시 162,000명의 무국적자 존재. 전 인구의 12%. 이들은 에스토니아 언어 시험에 합격해야 에스토니아 국적 취득.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 국적 또는 무국적. 그 후 상황이 개선되어 무국적자 수가 112,000명으로 감소. 국

적 취득 절차가 편리해졌고 언어 교육도 지원. 무국적자의 자녀로서 5년간 거주 했으면 부모의 의사에 의해 국적 취득. 무국적자는 지방선거에서 투표 가능. 출 생지주의에 의한 비국민 자녀의 국적 취득에 대해서는 부정적.

- 영국: 구 제국신민으로서 영국 여권을 소지했으나 영국내 거주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다른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영국 국적자(national)라 해도 실질적으로 무국적. 2002년 국적이민난민법(Nationality, Immigration and Asylum Act)에 의해 영국 국적자로서 다른 국적 없는 자에게는 영국 시민권(citizenship) 인정.
- 오스트리아: 2006년 UNHCR 발표에 의하면 무국적자 501명. 이들은 거주허가를 받고 있으나 귀화하려면 10년 거주 요건에 독일어 실력 요구. 선천적 무국적자가 될 수 있는 자에게는 출생과 더불어 국적 부여.
- 우크라이나: 1991년 독립 선언 당시 소비에트 공민으로서 우크라이나에 정주하고 있는 자에게 국적 부여. 우크라이나에서 출생하여 외국으로 강제이주 당한 무국적자의 국적 취득 난관. 강제이주된 아르메니아, 불가리아, 독일, 그리스 계통의 인민의 대부분은 1991년 법에 의해 귀화. 258,000명의 크림미아 타타르족 중 15만 정도가 우크라이나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 1991년 법 제정 이후 그러나 그간의 거주국(예컨대 우즈베키스탄) 국적법 제정 전에 귀환한 사람은 무국적으로서 10만 명으로 추정. 국적법 개정과 우즈베키스탄과의 협정에 의해 대부분의 귀환 타타르인은 국적 취득. 48,000 로마 중 무국적자 수 미상.
- 이탈리아: 2007년 현재 공식적으로는 886명의 무국적자가 있다고 발표되었으나 1-1.5만 명의 로마 무국적자가 존재한다는 주장도 있음.
- 체코공화국: 25-30만 로마 중 무국적자 수 불명. 1992년 국적법은 체코슬로바키아인 중 체코인으로 등록된 자는 자동적으로 체코공화국 국적을 부여하면서 슬로바키아인으로 등록된 자에게는 귀화만 허용하고 엄격한 요건 부과. 이로써 슬로바키아인으로 등록된 많은 수의 로마가 무국적화. 15세 미만자에게는 국적 부여시 양부모의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고아원에 수용된 많은 아동이 무국적화. 이에 대해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가 우려 표시. 1999년 법을 개정하여 체코슬로바키아 분열시 체코공화국 지역에 영주하던 로마의 국적 취득 절차 개설.
- 크로아티아: 구유고연방 주민 중 비크로아티아계에 대해 차별적이며 특히 세르

비아계의 국적 등록시 지연과 번거로움.

- 헝가리: 40-50만 명의 로마 중 무국적자 수 불명.

F. 아프리카

- 리비아: 2007년 12,000명이 UNHCR에 무국적자로 등록했으나 동 기관은 무국적자를 3만 명으로 추산. 대체로 팔레스타인, 이라크, 소말리아, 수단, 에리트리아로부터 이주.
- 마다가스카르: 2백만 무슬림 인구 중 5% 가량이 무국적. 무슬림 이름만으로 국적 신청 거부되는 경향. 1세기 이상 거주해온 인도-파키스탄 계통의 카라나(Karana) 2만 명 중 극소수만이 국적 보유. 모가 국적자인 경우에만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모가 국민이나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조기에 국적보유 신고를 해야 함.
- 모리타니아: 1980년대 후반 비아랍계 흑인의 시민권을 부정하고 추방함으로써 65,000-100,000명 가량의 비아랍계 모리타니아인이 국외로 이주. 그 중 세네갈에 정착한 상당수가 귀환하지 못하고 현지 국적도 취득하지 못해 무국적 상태. 1990년대말 UNHCR은 귀환하지 못한 사람의 수를 25,000명으로 추산. 일각에서는 45,000-60,000에 달한다고 추측. 2007년 모리타니아, 세네갈, UNHCR의 3자 협의에 의해 귀환 추진.
- 스와질랜드: 혼혈과 백인이 진정한 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스와지계 국민의 국적 서류와 여권 취득에 어려움.
- 알제리: 1979년 모로코의 서부사하라 병합에 의해 알제리로 망명한 110,000-155,000 사라위인(Sahrawis)이 무국적 상태로 난민촌에 거주. 부계혈통주의에 의해 무국적 남성과 알제리인 여성 사이에서 출생한 자도 모두 무국적 상태.
- 에리트리아/에티오피아: 1998-2000년 양국간 분쟁을 계기로 에티오피아가 에리트리아 출신자들의 국적을 박탈. 그 수는 12만에서 50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추산됨. 2003년에 이들에게 에티오피아 국적을 취득하게 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지연과 절차적 불비가 지적됨. 국적 취득 후에도 차별 계속.
- 이집트: 55,000-77,000의 팔레스타인 거주. 이들의 정체성 보존을 명분으로 이집

트 국적을 부여하지 않음. 2004년 양계혈통주의로의 국적법 개정에 의해 2005년 현재 40만 명의 이집트 모계 출생자의 국적 취득 가능. 단 팔레스타인인을 부모 하는 자는 제외. 바하이(Bah'í) 교파에 속한 자들은 신분등록에서 종교를 기재 할 수 없음으로 인해 신분증을 발급받지 못하다가 2008년 행정재판에 의해 종교 기재 없이 신분증 발급 가능.

- 짐바브웨: 2백만 농업노동자 중 30%가 외국 출신. 짐바브웨 국적도 취득 못하고 출신국과의 관계도 단절. 짐바브웨에서 출생하더라도 출생서류와 국민신분증 취득에 난점. 2004년 시민권법의 개정에 의해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출신의 부모로부터 짐바브웨에서 출생하는 사람에 대해 출생에 의해 짐바브웨 국적 부여. 그러나 출생신고 미비와 행정적인 난점으로 한계. 모잠비크 내전 기간에 짐바브웨로 피신한 난민 다수. 무가베 대통령은 5년 이상 계속 해외에 거주하면 국적을 상실할 것이라고 경고.
- 케냐: 10만여 명의 누비언(Nubians)과 소말리아인, 해변 지역에 거주하는 아랍인 들처럼 종족적 배경이 다른 사람의 등록에 난관. 누비언은 1세기에 걸쳐 수단으로부터 이주한 종족. 누비언은 2003년과 2006년 각각 케냐 법원과 아프리카인권및인민권재판소(African Court on Human and Peoples' Rights)에 제소했으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가운데 사정이 호전. 해외에서 출생하는 아동이 모계혈통에 의해 국적 취득 불가능. 국내에 거주하나 부모를 알 수 없는 아동의 국적 취득 곤란. 난민의 귀화 불허.
- 코트디부아르: 180만 거주 인구 중 20%가 미등록 상태. 귀환하지 않은 이주노동자와 내란으로 인해 기록을 가지지 않은 사람. 13세 이상의 자로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의 등록 진행 중.
-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에 거주하는 30-40만의 반야물렌게(Banyamulenge) 구성원들의 국적 불안정. 이들은 투치족으로서 수백년에 걸쳐 르완다와 브룬디로부터 이주. 르완다 내전 때 후투 정권을 전복하고 투치 정권을 세우는 데 기여. 콩고 내에서는 로랑 카빌라(Laurent Kabila)를 도와 모부투(Mobutu) 정권을 전복하는 데 기여했으나 로랑 카빌라의 관계가 나빠져 로랑 쿤다(Laurent Nkunda)를 지도자로 투치 반군을 구성. 쿤다가 체포됨으로써 혼미. 2004년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이 통과되었으나 실효성은 확신할 수 없음.

G. 아메리카

- 도미니카공화국: 1백만 명의 아이티 출신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 헌법 제11조에 따라 출생지주의에 의해 시민권 부여. 그러나 아이티인으로부터 출생하는 자는 정식체류자가 아니라 통과체류자로 간주되어 국적 불인정. 그러한 아동의 부모는 이들이 도미니카인이라 생각하여 아이티 공관에 등록하지 않거나 국적에 필요한 서류의 미비 등 여러 이유로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향. 2007년 도미니카 정부는 핑크북(pink book) 프로그램을 도입해 외국인으로부터 출생하는 사람은 분홍출생증명서(pink birth certificates)를 발급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
- 멕시코: 난민신청을 입국 후 15일 이내에만 가능하게 한 난민법에 의해 난민인정 못 받고 무국적자로 전락하기 쉬움. 2008년 UNHCR은 국적법과 난민법 개정을 촉구.
- 미국: 1982년 아메라시아 이민법(Amerasian Immigration Act)에 의해 1950-1982년 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에서 출생한 아메라시아인의 미국 이주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2003년에는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법안 제출. 아메라시아인은 미국 시민권을 갖지 않으므로 거주국에서 미등록되는 경우 무국적화. 재미 쿠바인은 쿠바 국적을 가지더라도 귀국할 수 없으므로 실효적으로 국적을 행사하지 못함.
- 바하마제도: 부계혈통주의에 의해 출생시 국적 취득 못하면 18세가 되어야 국적을 취득하나 신청 기간이 짧고 요구되는 서류가 많아 실제로 국적 취득하는 데 난점. 이러한 무국적자 중 아이티 출신의 자녀 다수.
- 베네주엘라: 출생지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미등록 콜롬비아인의 자녀는 등록이 방해되는 경향.
- 브라질: 1,000-3,000명의 무국적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무국적 퇴치를 위해 2개 조약 모두 가입하는 등 노력 경주.
- 에쿠아도르: 콜롬비아 출신의 미등록자 20만.
- 캐나다: 해외 출생자는 혈통주의에 의해 캐나다 국적 취득하나 해외 출생 2세대의 경우 28세에 이르기 전에 국적보유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28세에 국적 상

실. 무국적자의 캐나다 국적 신청이 가능하나 최근 4년 중 3년을 캐나다에서 거주해야 하므로 그동안 무국적 상태 계속. 그런 무국적자가 캐나다에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이 요건을 어떻게 충족할지는 의문. 2-3백 명의 무국적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20년간 필리핀에서 오도가도 못하던 베트남 보트피플 100 가족을 받아들이기로 결정.

- 코스타리카: 플랜테이션에서 일하는 니카라과 출신의 이주노동자와 파나마에서 유래한 토착민 고베-뷰글레인(Ngobe-Bugle)에게서 무국적 발생. 이들은 스스로 코스타리카인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현지에서 출생하는 아동을 등록하지 않는 반면 니카라과와 파나마는 이들의 국적을 인정치 않음.
- 파나마: 콜롬비아 출신자로부터 출생한 자녀에서 무국적 발생

H.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 2006년에 무국적감소협약 가입
- 북마리아나제도: 미국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규약(Covenant)이 채택된 1978년과 비준된 1986년 사이에 미국 시민이 아닌 자로부터 출생한 자에게는 미국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았으나 25명의 무국적 주민이 미국 시민권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연방항소법원이 청구를 인용, 미합중국이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300명이 시민권 취득.
- 파푸아뉴기니: 2000년 인도네시아로부터 400명이 월경하여 2001년 300명이 체류. 난민 5천명 이상 존재. 이들로부터 출생하는 아동의 무국적 가능성.

이철우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사회학과 ‘시민권과 이주’를 강의하고 있다. 법과 사회이론, 법에 대한 사회사적 연구, 국적 및 이주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저술로는 “South Korea: The Transformation of Citizenship and the State-Nation Nexus,” “탈국가적 시민권은 존재하는가,” “영토와 인민의 대립과 통일: 재외국민 참정권의 변증법” 등이 있다. 연락처는 chulwoo.lee@yonsei.ac.kr이다.

Statelessness: The Worldwide Situation and Global Responses

Chulwoo Lee (Yonsei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nalyses the definition of statelessness, inquires into the various backgrounds of statelessness, and examines global responses to the problem. It is estimated that over 12 million persons live in statelessness across the world. These consist of both *de jure* and *de facto* stateless persons. This study throws light on the relative character of the distinction between *de jure* and *de facto* statelessness and points out the limitations of major international instruments in coping with *de facto* statelessness. The discussion is followed by a typology of backgrounds from which statelessness arises and a corresponding list of global responses to statelessness. Lastly, and in lieu of Conclusion, the study alludes to the situation of stateless ethnic Koreans in the former Soviet Union and that of stateless persons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Key words: nationality, stateless persons, statelessness, refugees, birth registration, UNHCR

일본 제국 시대의 이주의 정치

조선인 이주자들의 참정권 사례를 중심으로

이충훈*

현대 국제 인구 이동의 증가는 이주자를 받아들이는 국가에서 이주자들의 정치적 통합과 참여의 문제에 관한 어려운 질문들을 제기해왔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응으로 전세계 40여개 국가들에서 자국의 시민이 아닌 이주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1989년 이래 이주자의 투표권 문제는 주요한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어왔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현재 거부되고 있는 이주자의 투표권은 제국주의 시대에 조선인 이주자들에게 부여된 것이었다. 이 연구는 제국주의 시대에 어떻게 조선인 이주자들이 일본 내지에서 투표권을 부여받게 되었는지, 그 과정은 어떠한지, 그리고 조선인 이주자들의 정치 참여는 무엇을 함의하는지를 동화(assimilation)와 반-동화(anti-assimilation), 그리고 카운터-동화(counter-assimilation)가 구성했던 이주 정치의 역동성 속에서 고찰한다. 이러한 분석에 기반을 두고, 이 연구는 현재의 이주자 투표권 이슈에 대한 정치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이주 정치, 조선인 이주자, 참정권, 일본, 동화, 반-동화, 카운터-동화

*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정치학과 박사과정수료.

I. 서론

우리는 이방인들이 그들이 합법이건, 불법이건 상관없이 투표권을 박탈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투표라는 것이 민족 국가의 시민권에 기반해 있어야만 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우리는 이방인들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이곳에 그들의 물리적 생존과 우리의 편의만을 위해서 왔을 따름이다. 그들은 청소부로서, 가정부로서, 보모로서, 그리고 운전기사로서 일하기 위하여 왔을 뿐이다. 그들은 간신히 살아가기 위하여 여기에 온 것이지, 통치하려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공적 논의의 공간이라기 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에서의 사적 필요의 영역에 거주한다. 우리는 이방인의 배제를 떳떳하게 요구한다. 그들은 지배당할 운명이지, 우리와 함께 통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Raskin, 1993: 433; Varsanyi, 2005에서 재인용).

근대 사회에서 투표의 역사는 특정한 범주 혹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노동자, 여성, 흑인, 소수자 등—을 정치적으로 포함하기 위하여 “공적 심의 공간”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권리의 확대는 종종 정치 발전과 민주화의 지표로서 사용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권리의 확대는 “공적 심의 공간”을 민족적으로 구성하고 이방인에 대하여 정치적 경계를 설정하는 과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투표라는 것이 민족 국가의 시민권 혹은 국적에 기반해 있어야만 한다.”는 관념은 근대 민주주의 하에서 정치적 멤버십의 이러한 이중적 과정—포함과 민족화—에 의해 강화되어왔다. 국제 이주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에서의 사적 필요의 영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물리적 생존과 우리의 편의만을 위해서 왔을 뿐”이라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공적 논의의 공간”에 거주할 정치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공적 논의의 공간”은 ‘탈민족화’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 걸쳐 40여개 국가들이 국제 이주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왔다(부록1 참조). 예를 들어,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의 시민들은 그들이 시민권 혹은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유럽 연합 소속 국가들에서 지역과 유럽연합 의회 수준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전통적인 이민 국가들—미국, 캐나

다, 호주 등—에서도 국제 이주자의 정치적 권리는 중심적인 이주 문제의 하나로 서 간주되어 왔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2009년 캐나다의 토론토에서의 이주자들의 투표권을 요구하는 시위와 논쟁을 들 수 있다(Fenlon, 2009). 미국 역시 캘리포니아와 뉴욕, 워싱턴, 그리고 메사추세츠 등지에서 이주자들의 투표권을 요구하는 캠페인이 전개되어 왔다 (Hayduk 2006). 일본 역시 1989년과 1990년에 걸친 일련의 법적 소송을 시작으로 이주자의 투표권에 대한 정치적, 법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의 지구화(globalization), 대규모의 국제이주, 민족 국가 주권의 약화와 더불어, 이러한 “공적 논의 공간”을 이주자들에게 개방하는 경향은 일종의 전지구적 ‘수렴’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자의 투표권에 대한 현재의 변이(variation)—투표권의 대상, 거주 기간, 투표권의 (지역, 국가, 초국가적) 수준(level) 등—들은 국가마다 상이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 내부에서도 이러한 변이는 갈수록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Earnest, 2006; Shaw 2007: 78-81; Hayduck, 2006: 186-192). 따라서 이주자들의 투표권에 대한 현재의 비교 정치적 논의에서 가장 먼저 제기되어야 할 점은 개별 국가들에서의 그러한 변이들을 확인하고, 그러한 변이들을 이해하기 위한 비교 정치적 관점을 마련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러한 변이들이 국제 이주자의 정치적 통합이나 민족적, 혹은 이주자 정치적 정체성, 그리고 비교 민주 정치에 있어서의 함의가 무엇인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벤하비브(Benh Habib, 2004)가 제안하고 있는 ‘시민권의 방법론적 분할(methodological disaggregation of citizenship)’은 투표권이라는 정치적 권리를 다른 권리들—인권, 시민적 권리, 사회권, 문화권 등—과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에서 이주자들이 획득한, 혹은 그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권리들을 비교의 관점에서 조망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함의를 제시한다. 종래의 총체화된 시민권 개념을 분할하여 이주자들이 어떠한 권리들을 향유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시민권의 방법론적 분할’은 현대 국제 이

1) 현재의 지구화 및 국제 이주의 맥락에서 이러한 수렴 가설에 관해서는 Cornelius, Tsuda, Martin, and Hollifield (2004)를 참조. 이주자 투표권을 이주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면, 이러한 수렴은 주요하게는 (특히, 유럽의 경우) 지역 통합(regional integration)과 관련되어 있다.

주 시대에 이주자들이 직면한 권리 문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벤하비브에 따르면, 현대 국제 이주 시대에서, “우리는 ‘시민권의 분할’에 직면하고 있다. 전 세계에 걸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초대해 준 국가의 집합적 정체성을 공유하지 않은 채, 초빙 노동자(guest workers)나 영주권자로서 특정한 권리와 혜택을 향유하고 있다”(Benhabib, 2008: 45). 이러한 ‘시민권의 방법론적 분할’에서 이주자 투표권은 민주적 여정(democratic itinerary)의 핵심적인 정치적 항목으로 자리 잡아왔다.

국제 이주자들의 투표권에 대한 이슈에는 현재의 변이들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변이 역시 존재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776년에서 1926년에 이르기까지 주로 유럽으로부터의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개별주(state)를 기반으로 해 투표권을 부여했었다(Hayduck, 2006; Keyssar, 2009). 캐나다가 국제 이주자들로부터 투표권을 박탈한 것은 바로 1970년대 중반이었다(Earnest, 2006). 반면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근대 국제 이주 시기(19세기 중반부터 1945년까지)에 조선인 이주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 이주자들은 일본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 1936년을 기준으로 41,829명의 조선인 이주자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고, 1929년에서 1939년까지 187명의 조선인들이 지역 및 중앙 선거에 출마하였으며, 이중 53명이 당선되었다. 이들 당선자들은 특히 조선인 이주 공동체가 속한 지역구에서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제기하고, 조선인과 일본인간의 조화를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중 특히 박춘금은 일본 제국 의회 선거에서 두 차례에 걸쳐 당선되기도 하였다(Chung · Tipton, 1997). 이러한 역사적 변이들은 근대 이주 시기에서의 이주자들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의 성립 및 과정, 종료와 현대의 재생에 관한 역사적 질문을 제기한다.

국제 이주자들의 투표권에 대한 이러한 역사적, 현대적 변이들은 비교를 위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하지만, 이 글은 일본의 제국주의 시대에 대한 사례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국제 이주자들의 투표권에 대한 기존의 사례 연구들은 주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 초점을 맞추어 온 반면에, 일본에 대한 사례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근대 국제 이주 시기 동안, 일본이 동아시아 이주 체계에서 만주, 시베리아, 중앙아시아와 더불어 이주자들의 주요 목적지 중의 하나였다는 점(McKewon, 2004)과 조선인 이주자들의 일부가 투표

권을 가지고 있었고, 선거에서 그것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몇몇 조선인 이주자들이 입후보 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일본의 제국주의 시대에 대한 사례 연구는 국제 이주의 비교 정치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내의 차이를 설명 하는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부록2 참조). 둘째, 일본은 인종적인 인구 구성의 동질성으로 잘 알려져 왔다. 이러한 동질성의 신화는 국제 정치에서 혹은 일본과 서구 국가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일본을 대표해왔다. 반면에, 동질성의 신화 속에서 일본의 이주 정치—특히 제국주의 시대—는 간과되어 왔다. 이 글은 제국주의 시대의 이주 정치의 내적 역동성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이러한 동질성의 신화의 이면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 글에서는 제국주의 시대의 일본 내지에서 이주 정치가 어떻게 구성 되는지, 어떻게 그러한 구성 속에서 특정한 이주 정책이나 정치적 포함 및 배제가 산출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책이나 포함 및 배제의 과정 속에서 조선인 이주자들의 (정치적) 정체성은 어떠한 영향을 미쳤거나 새로운 실천들을 통해 드러나는 가를 검토함으로써, 제국주의 시대의 일본 내지의 이주 정치에 관한 연구들이 지니고 있는 일면성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한편으로는 정치가나 언론인, 학자들의 사상과 논의를 중심으로 일본 제국의 이주 정치가 어떠한 논쟁과 대립 속에서 구성되고 특정한 정책이나 포함 및 배제의 과정이 산출되는 메카니즘에 대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인 이주자들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이 일본 내지에서 처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상황과 일본의 인종주의 및 특정한 이데올로기—민족주의, 공산주의, 아나키즘 등—에 기초한 정치적 실천들에 대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들 속에서, 각각은 그 자체의 정치적 역동성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지만, 다른 측면들을 상대적으로 고정(fix)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 제국 내지의 참정권 문제를 중심으로 정치적 연합(political coalition)의 관점에서 양자 모두를 풀어냄(unfix)으로써 일본 제국 내지에서의 이주의 정치와 조선인 이주자들의 정치적 정체성을 역동적 관계 속에서 조망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조선인 이주자의 투표권은 제국주의 시대 일본에서의 이주 정치의 한 결과로 파악한다. 이주의 정치는 이주자들의 유입뿐만 아니라 이주자들의 포함/배제를 지지하거나 거부하는 서로 다른 연합들(coalitions)로 구성되어 있다. 제

국주의 시대 일본에서의 조선인 이주자들에 대한 투표권의 부여는 이러한 연합들—동화(assimilation), 반-동화(anti-assimilation), 카운터-동화(counter-assimilation)—간에 형성되고 재형성되는 이주의 정치의 결과로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합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서로 다른 연합들이 구성되었는가? 그러한 연합들 간에는 어떠한 균열이 놓여 있었는가? 어떻게 동화 연합이 우세하게 되었는가? 이주자들의 투표권이 제도화된 이후에 이주의 정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일련의 선거 속에서 조선인 이주자들의 정치적 정체성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러한 이주자들의 정치적 정체성이 이주의 정치에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우선 제국주의 시대의 일본에서의 이주의 정치를 검토하고(Ⅱ장), 인종이나 민족, 신민과 같은 사람성(peoplehood)의 개념이 이주의 정치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함의를 논의한 후(Ⅲ장), 투표권 부여의 전후를 경로 추적(process tracing)을 통해 살펴봄으로써(Ⅳ장과 Ⅴ장),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주자 투표권과 관련된 현대 이주 정치의 정치적 맥락과 변이들을 검토하고, 제국주의 시대의 조선인 이주자 참정권 사례가 현대 이주 정치에 시사하는 바를 간략하게 논구할 것이다.

Ⅱ.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이주의 정치: 오그마 에이지의 “이상한 동맹들”

메이지 유신(1868년) 이래로, 일본의 근대 국가 형성 과정은 일본인이 동질적이라는 신화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근대 국가 형성 과정의 한 축이 민족국가의 형성이었다는 점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은 일본인의 동질성을 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종종 동아시아에 진출했거나 하려 했던 서구 열강 국가들과 일본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의 근대 국가 형성은 민족국가의 형성과정이자 동시에 영토적 팽창에 근거한 제국의 형성과정이기도 하였다. 메이지 유신 바로 다음해인 1869년 제국 칙령에 의해 편입된 홋카이도를 시작으로 류큐 왕국(오키나와), 포모사(대만), 조선 및 중국(만주국)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근대 국가 형성은 제국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의 근대 국가 형성은 민족국가와 제국이 동시에 형성되는 이중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인의 동질성과 관련하여 이러한 이중적 과정은 한편으로는 일본인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국의 팽창에 의해 편입된 새로운 이질적 사람들을 동질화하거나 배제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질적인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룹에는 일본 내에서 전통적으로 배제되어 왔던 부락구민 뿐만 아니라, 홋카이도의 아이누 그룹, 오키나와인, 조선인 이주자 그룹, 그리고 식민지에서의 대만인, 조선인, 중국인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小熊英二 1998).

민족, 동화, 그리고 과학적 인종주의는 일본인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이질적인 사람들을 동질화하거나 배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조선인 이주자들은 일본 민족의 일원으로 간주되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본인과 조선인 이주자들 간의 혈통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조선인 이주자들이 일본의 전통적인 영토적 경계 밖으로부터 이주해왔기 때문이었다. 기실, 제국주의 시대의 내적인 영토적 구분선이었던 일본 내지(일본 본토)와 외지(식민지)의 구분은 이러한 민족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반면에, 일본인과 조선인의 혈통적 동질성을 강조했던 동화주의자들은 조선인 이주자들이 제국의 주체, 즉 신민이 될 수 있고,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달리 과학적 인종주의자들은 조선인과 일본인의 혈통적 차이를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차이를 일본인의 인종적 우월성과 조선인의 인종적 열등함으로 환원해 바라보았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들은 조선인 이주자들을 일본 내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주자들을 제국의 변방으로 이주시키자고 주장하거나, 이주자 공동체를 일본인 공동체와 분리하는 정책을 추구하였다.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에서의 이주의 정치는 이러한 민족, 동화, 그리고 과학적 인종주의가 국가를 통해(정책적으로) 산출되는 정치적 역동성 속에서 전개되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국제 이주의 정치는 이주 국가로의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이주자들의 포함 혹은 배제와 관련된 서로 다른 연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연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홀리필드(Hollifield, 2000: 164)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들을 제시한다. “(1) 시민권의 형식적·법적 정의와 밀접하게 관련된

이념적, 문화적 요소들 (2)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요소들의 비율 및 강도와 관련된 경제적 이해 (3) 자유주의적-공화주의적 헌법과 관련된 권리들”이 바로 그러한 요소들이다. 이러한 요소들 가운데, “이념적, 문화적 요소들”이 제국 시대의 일본에서의 이주의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또한 메이지 헌법(1889년)에서 일본인의 법적 정의로 규정된 ‘신민’이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정의상 ‘신민’이라는 개념은 그것이 헌법상으로 규정되었던 시기에 천황의 영토 내에서 거주하고 있던 이질적인 사람들에 관하여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법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아이누, 오키나와, 부락구민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은 실질적으로 지속되었다. 제국의 신민과 다양한 이질적인 사람들의 그룹 간의 문화적, 정치적 갭은 일본의 근대 국가 형성과 제국적 팽창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캐롤 그룩(Carol Gluck)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메이지 유신(1868년) 이래로, “일본의 지도자들은 제도만을 가지고는 민족을 보장하는데 불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의 정체가 중앙집중화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 계급들이 재구성되고, 국제적인 인정을 위해 투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사람들 또한 “영향을 받아야만”하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역시 하나가 되어야만 했다”(Gluck 1985: 3). 그러나 일본의 지도자들이 “하나”를 만드는데 동일한 이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차이들은 이질적인 사람들의 그룹을 포함하거나 배제하는 소수 그룹과 이주 그룹에 대한 정책을 통해서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적 이념에 기초한 서로 다른 정책들은 국제 이주의 정치라는 틀에서 일본의 민족주의자, 동화론자, 과학적 인종주의자들이 일본이 처한 영토적, 경제적 조건들과 조선인 이주자들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상호간에 연합을 구성하거나, 주도권을 확보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금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화론자들은 이질적인 사람들의 그룹을 동화하려 하고 다양한 동화 정책을 만들어낸다. 여기에는, 교육, 언어, 결혼(inter-marriage),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함께 살기(mixed residency), 창씨개명, 천황에 대한 숭배 의례가 포함되어 있었다. 반면에 과학적 인종주의자들의 경우, 조선인 이주자 공동체를 일본 사회로부터 격리하거나, 그들을 조선이나 여타의 식민지 변경에 투입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

다. 민족주의자들은 일본의 전통적인 영토를 고정시킴으로서 일본인의 동질성을 유지하려 했고, 따라서 조선인의 일본 내지로의 이주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Oguma, 2002). 결과적으로, 일본의 이주 정치에서 “하나의 이상한 동맹이 출현했다. 이러한 동맹의 한 축에는 조선인들이 ‘일본인’으로 취급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면서 차별에 맞서 싸우기를 원했던 사람들과 조선의 영토를 유지하고자 했던 제국주의자들이 있었다. 두 그룹은 ‘일본인’의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었다. 동시에, 조선인을 차별했던 우생론자(eugenicists)와 일본의 영토적 팽창에 반대하여 문화적 분리를 주장했던 분리주의자들은 ‘일본인’의 개념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었다”(Oguma, 2002 xxiv).²⁾

이러한 오그마 에이지의 주장에 따르면, 일본의 제국주의 시대의 이주 정치는 현상적으로 두 개의 경쟁적인 “이상한 동맹”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친이주 연합(제국주의자 + 동화론자)과 반이주 연합(우생론자 + 문화적 분리주의자)가 바로 그것들이다. 친이주 연합은 “‘일본인’의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었고”, 반대로 반이주 연합은 “‘일본인’의 개념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제국주의 시대의 일본의 이주의 정치는 결국 ‘일본인’의 개념을 확장하느냐, 혹은 제한하느냐의 논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일본인’ 개념의 탄력성이 친이주 연합과 반이주 연합을 구획하는 핵심 균열이었다는 것이다.³⁾

2) 이 구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생론자’의 정치적 성격에 관한 점이다. 특히 제국의 후생성과 군부에 포진하고 있던 많은 ‘우생론자’들 역시 일본의 제국적 팽창을 지지했다는 점에서 ‘제국주의자’들이었다. 오그마의 ‘제국주의자’와 ‘우생론자’의 차이는 제국적 팽창 과정에서, 타인종이나 민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있었다. 전자가 ‘선택적 포함’을 선호한 반면에, 후자는 ‘배제’에 정향되어 있었다.

3) 오그마 에이지는 일본 제국의 팽창에 따라 새롭게 편입된 식민지의 신민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관한 일본 제국 내부의 논쟁을 고찰하면서, 법적 평등성과 문화적 차이의 문제에 따라 네 가지의 정치적 세력을 구획한다. 동화 세력은 새로운 신민의 법적 평등성과 문화적 동질성을 추구한 반면에, 다원주의자들은 법적 평등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분리주의자들은 법적 차별과 문화적 다양성을, 그리고 계층화론자들은 법적 차별과 문화적 동질성을 추구했다는 것이다(小熊英二, 1998: 649). 그러나 이러한 ‘정치’는 ‘이주 정치’라기 보다는 식민지 통치를 둘러싼 제국의 ‘정치’에 가깝다. 따라서 이 논쟁과 그것의 실제 결과는 일본 내지의 조선인 이주자들에 대한 정책과 일본인간의 관계 보다는 식민지 정책과 식민지에서의 일본인과 피식민인의 관계 속에서 보

오그마 에이지는 이러한 “동맹들”이 왜 이상한 것인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아마도 그는 “조선인들이 ‘일본인’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차별에 맞서 싸우기를 원했던 사람들”과 식민지에서 조선인들을 차별했던 제국주의자들, 그리고 제국적 팽창에 부정적이었던 문화적 분리주의자들과 제국의 팽창을 주도했던 과학적 인종주의들이 조선인의 내지 이주 문제에 관하여 “동맹”을 형성했다는 점을 이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만일 이러한 동맹들이 일본의 식민지에서 형성되고 장기간 유지되었다면, 이는 진정으로 이상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다음 장에서 살펴볼 것처럼, 일본 제국의 내지에서 이러한 동맹의 형성은 오그마 에이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좀더 중요한 문제는 조선인 이주자들의 포함과 배제가 일본인의 개념을 확장하거나 제한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오그마 에이지의 주장이다. 기실 이러한 주장은 서구와의 관계 속에서 일본인이 어떻게 스스로를 표명했는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의 제국주의 시대에 동아시아 인종에 대한 일본인의 인종 개념은 스테판 타나카(Stefan Tanaka)가 일본의 오리엔트(Japan's Orient)라고 명명한 인종적 서열관계의 형성과 공고화 과정이기도 하였다(Tanaka 1995). 이런 의미에서 좀 더 중요한 점은 일본의 개념을 확장하거나 제한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일본인으로 간주되었던 조선인 이주자들이 포함되거나 배제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역동성을 규명하는 것일 것이다. 즉, 포함과 배제의 구체적인 과정 속에서 일본인의 개념이 탄력성이 있는 것인지, 혹은 친이주연합과 반이주연합은 어떻게 포함과 배제를 주장했는지를 고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그마 에이지의 주장은 제국주의 시대 일본에서의 이주의 정치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⁴⁾ 제국 시대 일본 내지에서의 조선인 이주자들의 문제는 종종 단일한 일본 국가나 사

다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4) 반면에, 미국에서의 이주 정치의 “이상한 동맹”에 관해서는 Zolberg (1999)를 참조. 졸버그는 미국에서의 이주정책의 산출과 그 역사를 한편으로는 자유주의자와 자본(친이주), 다른 한편으로는 보수주의자와 노동(제한적 이주)이라는 “이상한 불륜들”(strange bedfellows)간의 대립적 관계 속에서 고찰한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한 미국 이주사에 관한 포괄적인 분석으로는 Zolberg (2006)를 참조.

회, 민족주의나 인종주의, 혹은 조선인 이주자들의 민족주의 및 계급이나 이들 둘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오그마 에이지의 주장은 조선인 이주자에 대한 일본 내지에서의 내적 차이에 주목하고, 그것이 조선인 이주자 문제에 관하여 어떻게 결합하고 서로 다른 정치적 연합을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러한 실마리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제국주의자와 동화론자들, 그리고 우생론자와 문화적 분리주의자들(민족주의)이 어떻게 시간적, 공간적으로 투영된 인종 및 민족 개념을 통하여 서로 다른 대립적인 이주 정치적 연합을 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주국에서의 이주의 정치는 이주자들의 포함과 배제에 핵심적이기는 하지만, 이주 정치를 구성하는 연합과 대립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어떻게 특정한 연합이 다른 연합에 대하여 이주 정책의 산출이나 포함과 배제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였는지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한 이주국의 당대의 역사적 맥락과 떨어져 검토할 수 없다. 또한 이주의 정치는 이주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자들이 그러한 이주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에 참여하였는가에라는 질문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조선인 이주자들의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다음 장에서는 우선 제국주의 시대의 일본의 민족과 인종의 개념이 어떻게 관계적으로 ‘신민’과 ‘동화’라는 개념과 맞물려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제국주의 일본에서의 이주의 정치의 균열 및 연합의 성격, 즉 오그마 에이지가 ‘이상한 동맹’이라고 명명한 이주 정치에서의 이러한 연합들의 이론적 함의를 조선인 이주자들에 대한 참정권 문제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Ⅲ. 제국 시대의 일본에서의 인종과 민족: 포함과 배제의 역동성

이러한 친이주 연합과 반이주 연합의 ‘이상한 동맹’의 형성과 그 정치적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인이 제국의 팽창과정에서 (서구인이 아닌)이질

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인식은 일본 내지에서 일본인과 조선인 이주자들의 인종 및 민족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모리스-스즈키(Morris-Suzuki)의 시간-공간(time-space) 모델은 이러한 인식을 이해하고, 제국주의 시대 일본에서의 인종과 민족 간의 역동적 관계와 이주 정치에서의 서로 다른 연합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분석적 틀을 제공한다. 초기 메이지 시대 동안에 일본 변방의 이질적인 사람들로서 간주된 아이누와 오키나와인에 대한 모리스-스즈키의 분석은 어떻게 제국적 근대론자들이 이러한 사람들과 변방의 공간을 인식했는가를 보여준다. 공간과 관련하여, 제국적 근대론자들은 제국의 변방을 영토적으로 낮설고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 시간과 관련하여 그들은 그들 자신과 이러한 사람들 간에 현격한 격차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즉, 일본인과 다르게 아이누와 오키나와인들은 근대화되지 않은 과거의 시간에 머물러 있다고 이해했다는 것이다. 시간적으로 일본인들이 앞서 있고, 발전되어 있으며, 근대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인식되었던 반면에, 아이누와 오키나와인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발전되어 있지 않으며, 원시적이고, 과거에 얽매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Morris-Suzuki, 2001: 81).

이러한 시공간의 이중적 인식에서 시간은 제국주의적 근대론자들의 (서구인이 아닌)이질적인 사람들에 대한 인종적 관점을 보여주는 반면에, 공간은 그들의 이질적인 공간에 대한 문화, 민족적 관점을 드러낸다. 이러한 이중적 인식 속에서 동화의 관념은 한편으로는 시간적 동질화를, 다른 한편으로는 공간적 동질화를 의미한다. 전자의 경우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근대화 될 것을 요구하며, 후자의 경우 일본인과 동일한 문화의 체현을 요구한다. 반면에 배제의 관념은 그러한 시간과 공간적 차이의 동질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과학적 인종주의는 특히 시간적 차이의 동질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조선인 이주자들은 일본인처럼 앞설 수 없으며, 발전할 수 없고, 근대적일 수 없으며, 미래 지향적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주된 이유는 조선인이 일본 인종과는 과학적으로 근본상 다른 열등한 인종이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공간적 차이의 경우, 일본 내지는 이미 문화, 민족적으로 동일한 공간으로 구성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조선인 이주자들의 (공간적)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은 문화, 민족적 배제론자들에게는

공간적 동질화의 실패와 불가능성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는 조선인 공동체에 대한 배제로 귀결되었다. 이상의 내용은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1〉 시간/공간과 동화/배제의 유형론

	동화	배제
시간 (인종적 차이)	시간적 동질화 (근대화)	시간적 비동질성 (과학적 인종주의)
공간 (문화, 민족적 차이)	공간적 동질화 (문화적 동화)	공간적 비동질성 (조선 이주자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

다양한 일본의 동화론들은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동질화를 위한 일종의 인류학적, 고고학적, 사회학적 기초 프레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몇몇 동화론들은 일본인과 조선인의 기원이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일본인과 조선인이 인종적으로 기원이 동일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은 떨어져 살게 되었으며, 서로 다른 문명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일본인은 그러한 분리 이후 거대한 진보를 이룩하였지만, 조선인의 발전은 정체되어왔다. 동화의 목적은 문명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천황의 통치 아래에서 두 그룹간의 관계를 융합함으로써 과거의 동일한 기원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기원보다는 과거의 이주에 초점을 맞춘 동화론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동화론에 따르면 제국주의 시대에 조선반도로부터 일본으로의 이주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었다. 과거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반도로부터 이주해 왔으며 일본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 성공적으로 동화되어왔다. 예를 들어 메이지 시대에 재정상이자 사회 비평가였던 다구치 우키치는 메이지 시대의 주도적인 개혁가들이 중국과 조선반도에서 이주한 사람들의 자손들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시가, 미야케, 타미, 하야시, 이노우에와 같은 성씨가 이들이 중국과 조선반도로부터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민사적 관점에 근거하여, 그는 동화가 이주자들의 일본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함으로써 일본의 경제와 문화, 그리고 제국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Oguma, 2002: 24-28).⁵⁾

반면에, 인종적 평등을 위한 사회적 동화론은 일본에서의 인종적 차별을 태생이나 인종상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주류 사회 속으로 동화하려는 이질적인 사람들의 노력의 실패 속에서 발견하였다. 역사가인 키타 사다 키치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월한 민족이 다른 열등한 민족과 함께 살게 되면 열등한 민족의 지식인들은 빠르게 우월한 민족에 동화되지만, 열등한 민족 중에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Oguma, 2002: 99). 예를 들어 그는 격리된 채 살아가는 아이누들을 동화의 실패, 즉 일본인과 섞여서 사는 데 실패한 전형으로 묘사한다. 또한 부락구민이 이방인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그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역사적으로 일본 사회와는 격리된 채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조선인 이주자들은 일본 사회와 섞여서 살아야만 하고, 따라서 동화되어야만 하는데, 그렇게 해야만 인종적 차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에게도 동화는 이질적인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한 하나의 주요한 옵션이었다. 동화의 필요성은 제국의 초기 형성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서구 제국주의 세력과 중국에 대하여 새롭게 일본 제국에 포함된 영토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질적인 사람들에 대한 동화는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예를 들어 러시아에 대항하여 쿠릴 열도를 포함한 일본의 북쪽 도서 영토의 획득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아이누의 일본인으로서의 동화는 제국주의자들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Howell, 1994). 또한 새롭게 획득한 식민지에서의 정치적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동화정책이 동원되었다. 배타적으로 강권에 의존하기 보다는, 동화를 통하여 제국은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교육적, 심리적 전략들을 추구하면서 식민지에서의 지배의 안전과 정치적 질서를 도모하였다 (Peattie, 1984: 96-104; Ching, 2001; Christy, 1993).⁶⁾ 즉, 동화는 동아시아에서 일본

5)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1년 12월 23일 일본 천황의 생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아키히토 일본 천황은 일본의 황실 혈통에 한국인 조상이 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781년에서 806년까지 일본을 통치했던 감무 천황의 어머니는 501년부터 523년까지 백제를 통치했던 무영왕의 혈통이었습니다”(Lee, 2006: 109).

6) 식민지 지배를 위해 (군대와 경찰을 중심으로 한) 강권에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비강권적 수단에 의존할 것인가는 20세기 초 이토 히로부미와 야마가타 아리토모간의 일본 국내의 입헌정치에 관한 논쟁과도 관련이 있다. 이 논쟁에서 일본 군부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공헌했던 야마가타는 헌

제국의 해계모니와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렇다면, 시간적, 공간적 배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되었는가? (일본의) 인종주의에 대한 몇몇 이론가들은 그 해답을 민족과 인종의 ‘중첩 가설’(overlapping thesis)로 설명해왔다. 이러한 가설에 따르면 일본에서의 인종과 민족의 개념은 민족이라는 개념 하에 중첩되거나 수렴되었다. 이러한 ‘중첩 가설’은 종종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민족은 사람(people), 인종(race), 민족(nation), 또는 에프닉 그룹(ethnic group)으로 번역될 수 있다. 인종을 위해서는 인종(jinshu for race)이라는 용어가 있지만 영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종과 민족의 의미는 종종 중첩되고 있으며, 이는 메이지 시대에서 2차 세계 대전까지의 시기에 특히 그러하였다”(Yonezawa, 2005: 131).

로버트 마일즈(Robert Miles)는 이러한 ‘중첩 가설’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자기-동질화와 차별화를 목적으로 ‘인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민족’의 요소를 정의하도록 기능할 수 있다. 즉, ‘인종’과 ‘민족’의 개념은 각각이 다른 것의 요소를 정의하도록 기능하면서 중첩적 범주들이 될 수 있다”(Miles, 1993: 59). 제국주의 시대의 조선인 이주자에 대한 인종주의 문제에 정통한 마이클 웨이너(Michael Weiner)는 일본의 인종 및 민족 개념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마일즈와 동일한 견해를 피력한다. “민족이 그 민족을 구성하고 다른 사람들과 그 민족을 구분하는 일련의 독자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곳에서는, 동일한 특징들이 ‘인종적’ 경계의 표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인종’과 민족이 독립적인 범주로 존재하기 보다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동일해 질 수 있다”(Weiner, 1997: 96).

그렇다면 어떠한 요소들 혹은 어떠한 일본의 독자적인 특징들이 일본인과 조선인 이주자들 간의 인종적, 민족적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가? 일본의 인종주의에

법을 징병과 유사한 사회적 동원을 위한 토대로 파악한 반면, 이토 히로부미는 사회적 동원을 위한 군대와 경찰의 사용이 사회로부터의 저항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반대하면서, 헌법이 억압적이기 보다는 기능적이고 적응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정관계의 보수파들을 야마가타 파벌로 성공적으로 조직함으로써 이토 히로부미를 정치적으로 패퇴시키고 1900년대의 일본 정치 체계를 장악하였다(Najita, 1974: 104-105). 그러나 식민지에 대한 동화(정책)의 정치적 관념은 일본 내의 국내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이토 히로부미의 입장과 유사했다.

대한 연구들은 일본의 문화를 인종적 경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 점에서, 일본의 인종주의는 피부색이 아니라 일본과는 다른 ‘언어, 종교, 그룹의 습관, 규범, 관습, 라이프 스타일, 음식, 음악, 문학, 그리고 예술’ (Goldberg, 1994: 70)과 같은 문화적 요소들에 기반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인과 조선인 이주자들 간의 이러한 문화적 요소들 간의 차이는 ‘중첩 가설’이 강조하는 배제의 메커니즘 속에서 한편으로는 과학적 인종주의에 의한 조선인 이주자들의 시간적 배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인 이주자 공동체에 대한 공간적 배제의 중첩, 혹은 수렴으로 현상화 되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조선인 이주자들의 문화를 조선인이라는 인종의 결과로, 즉 종속변수로 이해한 반면에, 후자의 경우, 조선인 이주자들의 문화를 일본내지에서의 조선인 이주자 공동체의 성장을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독립변수로 이해하였다. 전자에게 동화는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된 반면에, 후자에게 일본 내지에서의 조선인 이주자 공동체의 성장은 동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종과 민족의 배제 연합은 동화에 대한 지배적인 ‘반-동화’ 연합을 구성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시간-공간 모델의 관점에서, 오그마 에이지가 제기한 제국주의자와 동화론자의 “이상한 동맹”은 동화의 이념과 정치적 질서 및 안전을 중시하는 제국주의자의 행정 권력이 결합된 친이주 동화 연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우생론자와 문화적 분리주의자의 “이상한 동맹”은 동화의 이념에 시간적(인종적), 공간적(민족적)으로 반대한, 일본의 배타적 인종, 민족 개념이 결합된 반이주 배제 연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후생성과 군부에 주로 포진하고 있었던 우생론자들은 과학적 인종주의를 기치로 친이주 연합 중 특히 동화론자들에게 적대적이었던 반면에, 문화적 분리주의자들은 일본의 제국적인 영토적 팽창에 부정적이었던 점에서 제국주의자들에게 적대적이었다. 우생론자들은 일본인과 조선인간의 인종적 차이를 고정시키려고 했던 반면에, 문화적 분리주의자들은 고유한 일본 영토(내지)로의 조선인 이주자들의 이주를 차단함으로써 일본(내지)과 식민지간의 공간적 차이를 고정시키려 시도했다. 이런 의미에서 반이주 연합은 일본인의 인종과 민족 개념, 즉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의 시간과 공간을 배타적으로 고정시키려 했던 정치 연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친이주 연합은 오그마 에이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본인의 개념을 확장하는데 기반해 있었다기 보다

는 조선인 이주자들의 문화적, 정치적 정체성을 떼어내어 일본인의 인종 및 민족 개념으로 이전시키는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즉, 양 연합 모두 일본인의 인종과 민족 개념을 고정시켰지만, 친이주 연합의 경우 조선인 이주자들의 문화적, 정치적 정체성을 일본인의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반이주 연합과 대립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양자의 핵심적인 균열은 조선인 이주자들의 정치적 정체성에 달려 있었다. ‘신민’이라는 개념은 조선인 이주자들의 문화적, 정치적 정체성을 떼어내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IV. 일본 내지의 보편 선거권과 조선인 이주자들에 대한 참정권 부여

그렇다면 1925년 일본의 보통선거권의 도입과 더불어 인정된 조선인 이주자들에 대한 선거권의 부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위에서 살펴보았던 일본의 이주 정치에서 이는 동화론자와 제국주의자로 구성된 친이주 연합이 반이주 연합에 대해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친이주 연합은 어떻게 주도권을 잡게 되었는가?

일본에서의 1925년 보통 선거권의 도입은 타이쇼 시대(1912-1926)의 정치적 자유화의 정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통 선거권 도입의 핵심적인 개혁 사안은 투표권의 제한을 완화시키는 것이었다. 보통 선거권의 도입 이전에 투표권은 특정한 세금 이상을 내는 신민에 국한되어 있었다. 보통 선거권은 이러한 제한을 철폐하고 25세 이상의 성인 남성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과 25세 이하의 젊은 층은 여전히 이러한 정치적 권리로부터 배제되었다. 또한 복지 혜택을 받는 25세 이상의 성인 남성과 한 거주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 역시 투표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제한들은 여성뿐만 아니라, 특히 재산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과 광산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시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노동자 층이 보통선거권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표권으로부터 광범위하게 배제되고 있었다.

조선인 이주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1925년 이전에, 조선인 이주자들의

선거권은 특정한 직접세 이상을 내는 신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일본 내지의 원리를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小熊英二, 1998: 369). 예를 들어 오사카에서는 1921년에 6,000여 명의 조선 이주자들 중에 2명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인삼 사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후에 유희와 동화를 위해 제국에 의해 조직적으로 허용된 친일 그룹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었다.⁷⁾ 그러나 조선인 이주자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투표권에 해당되는 이주자는 극히 적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1925년 이전에 일본내지에서 조선인 이주자들의 투표권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0년 이래로 일본 내지로의 조선인 이주자의 수는 일본의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었고, 조선인 이주자들의 공동체의 성립과 더불어 문화적 차이에 의한 ‘가시성’은 보다 뚜렷해지게 되었다(Weiner, 1989).

조선인들의 일본 내지로의 이주는 보통선거권의 도입 이전부터 조선인 이주자들의 선거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일본 내지에서 조선인 이주자들의 지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있었다. 이 쟁점은 특히 메이지 헌법이 규정한 신민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한편으로는 메이지 헌법이 정한 신민이라는 개념이 당대의 영토적 경계에 기초하여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메이지 헌법 당시에 식민화되지 않았던 조선인과 대만인 이주자에게 참정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신민의 영토적 경계를 일본 내지에 국한한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조선인과 대만인은 그들의 일본 내지에서의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참정권을 가지지 못할 것이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더 나아가 몇몇 정치인들은 조선인의 일본내지로의 인구이동과 관련하여 호구제도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일본인과 조선인간의 결혼 및 일본인의 조선인 입양 등으로 조선인이 일본 내지의 호구로 편입되는 경우 조선인 이주자들 역시 신민으로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동화론자들은 일본인과 조선인간의 결혼 및 일본인의 조선인 입양을 장려한 반면에, 이러한 문

7) 이 두 명중 한 명은 친일단체인 상애회 오사카지부장이자, 오사카부 내선협화회 평의원이었던 이기홍이고, 다른 한 명은 이후 친일단체 조선인협회의 부회장을 역임하게 될 박홍규였다(마츠다 도시히코, 2004: 26).

제제기는 결혼 및 입양에 의해 일본 내지의 호구로 조선인이 편입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신민과 동일하게 참정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마츠다 도시히코, 2004: 19-20).

내무성 역시 1918년 지방 정부에 하달한 선거법과 관련된 유권해석에서 조선인이나 대만인 이주자들이 일본 내지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다 해도 참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이러한 유권해석에 따르면, “선거법에서 제국신민은 내지인 신민을 지칭한다. 대만인, 조선인은 그 주소지에서는 자치능력을 인정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명시한다(마츠다 도시히코, 2004: 22에서 재인용). 이러한 “자치 능력”의 부재는 물론 조선과 대만에 대한 일본의 식민화 결과였지만, 이는 일본 내지에서 이주자들에 대해 참정권을 거부하는 논리로 소진되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조선인과 대만인 이주자들은 “자치 능력”이 부재한 정치적으로 후진적이며 저 발전되어 있는 일본 외지로부터 온 “새로운 신민”이었다.

그러나 1919년 3월1일 조선의 독립운동은 자치(독립)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투쟁할 수 있는 조선인의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삼일 운동은 일본의 식민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중대한 시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통상적인 시기 구분에서, 이는 조선 식민지에 대한 ‘억압 정책’에서 ‘문화 정책’(동화 정책)으로의 정책적 전환을 가져온 결정적인 변수로 취급되어왔다. 이러한 정책적 전환의 한 결과는 제국에 의해서 용인되고 심지어는 장려된 조선인에 의한 자발적 결사체의 성장을 들 수 있다. 제국에 대한 공헌과 신민으로서의 의무를 강조했던 이러한 의사 국가 조직적 친일 단체들의 성장은 1925년 일본 내지의 보통 선거권의 확립과 조선인 이주자들이 참정권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선인 이주자에 대한 참정권 문제는 1920년 제42차 제국의회에서 뚜렷하게 변화했다. 이 회기에서 조선총독부 정무국 관료 출신인 미즈노 렌타로는 조선인 이주자들이 일본 내지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의하였다. 이러한 질의에 대하여 당시 내무상이었던 와카츠키 레이지로는 조선인과 대만인 이주자들이 이미 일본 내지에서 모든 정치적 관계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미즈노 렌타로의 견해를 논박하였다.

또한 그는 수상이 된 이후인 1921년 제51차 제국의회에서 조선인 이주자들이 일본 내지의 다양한 상황들과 접촉함으로써 일본 사회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마츠다 도시히코, 2004: 34-5).

국민협회를 필두로 한 친일 단체들은 신민으로의 동화의 정치적 과정으로서 뿐만 아니라 삼일 운동에서 드러난 민족주의를 유화시키는 긴급한 정치적 수단으로서 참정권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마츠다 도시히코, 2004: 31-33). 그들은 또한 일본 제국의 우산 속에서 조선의 자치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요구들은 사실상 제한된 참정권을 통해 확립된 조선의 자치 속에서 일본 제국의 지배를 용인하면서 친일 단체들이 식민지 권력을 확보하고자 한 정치적 전략의 일환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친일 단체에 의해 제기된 신민으로서의 참정권에 대한 요구와 이러한 방식의 자치의 요구는 삼일 운동이 보여주었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요구 및 민족적 정체성과는 지극히 상충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선인의 참정권 주장은 제국주의자와 동화론자, 그리고 친일단체들 간의 연합을 정치적으로 매개하고 구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정치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형식적인 권리(참정권)는 이러한 연합의 틀 속에서 신민과 동화라는 적극적인 담론들과 결합되었다. 반면에 일본 내지에서의 반이주 연합(과학적 인종주의+문화적 분리에 기초한 민족주의)과 마찬가지로 삼일 운동에 기반 한 독립과 민족 정체성의 요구는 이러한 권리 주장에 반대하였다. 신민 및 동화와 관련하여 전자를 일본 제국 하에서의 지배적인 반-동화(dominant anti-assimilation)로 정의할 수 있다면, 후자는 식민지하에서 형성된 저항적인 반-동화(resistant anti-assimilation)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친일 단체의 성장은 또한 1919년 이후의 일본의 경찰 개념의 근본적인 변화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경찰의 민중화와 민중의 경찰화’로 알려진 새로운 경찰 개념 속에서 상애회와 같은 친일 단체는 일종의 예방경찰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전의 경찰 개념이 직접적인 강권의 사용을 통한 억압적인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새롭게 등장한 예방경찰의 개념은 자발적인 청소년 조직과 복지 단체 등의 조직을 장려함으로써, 이들의 ‘긍정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범죄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제국의 내무성과 미쓰비시나 미쓰이와 같은 일본 기업, 그리고 사회 동화론자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조선인 이주자들의 복지와 일본인과의 유화 및 동화를 목적으로

일본내지에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했던 상애회나 내선협화회(內線協和會)와 같은 단체들은 일본내지에서 조선인 이주자들을 조직하고, 노동 시장에서 조선인 이주 노동자들을 중간착취하며, 조선인 이주자들의 저항적인 반-동화 및 조선인 이주 노동조합들과 투쟁하면서 예방 경찰 개념을 조선인 이주자 공동체에서 구현하는 데 일조하였다. 내무성 및 조선총독부 관료이자 예방 경찰 개념을 입안했던 마루야마 츠루키치는 이러한 관점에서 조선인 이주자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화합’의 수단으로서 제국 의회에 조선인이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awashima, 2009: 139). 보통 선거권이 확립된 후에, 일본의 친일 단체들이 선거기간 동안 조선인 이주자들을 조직하고, 나아가 제국 의회에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제국의 ‘안전’과 친일단체간의 연합을 통해서이기도 하였다.

요약하면, 일본 내지에서 조선인 이주자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과정은 제국 내의 제국주의자, 동화론자, 그리고 조선인 친일 단체들이 과학적 인종주의와 일본의 문화적 민족주의간의 반이주 연합에 대하여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삼일 운동은 이러한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삼일 운동은 신민과 동화에 기반 한 지배연합이 그들의 ‘문화 정책’(동화 정책)을 정당화하는데 동원되었다. 특히 신민과 동화에 대한 친일 단체들의 요구는 이러한 지배연합을 확대하고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들은 신민이 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조선인에 대하여 참정권을 부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내지에서의 조선인 이주자에 대한 참정권 부여는 제국주의자와 동화론자 그리고 조선인 친일 단체로 구성된 친이주 연합(혹은 동화 연합)의, 일본의 민족 및 과학적 인종주의로 구성된 지배적인 반이주 연합(혹은 반-동화 연합)과 조선의 민족(주의)으로 구성된 저항적인 반-동화에 대한 정치적 승리로 이해할 수 있다.

V. 보통선거권의 도입과 참정권 이후: 동화와 카운터-동화(Counter-assimilation)

1925년 일본 내지에서 보통 선거권이 도입됨에 따라 다수의 조선인 이주자들

역시 신민의 일원으로서 참정권을 부여받게 되었다. 조선인 이주자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앞서 언급한 일본 내지에서의 이주 정치의 틀, 즉 동화연합과 반-동화 연합이라는 대립과 보편 선거권이라는 정치적 자유화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에서의 보편 선거권의 도입은 민주화라기보다는 위로부터의 자유화에 가까웠는데, 보편 선거권의 도입 이후에도 여성은 여전히 참정권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었고, 25세 이하의 젊은 층과 사회 최하층 무산자 그룹, 그리고 1년 이상 특정 지역에 거주하기 힘든 일본 내지의 이주 노동자들도 여전히 배제되어 있었다. 대다수의 조선인 이주자들 역시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참정권으로부터 배제되었는데, 1930년 법무성의 (성별, 연령별로 구분된) 조선인 이주자 통계와 1930년 선거에서의 조선인 유권자 수로 파악하면, 전체 이주자 중 연령상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147,557명의 조선인 이주자(24세 이상 남성) 중, 24,244명의 유권자가 있었고, 이는 전체 조선인 이주자의 5.7%, 25세 이상 남성의 16.4%에 해당하였다.

〈표 2〉 1930년 조선인 이주자수와 유권자 수⁸⁾

이주자 수	남성	여성	24세 이상의 남성	유권자 수	유권자의 비율 (전체/24세 이상)
419,009	297,501	121,508	147,557	24,244	5.7% / 16.4%

자료: Lee and De Vos (1981: 39)에서 제시된 일본 법무성 1955년 통계와 마즈다 도시히코(2004, 36)가 제시한 재일조선인 유권자수 (1928-37년) 참조.

- 8) 이러한 데이터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어려움은 전체 조선인 이주자의 수가 불확실하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1945년 일본 내무성의 보고서는 1930년 조선인 이주자 총 수를 298,091명으로 제시한다. 마즈다 도시히코 역시 유권자 수와 유권자의 비율을 산출할 때, 일본 내무성 통계를 따르고 있다. 반면에 법무성 통계는 내무성 통계와는 달리, 단순 이주자 총 수뿐만 아니라, 성별, 나이별 이주자의 구성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성의 통계는 보통선거권의 연령제한(25세 이상)에 따른 유권자의 수와 실제 유권자의 비율을 산출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표 2>의 작성을 위해 인용한 법무성의 통계는 1920년부터 10년 단위로 통계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선거권 하에서 중의원 총선거가 있는 1928년, 1930년, 1932년, 1936년, 1937년, 1942년 중, 오직 1930년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인 유권자 수와 비율(전체/25세 이상)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1928년, 1932년, 1936년, 1937년과 1942년에 대한 법무성 통계와 유사한 방식의 통계뿐만 아니라, 조선인 이주자 총수에 대한 좀 더 정확한 통계가 필수적이다.

마츠다 도시히코가 제시한 중의원 선거 때의 재일조선인 유권자수에 따르면 조선인 유권자의 수는 1928년 제16회 총선거에서 11,983명을 시작으로, 1930년(제17회 총선거)에는 24,244명, 1932년(제18회 총선거)에는 35,888명, 1936년(제19회 총선거)에는 41,829명, 그리고 1937년(제20회 총선거)에는 25,812명으로 변화해왔다. 조선인 이주자의 수가 1945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해왔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1937년의 제20회 총선거를 제외하면 조선인 유권자의 수 역시 증가해왔다고 볼 수 있다.⁹⁾ 그러나 조선인 이주자의 증가율을 감안하면, 1930년의 조선인 이주자 및 유권자에 대한 비율은 강제이주의 시기인 1940년대를 제외하면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역으로 이러한 통계는 조선인 이주자들이 처한 사회적 지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930년의 경우,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147,557명의 조선인 남성 이주자들 가운데, 24,244명만이 실제 참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123,313명의 조선인 남성 이주자들이 보통선거권에 포함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선거권의 요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이들이 1년 이상의 일본 내지의 거주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반영한다. 여기에는 이들이 1년 이내의 새로운 이주자들이거나, 거주지를 자주 이전해야 하는 이동 노동자(mobile workers), 거주지가 불분명한 일용직 노동자(day laborers), 일본에서 거주지를 구하지 못한 이주자들을 포함할 것이다. 특히 거주(housing)의 문제가 사회적 인종주의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는 이주자의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인종주의와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주자 그룹의 정치적 활동과 관련하여, 조선인 이주자들에 대한 참정권의 부여와 선거에의 참여는 상애회나 내선협화회(內線協和會)와 같은 단체들에게 신민으로서 천황과 제국을 위해 조선인 이주자들을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를 제

9) 1937년 제20회 총선거에서의 조선인 유권자 수에서는 동경과 오사카와 같은 대도시의 조선인 유권자 수가 누락되었다. 1938년 일본의 도시를 기준으로 한 조선인 거주자의 지역적 분포에서 오사카와 동경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한 것을 감안하면, 1937년 제20회 총선거에서의 조선인 유권자 수는 마츠다 도시히코가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마츠다 도시히코는 1932년, 1936년, 1937년 조선인 이주자 수를 각각 390,543명, 337,454명, 그리고 198,150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선인 이주자 수의 하락 경향은 조선인 이주자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공하였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1930년대 초반부터 조선인 후보를 본격적으로 배출하면서, 한편으로는 친이주 동화 연합을 공고히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단체의 활동을 통해 조선인 이주자들을 정치적, 사회적으로 조직하며, 동화에 동의하지 않는 조선인 이주자 단체들에 대한 테러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단체 내부에서 다양한 동화정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제국의 동화정책을 조선 이주자 공동체에서 주도적으로 구현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일본 내지에서의 이러한 정치적 자유화(보통 선거권의 도입)와 조선인 이주자들에 대한 참정권의 부여는 조선인 이주자 그룹에 의한 다른 방식의 정치연합의 구성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특히 조선인 이주자 노동조합들은 이러한 다른 방식의 정치 연합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이주 정치 연합은 보통 선거권의 도입에 따른 정치적 자유화와 일본 노동조합 평의회를 중심으로 한 일본 노동조합의 전국 정당 결성 노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전국적인 정당 건설을 통해 무산자 계급을 조직하고 제국의회에 그들의 대표자를 보내는 것은 그들의 주요한 정치적 목적 중의 하나였다. 1926년에 창당한 노동농민당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노동농민당은 1928년 제국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체되고 여타의 작은 정당으로 갈라졌지만, 일본정당의 계보에서 무산자를 위한 대중 정당의 기원으로서 평가 받고 있다.

교토와 효고의 조선인 이주자 노동조합들은 노동농민당의 창당 준비 단계부터 참여하고 있었다. 일본 내지의 주요 도시에 거점을 두고 있었던 조선인 이주 노동조합들과 조선인 이주 노동 총연맹은 일본 노동조합 평의회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사회,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노동농민당의 창당 및 지원에 참여했다. 이러한 참여활동에는 연사를 파견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관련된 조직들을 동원하고 일본인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언을 발표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인 노동조합에서 파견된 연사들은 언론, 결사, 출판의 자유, 조선인 이주자에 대한 폭력, 일본 내지로의 조선인 이주 노동자의 유입 문제, 동양 척식 주식회사의 이주 프로젝트, 실업 문제, 조선 총독부, 만주에서의 조선 이주자들에 대한 인종적 차별, 조선인 공산당원의 체포, 조선의 독립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를 제기했다(마츠다 도시히코, 2004: 45-50).

노동농민당 역시 조선인 이주 노동조합이나 단체들이 개최한 집회 등에 참여하

였다. 또한 자당의 입후보자들에 대한 추천을 조선인 이주자들에게 받기도 하였다. 참정권에 대한 거주기간의 요건(1년)을 철폐하고자 하였으며, 조선어로 된 투표표를 허용하고, 조선인에 대한 억압을 중지할 것과 노동자를 위하여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것 등을 주장했다(마즈다 도시히코, 2004: 51). 이러한 연합은 조선인 이주자들의 또 다른 정치적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한편으로는 친일 단체들에 의한 동화와 신민의 정체성 구성에 대항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내지의 비판적 정당과의 정치적 연합을 (재)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한 결과로 1927년 오사카 부회의원선거에서 조선인 유권자들은 노동농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는데, 오사카부 경찰부 특고경찰과의 조사에 따르면, 820명의 투표자 중, 550명(67.1%)은 노동농민당에 투표했고, 오직 67명(8.2%)만이 기성정당인 정우회, 민정당, 실업동지회 등에 투표했다. 노동농민당을 포함해 753명이 사회민주당, 일본노동당, 관서민정당과 같은 무산자를 위한 새로운 정당들을 지지했던 것이다(마즈다 도시히코, 2004: 44). 이러한 사실은 친이주 동화 연합의 정치적 기대와는 달리, 조선인 이주자들의 정치적 정체성이 제국과 일본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정당들에 향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¹⁰⁾

이러한 노동농민당의 사례는 조선인 이주자들을 일본사회로 포함하는 다른 방식을 제안한다. 위에서 언급한 친이주 연합의 포함 방식은 동화를 통해 신민을 구성하는 일방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이는 이주자들이 “그들의 언어, 문화, 사회적 특성들을 포기하고 주류 사회에 적응하는 일방적인 과정”(Castles, 2000: 137)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제국의 신민으로서 정치적 정체성을 형성을 강제하는 과정이었다. 이와는 달리 노동농민당의 사례는 일본인과 조선인 이주자간의 상호작용적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정치적 연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동화의 일방적인 과정과 구분된다. 이 과정 속에서 일본인과 조선인 이주자들은 협상하고, 싸우며, 상호 이해하면서 일본 제국에 대한 비판적인 정치적 연합을 구성해 나갔던 것이다. 이 점에서 이러한 과정은 친이주 연합이 강조했던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동화’에 상응하는, 밑으로부터 이주 연합을 구성했던 ‘카운터-동화’(counter-assimilation)라고 명명할 수 있다. 또한 문화와 정치적 순응을 강조하는

10) 투표와 투표 패턴은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와 함께 한 그룹의 정치적 정체성을 측정하고 파악하는 중요한 종속변수로 볼 수 있다(Jung, 2000: 36-38).

동화와는 달리, 이러한 ‘카운터-동화’는 동화에서 간과되는 이주자들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초점을 둔 비판적 이주 연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동농민당은 1928년 3월 제국에 의해 해산되었다. 많은 정당원들이 일본 공산당원들과 더불어 체포되었다. 무산자를 위한 정당 중, 오직 우파 정당들만이 살아남았고, 이러한 정당들은 종종 실업에 대한 책임을 조선인과 중국인 이주자들에게 전가하면서 반이민 입장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카운터-동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강압에 의해 해체되었다. 노동농민당의 입장에 기반한 정당들은 공산당과 마찬가지로 제국에 의한 해산을 반복해서 경험해야 했다. 이런 의미에서 카운터-동화의 정치적 연합과 실천은 불안정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이주자들은 카운터-동화의 실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은 아니었다. 1930년대에 조선인 이주자들은 오히려 정당보다는 조선인 이주자 공동체에 기여했던 일본인 개별 후보자들을 선택했다. 이러한 일본인 후보자들은 조선인 이주 공동체를 위해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조선인 이주 노동자의 파업을 지지했던 인사들이었다(마츠다 도시히코, 2004: 68-69). 이러한 공적 활동들-교육, 의료 서비스, 파업-은 기존의 이주정치가 간과하거나 친이주 동화 연합의 친일 단체들을 통해 머신 정치(machine politics)의 형태로만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머신 정치는 1930년대 친일 단체로부터 출마한 조선인 이주자들의 사례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성공했으며 친이주 동화 연합에 의해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던 이들은 조선인 이주자들을 조직하기 위하여 ‘브로커’ 정치, 혹은 ‘후견’ 정치에 의존해야 했다. 즉, 조선인 이주자들에게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이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표로 받는 머신 정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제국주의자와 동화론자로 구성된 친이주 동화 연합은 이러한 머신 정치를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그들은 신민의 모델로서 찬사를 받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일본 내지의 정치와 조선인 이주 공동체를 정치적으로 황폐화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VI. 결론

일본 제국 시대의 이주의 정치는 태평양 전쟁에서의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종료하였다. 이는 제국주의자와 동화론자, 그리고 친일단체로 구성된 친이주 동화 연합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일본 민족이 강조했던 구래의 영토(일본 내지)는 이제 확실하게 복권되었다. 일본인은 스스로를 이등 국가의 사람들로 낮추었고, 동시에 조선인 이주자들은 삼등 국가의 사람들로 강등되었다. 제국주의 시대의 반이주 반-동화 연합은 친이주 동화 연합의 해체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1919년 이래 주도권을 상실했던 반이주 연합은 역설적이지만 제국의 붕괴 속에서 자신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들은 제국주의 시대에 강조했던 일본인과 조선인간의 인종적 분리(racial segregation)를 넘어서, 조선인 이주자 전체를 법적, 제도적으로 배제하고, 나아가 전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추방 정책의 원동력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총체적인 배제의 과정은 조선인 이주자 전체에 저항적인 반-동화를 고취하는데 공헌하였다. 그러나 흔히 민족 문제로 환원되는 이러한 지배적인 반-동화와 저항적인 반-동화의 대립이 두드러지게 된 것은 전후의 일이었다. 이러한 전후의 틀 속에서, 한편으로는 동질적인 일본인이라는 신화가,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인 이주자들의 민족 정체성(또는 베네딕트 앤더슨(Anderson)의 표현을 빌자면 ‘원거리 민족주의’)이라는 상호간의 배타성이 공고화되었다.

이러한 전후의 반-동화 중심적인 이주 정치의 재편은 제국주의 시대의 동화와 카운터-동화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 글은 제국주의 시대 일본 내지의 조선인 이주자에 대한 참정권을 검토함으로써, 친이주 동화 연합, (지배적인 혹은 저항적인)반동화, 그리고 카운터-동화의 관념과 정치적 실천 속에서 이주의 정치가 어떻게 역동적으로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인종과 민족이라는 개념들이 어떻게 고정되거나, 풀리거나, 혹은 정치적 관계 속에서 재정립되는지에 관한 통찰을 제시하려고 시도해왔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글은 전후 일본에서 구성되어왔던 동질적인 일본인이라는 신화와 저항적인 반-동화간의 민족적 이분법에 도전해 왔다.

제국주의 시대 일본의 이주 정치와 조선인 이주자들의 참정권 문제는 또한 서론에서 간략하게 언급했던 현대의 국제 이주자들의 투표권 문제에 대해서도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유럽 연합 국가 중 핵심 국가들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은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의 시민들에게 지역과 유럽연합 수준에서의 투표권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제3국 국적자’에 대해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거부해왔다. 반면에 벨지움이나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제3국 국적자’에 대한 지역 수준에서의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왔다. 그렇다면 유럽 연합 내부에서의 국가 간 변이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동화는 이러한 변이를 이해하는 하나의 열쇠를 제공한다. 로저 브루베이커(Brubaker, 2001)가 적절하게 지적하듯이, 백인 우월주의, 강제적인 독일인화, 혹은 자코뱅 공화주의의 야만스러운 동질화 열망과 실천은 서구 이주 정치에서 그 근거를 상실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화라는 관념은 동화의 목적을 자유주의적 정치 이념과 문화로 대체하면서,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중심으로 강화되어 왔다(Joppke and Morawska, 2002). 만일 동화가 국제 이주자들을 포함하거나 배제하는 선택적 메카니즘이라면,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유럽 연합 소속 국가들의 시민들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고, ‘제3국 국적자’에게는 그것을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러한 메카니즘을 제도화해 온 것처럼 보인다. ‘일반적인 과정’인 동화의 목적으로서의 자유주의적 정치 이념과 문화의 이식은 그러한 국가들에서 ‘제3국 국적자’의 참정권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제3국 국적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유럽 연합의 국가들의 경우, 국제 이주자들을 포함하는데 있어서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과는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국가들의 경우, 이주자들의 정체성을 풀기 위하여 자유주의적인 정치적 이념과 문화를 동화의 목적으로 고정시키기 보다는, 이주자들의 정치적 정체성이 협상되고, 때로는 주류 사회와 마찰을 일으키며, 궁극적으로는 상호 이해에 도달하려는 정치적 비전속에서 모든 이주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정치 과정적 비전을 ‘민주적 통합’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반면에, 영국이나 프랑스, 그리고 독일 등은 ‘자유주의적 동화’의 비전속에서 특정한 이주 그룹을 배제해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국주의 시대의 일본 내지와 마찬가지로, 이주자를 포함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관념과 실천—동화(자유주의적 동화)와 카운터-동화(민주적 통합)이 유럽 연합 수준에서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주자들의 투표권 문제는 미국의 민주주의와 이민 문제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화두로 대두되어 왔다. 예를 들어, 보니 호니(Bonnie Honig)는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이주자들을 포함하는 주요한 방식으로 이주자 투표권을 주장한다. 이주자 투표권의 확장이 이주자들의 에너지가 미국의 재민족화(renationalization)를 위해 소진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Honig, 1998: 18). 일본의 제국주의 사례에 비추어 이주자의 투표권이 ‘재민족화’를 약화시키는데 일정하게 공헌한다는 보니 호니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방식, 즉 동화의 방식과 카운터-동화의 방식이 있다. 동화의 방식에서 조선인 이주자의 참정권은 일본의 재제국화(reimperialization)를 위해 조선인 이주자들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면서 일본의 민주주의를 축소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반면에 카운터-동화의 방식에서 조선인 이주자의 참정권은 정당 건설과 선거를 통해 일본 내지의 민주화를 위한 조선인 이주자와 일본인간의 비판적인 정치 연합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매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의 민주주의의 미래는 헌팅턴(Huntington, 2004)의 동화론보다는 제국주의 시대 일본 내지의 카운터-동화의 실천 속에서 보다 많은 정치적 함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松田利彦(Toshihiko, Matsuda). 1995. 『戦前期の在日朝鮮人と参政権』. 東京: 明石書店. (김인덕 역. 2004. 『일제시기 참정권 문제와 조선인』. 국학자료원).
- 松田利彦(Toshihiko, Matsuda). 2004. “植民地期朝鮮にあける参政権要求運動團體: 國民協會について.” 浅野豊美・松田利彦 編. 『植民地帝國日本の法的構造』. 東京: 信山社. (김인덕 역. 2004. 『일제시기 참정권 문제와 조선인』. 국학자료원).
- Huntington, Samuel P. 2004. *Who Are We: The Challenges to America's National Identity*. New York: Simon & Schuster. (형선호 역. 2004. 『새뮤얼 헌팅턴의 미국』. 김영사).
- 小熊英二(Oguma, Eiji). 1998. 『日本人の境界』. 東京: 新羅社.
- Benhabib, Seyla. 2004. *The Rights of Others: Aliens, Residents, and Citize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 2008. *Another Cosmopolitan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rubaker, Rogers. 2001. “The return of assimilation?: Changing perspectives on immigration and its sequels in France,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Ethnic and Racial Studies* 24(4): 531-548.
- Castles, Stephen. 2000. *Ethnicity and Globalization*. Thousand Oaks: Sage.
- Ching, Leo T. S. 2001. *Becoming “Japanese”: Colonial Taiwan and the Politics of Identify Form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hristy, Alan S. 1993. “The Making of Imperial Subjects in Okinawa.” *Positions: East Asia Cultures Critique* 1(3): 607-639.
- Chung, Yunng-Soo., and Elise K. Tipton. 1997. “Problems of Assimilation: the Koreans.” Pp. 169-192 in *Society and the State in Interwar Japan*, edited by Elise K. Tipton. London: Routledge.
- Cornelius, Wayne A., Takeyuki Tsuda, Philip L. Martin, and James F. Hollifield (eds.). 2004. *Controlling Immigration: A Global Perspective*, 2nd edi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Earnest, David C. 2006. “Neither Citizen Nor Stranger: Why States Enfranchise Resident Aliens.” *World Politics* 58(2): 242-275.
- Fenlon, Brodie. 2009. “Mayor renews pledge to give landed immigrants the right to vote.” *The Globe and Mail*, June 12.
- Gluck, Carol. 1985. *Japan's Modern Myths: Ideology in the Late Meiji Perio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oldberg, David Theo. 1993. *Racist Culture: Philosophy and the Politics of Meaning*. Oxford: Blackwell.

- Hayduk, Ron. 2006. *Democracy for All: Restoring Immigration Voting Rights in the United State*. New York: Routledge.
- Hollifield, James F. 2000.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Migration: How Can We Bring the State Back In?" Pp. 137-186 in *Migration Theory: Talking Across Disciplines*, edited by Caroline B. Brettell and James F. Hollifield. New York: Routledge.
- Honig, Bonnie. 1998. "How Foreignness "Solves" Democracy's Problems." *Social Text* 56(Fall): 1-27.
- Howell, David. 1994. "Ainu ethnicity and the boundaries of the early Japanese State." *Past and Present* 142: 69-93.
- Joppke, Christian., Ewa Morawska. (eds.). *Toward Assimilation and Citizenship: Immigrants in Liberal Nation-States*.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Jung, Courtney. 2000. *Then I Was Black: South African Political Identities in Transi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Keyssar, Alexander. 2009. *The Right to Vote: the Contested History of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s*. revised edition. Boston: Basic Books.
- Lee, Soo Im. 2006. "The Cultural Exclusiveness of Ethnocentrism: Japan's Treatment of Foreign Residents." Pp. 100-124. in *Japan's Diversity Dilemmas: Ethnicity, Citizenship, and Education*, edited by Soo Im Lee, Stephen Murphy-Shigematsu, and Harumi Befu. Lincoln: iUniverse.
- McKewon, Adam. 2004. "Global Migration, 1846-1940." *Journal of World History* 15(2): 159-189.
- Miles, Robert. 1993. *Racism after 'RaceRelations'*. London: Routledge.
- Morris-Suzuki, Tessa. 2001. "A Descent into the Past: The Frontier in the Construction of Japanese Identity." Pp. 81-94 in *Multicultural Japan: Palaeolithic to Postmodern*, edited by Donald Denoon, Mark Hudson, Gavan McCormack, and Tessa Morris-Suzuk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ajita, Tetsuo. 1974. *Japan: the Intellectual Foundations of Modern Japanese Poli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Oguma, Eiji. 2002. *A Genealogy of 'Japanese' Self-images*. translated by David Askew. Melbourne: Trans Pacific Press (小熊英二. 1995. 『單一民族神話の起源: <日本人>の自畫像の系譜』. 東京: 新羅社).
- Peattie, Mark R. 1984. "Japanese Attitudes Toward Colonialism, 1895-1945." Pp. 80-127. in *The Japanese Colonial Empire, 1895-1945*, edited by Ramon H. Myers and Mark R. Peatti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askin, J. B. 1993. "Time to give aliens the vote (again); green-card power." *The Nation* 256.

- Shaw, Jo. 2007. *The Transformation of Citizenship in the European Union: Electoral Rights and the Restructuring of Political Spa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naka, Stefan. 1995. *Japan's Ori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Varsanyi, Monica W. 2005. "The Rise and Fall (and Rise?) of Non-citizen Voting: Immigration and the Shifting Scales of Citizenship and Suffrage in the US." *Space and Polity* 9(2): 113-134.
- Weiner, Michael. 1997. "The Invention of Identity: Race and Nation in Pre-War Japan." 96-117 in *The Construction of Racial Identities in China and Japan: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s*, edited by Frank Dikötter.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Weiner, Michael. 1989. *Origins of the Korean Community in Japan: 1910-1923*. Atlantic Highlands: Humanities Press.
- Yonezawa, Miyuki. 2004. "Memories of Japanese Identity and Racial Hierarchy." Pp. 115-134 in *Race and Nation: Ethnic Systems in the Modern World*, edited by Paul Spickard. New York: Routledge.
- Zolberg, Aristide. 2006. *A Nation by Design: Immigration Policy in the Fashioning of Americ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Zolberg, Aristide. 1999. "Matters of State: Theorizing Immigration Policy." Pp. 71-93 in *Handbook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 American Experience*, edited by Charles Hirschman, Philip Kasinitz, and Josh DeWind.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부록 1〉 이주자 투표권의 현 상황*

권리의 수준		권리의 범위	
		특정한 이주자 대상 (차별적)**	모든 이주자 대상 (비차별적)
	중앙 단위 선거	호주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위스 영국 바베이도스	뉴질랜드 우루과이
	지방 단위 선거	호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몰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스위스 영국 이스라엘 한국 미국***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스웨덴 벨리즈 칠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자료: Earnest (2006, 259); Shaw (2007, 78-81); Hayduk (2006, 186-192)

* <부록 1>은 투표권의 범위와 참여 수준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이다. 투표권에 대한 문제에서 다른 중요한 변수인 시간-이주자의 거주 기간-의 문제는 반영되지 않았다.

** 차별적이라 함은 특정한 이주자를 배제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이러한 방식에는 특정한 이주자 그룹을 배제하거나, 혹은 특정한 이주자 지위(status)에 있는 이주자들을 포함하고 나머지는 배제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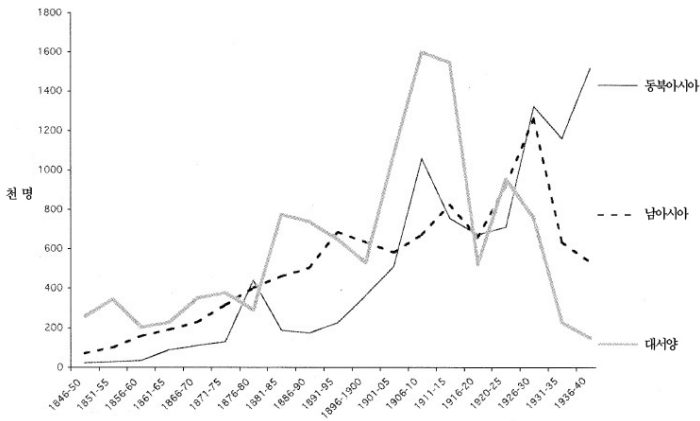
*** 미국의 경우 이주자 투표권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정한 지역에서 특히 교육 부문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이주자 투표권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부록 2〉 근대 국제 이주 시대의 이주 경로와 이주자 수

19세기 중반부터 1945년까지 전세계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주요 이주 시스템이 존재하였다.

목적지	주요 출발지	인원수(백만)	부가사항
아메리카 대륙 (대서양 이주 시스템)	유럽	55-58	2.5 (인도, 중국, 일본, 아프리카)
남아시아, 인도양 연안, 남태평양 (남아시아 이주 시스템)	인도 중국남부	48-52	4 (아프리카, 유럽, 동북아시아, 중동)
만주,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일본 (동북아시아 이주 시스템)	동북아시아, 러시아	46-51	-

자료: McKeown (2004).



주: 수치는 5년 단위 평균값임.

이충훈은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뉴욕의 뉴스쿨(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에서 일본의 이주정치에 대한 정치학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전공분야는 비교정치와 정치이론이고, 전자우편은 leec608@newschool.edu이다.

(2010. 3. 20. 접수; 210. 5. 25. 수정; 2010. 6. 1. 채택)

Politics of Immigration in the Imperial Japan: The Case of Immigrant Voting Rights for Chosun Immigrants

Choonghoon Lee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Abstract}

The contemporary moder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 has raised a thorny question about the political incorporation and participation of immigrants in immigrant-receiving states. As a response, some forty countries have granted the voting rights to immigrants (or non-citizen residents). In Japan, the immigrant voting rights has become a major political issue since 1989. Ironically, however, the franchise that is currently denied to immigrants was granted to Chosun immigrants during the imperial period. This study examines how Chosun immigrants were granted the right to vote, what was the process of enfranchisement, and what was the political implicat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by Chosun immigrants, in the political dynamics of assimilation, anti-assimilation, and counter-assimilation that made the politics of immigration in the imperial Japan.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also provides political implications for the contemporary issue of immigrant voting rights.

Key words: politics of immigration, Japan, Chosun immigrants, immigrant voting rights, assimilation, anti-assimilation, counter-assimilation

해외한인 청소년과 민족정체성의 의미

한국을 일시 방문 중인 해외 한인 청소년들과의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조혜영** 박동성*** 양한순**** 최진숙*****

해외한민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형성하는 민족정체성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그들은 어떠한 계기로 한민족 정체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한국과의 관련성이나 한민족 배경은 자신들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에 장·단기 체류 중인 해외국가(미국,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 그 외 국가) 출신 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총 면담 참가자 수는 44명이다. 출신국별로 미국이 11명, 중국 8명, 일본 7명, 독립국가연합 출신 9명, 기타국가 출신 청소년 9명이며, 기타국가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독일, 캐나다, 브라질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민족 정체성이 고정된 하나의 실체로 해외 한민족 후손들의 삶에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 부각되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며 변화하는 것임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해외 한민족 청소년들은 민족 정체성이나 한국과 관련된 배경을 진로 설계와 관련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주제어: 해외한민족 청소년, 민족정체성, 진로

* 이 논문은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국내체류 해외 한민족 청소년 실태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조교수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조교수.

I. 서론

한민족의 이민사는 이미 한 세기를 훨씬 넘어섰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외 각국에 정착하고 있다. 이들의 규모는 이민, 유학, 단기체류 등의 목적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해외 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재외 한인의 규모는 2007년 기준 중국에 276만여 명, 북미에 220만여 명, 일본에 89만여 명,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에 53만여 명 등이며 이들 주요 국가 외에도 동남아시아,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 걸쳐 700여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 수치는 규모 면에서 중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에 이어 세계 5위이며, 남한인구 4400여만 명과 북한인구 2300만 명을 합친 본국 인구 대비 비율은 이스라엘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해외로 이주한 한민족은 이제 이민1세대가 뿌리를 내려 그 후손들이 2, 3, 4세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언어나 문화 장벽 때문에 주류 사회로 진출하지 못했던 1세대와는 달리 2, 3, 4세대들은 현지에서 태어나서 교육받아왔기 때문에 현지사회의 주류로 진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 이민 후속세대가 증가하고 있고, 거주국의 주류사회로의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갖고 있는 고국에 대한 인식이나 정체성은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민자들은 고국을 떠나 새로운 정착지에서 살아감으로써 고국과의 관련성이 적는 사람들로 설명되어졌지만 현재에는 글로벌화와 정보화의 영향으로 국경 개념이 약화되면서 이민이나 국제 이주가 영원히 고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국과 거주국 사이를 왕래하거나 고국의 사안에 개입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국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한류 확산, 한국 기업 제품의 국제적 위상 강화나 한국의 올림픽, 월드컵 개최 등을 통하여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가 상승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계기들은 해외 한민족으로 하여금 고국에 더욱 관심을 갖거나 직접 방문하는 유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해외한인 청소년들도 증가하고 있다. 방학동안 어학연수를 받거나 아예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에 유학을 하는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한국에서의 경험은 향후 자신의 거주국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한국과의 연계를 만들게 될 것

이다. 직접 한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한국 사회와 한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을 하게 되며, 한국어 학습과, 한국에서의 교육 경험은 자신의 진로와도 연결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국가(미국,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 그 외 국가) 출신 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형성하는 민족정체성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들은 어떠한 계기로 한민족 정체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한국과의 관련성이나 한민족 배경은 자신들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민족 정체성이 고정된 하나의 실체로 해외 한민족 후손들의 삶에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 부각되거나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민족 정체성이나 관련된 배경을 진로 설계와 관련하여 활용하는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해외 이주민과 민족 정체성

근래의 이민자 연구 및 민족 집단에 대한 연구 동향은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 정보, 문화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어 이주민 집단과 모국과의 교류 및 네트워크에 비중을 두고 있다. 최근에 이민자들은 국경 및 국적을 초월하는 삶을 살며, 그들의 고국과 강한 유대를 유지하는 경향이다. 이는 그들의 고국이 현재 주재국과 지리적으로 먼 위치에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민자들의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 경계를 넘나드는 삶을 사는 사회 현상은 초국주의(transnationalism)로 설명된다. 이민자들은 국경을 가로질러 가족, 경제적, 사회적, 조직적, 정치적 관계를 발전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이민자들의 고국과 현재 거주국 사이의 다중적 관계가 초국적주의(transnationalism)의 핵심 요소로 고려되어지며, 이러한 이민자들(immigrants)은 transmigrants라고 불린다. 따라서 과거에는 이민자는 고국을 떠나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여 고국과의 유대를 끊은 사람들로 개념화되었으나, 근래에는 이민자들이 고국을 떠나 새로운 사회에 정착을 하였어도 지속적으로 고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개념화하고

있다(Glick Schiller, Basch, and Blanc-Szanton, 1992, 1995; Glick Schiller 1999a, 1999b; Glick Schiller & Fournon, 1998).

이러한 초국가적 상황에서 이민자들은 고국을 떠났어도, 현재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상징적 혹은 실질적으로 고국과의 관련을 유지하며 살고 있다(Clifford, 1994; Safran, 1991; Tololyan, 1996). 교통 통신의 발달은 이들 이민자들로 하여금 고국에 대한 관심을 유지시킬 수 있게 한다. 더욱이, 외교 및 무역 관계의 에이전시들은 고국과 이들 이민자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Portes and Rumbaut, 1996). 따라서 이민자 집단(Diaspora)은 현재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사회와 그들의 고국에 대해 이중적 관계(doubled relationship) 혹은 이중의 충성심(doubled loyalty)을 갖게 되는 것이다(Lavie and Swedenburg, 1996: 14). 이민자들은 고국과 그들의 현재 주재국을 연결하는 사회, 경제, 문화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러한 초국주의는 이민자들이 모국과 거주국 사이에서 발전시키고 있는 다중적이고 동시적인 관계들, 예컨대, 정치 경제적, 사회 문화적, 가족적 관계들을 망라하며, 모국과 거주국에 동시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민족 정체성은 다중 정체성의 형태를 띤다(윤인진, 2000a). 소위 세계화 시대의 이주자는 ‘시민권’ 또는 소속감에 대해 유연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복수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또한 타향살이를 하기보다는 거주지에서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문화적 기반을 재구성할 뿐만 아니라 거주국의 사회·문화·정치적 영역에 참여하려 하기도 한다. 오늘날의 이주(이민)자들은 자신들이 거주하게 될 나라의 사회·문화 심지어 정치적 상황에 대한 지식을 수집하며 이민을 간 후에도 한국과의 사회·정치적 관계를 끊지 않는다. 이제 이주(이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안정을 위한 이주가 아니라 유연성, 이주, 재배치로 대표되는 적극적인 생존 전략의 실천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한인은 여러 민족-국가의 문화를 이중이나 다중으로 경험하고 수용하게 될 것이며 이미 상당한 수가 장기간의 해외 유학 또는 파견 근무로 이중 문화성을 가지고 있다(박준규, 2007).

한편, 한 국가의 국민이나 민족의 정체성이 개인적인 것인가, 집단적인 것인가 혹은 그것이 부여된 것인가, 구성된 것인가에 관한 엇갈린 주장들이 있지만, 최근

에는 대체로 그것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분화되고 늘 새롭게 구성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구화 시대, 다양한 문화와 종족들과의 접촉을 경험하는 이민자들은 고정된 정체성의 벽을 넘어서 그 경계선 자체를 가변화시키거나 교착 내지 중첩시킴으로써 정체성에 불박혀 영토화된(territorialized) 사고와 행동을 탈 영토화한다. 어떤 면에서 이는 새로운 정체성, 하지만 지속적으로 가변화되며 고정되지 않는 유목적(nomadic)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것은 어떤 고정된 위치에 불박힌 동일성이 아니라 변이를 통해 끊임없이 유동화되는 새로운 장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끊임없이 구성되는 것이다. 정체성의 이러한 유동성은 지구화 시대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임채완 · 전형권, 2006).

결국 이민자들의 정체성은 역사 초역사적이고 고정된 실체라기보다는 역사적 변화에 열려있는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민족 집단 구성원들의 정체성은 종교나 언어 등 객관적으로 관찰가능한 문화적 특질을 공유한다는 정적인 관점은 점차 주관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화가능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Takezawa, 1995). 일찍이 프레드릭 바쓰(Fredrik Barth)도 민족 정체성의 “주관적” 측면을 주목하였다. 그는 고정된 영토 경계보다는 집단 구성원들에 의해 융통성있게 변화하는 사회적 범주으로써 민족의 경계를 설정하였다. 민족 집단은 행위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정체성이며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집단의 특성에 따라 경계선이 설정된다는 것이다(Barth, 1969). 결국, 민족 및 고국에 대한 의식은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새롭게 거듭 날 수 있는 것이며(Okamura, 1981), 개인의 성장 배경에 따라 부여하는 의미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민족정체성은 단순한 상징 혹은 관찰가능한 마크라기보다는 실제 상황에서 그리고 개인들의 삶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위치지워져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족정체성은 집단 구성원들의 삶 속에서 지속적인 재해석 과정을 거쳐 재구성되는 것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여진다(Fischer, 1986; Hall, 1996; 조혜영, 2001).

2. 해외한인 차세대 및 청소년 연구

해외한민족 차세대나 청소년 세대에 대한 체계적 논의들은 찾아보기 힘든 가운

데, 윤인진 외(2005)의 연구는 설문조사 및 센서스 자료를 사용하여 미주지역의 재미한인 차세대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2000년 미국 센서스 자료를 사용하여 재미한인 차세대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고, 미국 주류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진출현황과 실태를 진단하였으며, 표본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차세대의 교우관계, 이성교제와 결혼에 대한 태도, 부모 자녀 관계, 종교, 언어 상황, 민족정체성, 모국과의 연대성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재미한인 차세대가 미국에서 역량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이들의 민족정체성을 고양하고, 모국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또한 해외 한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연구가,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반해, 그들 자녀 세대들이 모국 방문을 통해 얻은 경험이나, 모국 방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모국 체류 기간에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는 흔치 않다. 이정훈과 윤인진(1998)은 재일동포 모국 수학생을 대상으로 모국 수학의 목적 및 동기, 재일동포 사회와 본국과의 연계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국 수학의 상황과 문제점을 고찰한다. 한준상(1995)은 재외교포 자녀들의 단기연수활동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외교포 모국 수학 현황, 교육내용, 교포자녀들이 모국 수학에서 겪는 어려움 및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하지만 논의의 수준에 있어서 개괄적인 프로그램의 소개에 그치고 있으며 재외교포의 모국 방문 교육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교육 수혜자들을 통한 심층적이거나 포괄적인 의견을 섭렵하지 못한 수준에서 일반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모국수학생의 민족정체성에 대한 연구로는 이창기와 김중(1994)의 연구가 있으며 이들은 서울대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는 해외동포 학생 88명을 대상으로 민족정체감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민족 정체감의 내용에 해당된다고 여겨지는 문항을 선택하여 민족정체감의 척도를 측정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질문 항목이 어떤 근거에서 채택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되지 않았다. 또한 지역별, 전공 계열별, 성별, 거주기간별, 이주 시기별로 모국 수학생들의 민족 정체감을 측정하고 있는데, 지표별로 비교하려는 시도는 좋아 보이나 양화의 근거가 빈약해 보이며, 특히 양화되었을 때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개별 참여자들의 다양한 경험 및 동일한 언표, 즉 민족 정체감이라고 하는 언표 이면에 내재한 개별적이고 심층적인 의미의 차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게 된다.

최우길(1999)은 조선족의 정체성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부분적이거나 조선족 모국 수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체성 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 조사에서 조선족 학생들은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자신들이 한국인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며 한국인도 아니고 중국인도 아닌 ‘중국의 조선족’으로 혹은 이중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중국은 조국이며 한반도(한국 또는 북한)는 고국이다’라는 명제에 35명의 응답자 중 31명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들은 단일 국가 해외 한인 차세대에 대한 연구들이며, 대부분 90년대에 이루어진 연구라 시기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난 2000년대 이후 대비하기에 미흡한 점이 보인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광범위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 한민족 청소년 청소년들의 정체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III. 연구방법

1. 심층면담

본 연구는 한국에 장·단기 체류 중인 해외 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하여 대규모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생생한 정보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내를 방문하고 있는 재외한인 청소년들의 경우 모국에 대해 보다 특별한 감정을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향후 이들의 진로 및 한국사회와의 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모국방문 계기, 모국에 대한 관심 및 연계 가능성, 향후 진로, 정체성 등에 대해 면담을 수행하였다.

면담참가자 섭외는 한국어 연수 기관의 협조를 얻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심층면담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면담에 응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섭외하여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연구진의 개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면

면담참가자를 섭외하였다. 이들과의 심층면담은 출신국가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연구진과 보조원이 수행하였다. 중국어, 일본어, 영어를 구사하는 연구진과 중앙아시아 출신의 연구보조원이 참여하였다.

면담은 2007년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되었다. 면담 장소는 주로 면담 참가자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나 연수기관을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면담 진행시간은 1-2시간 정도였으며, 면담 회수는 2회 이내로 실시되었다. 면담은 참가자의 동의를 구하여 녹음되었으며, 녹음자료는 전사되어 분석에 활용되었다.

2. 면담 참가자 개관

면담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주로 국내 대학의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이나 국제교육진흥원, 한국의 대학 및 대학원에서 유학하고 있었으며 총 면담 참가자 수는 44명이다. 출신국별로 미국이 11명, 중국 8명, 일본 7명, 독립국가연합 출신 9명, 기타국가 출신 청소년 9명이다. 기타국가 출신 청소년들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독일, 캐나다 브라질에서 주로 성장한 청소년들이었다. 면담참가 청소년의 연령층은 20대 초반이 주를 이루었다. 면담참가자의 국가별, 연령별 분포는 아래와 같다. 각 절에 소개되는 면담 참가자의 이름은 가명이다.

〈표 1〉 면담참가자 분포

	참가자 수	성별	연령
재미한인 청소년	11명	여(8명) 남(3명)	18세(3명), 19세(3명), 20세(1명), 22세(1명), 24세(1명), 26세(1명), 27세(1명)
조선족 청소년	8명	여(6명) 남(12명)	20세(2명), 21세(2명), 23세(1명), 24세(2명), 26세(1명)
재일한인청소년*	7(10)명	여(6명) 남(1명)	20세(1명), 21세(3명), 24세(1명), 25세(1명), 26세(1명)
고려인청소년	9명	여(8명) 남(1명)	19세(2명), 22세(1명), 23세(5명), 24세(1명)
기타국가출신 청소년	9명	여(4명) 남(5명)	17세(1명), 18세(4명), 19세(2명), 20세(1명), 21세(1명)
전체참가자 수	44(47)명	여(32명) 남(12명)	17세(1명), 18세(7명), 19세(7명), 20세(5명), 21세(5명), 22세(2명), 23세(6명), 24세(5명), 25세(1명), 26세(3명), 27세(1명)

* 재일한인 청소년의 경우 면담에 참가한 사람은 10명이지만 3명의 나이가 30대에 해당되어서 분석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표 2〉 재미한인 청소년 면담 참가자 개요

성명	성 별	국적	연령	현재 신분	종교	이민세대	한국방문	현재 체류방식	기타
유제롬	남	미국	18	대입 예정	기독교	2세	2번째(5세 때)	대학여름언어 연수	한국교회 (한글학교)
정경은	여	미국	18	대학1	기독교	한국에서 출생만 2세에 이민	3번째 방문	대학여름언어 연수	한국교회 (한글학교)
김제인	여	미국	19	대학1	기독교	2세	3번째 방문 (2살, 작년)	대학 여름학기 언어연수	아버지가 목사
주현진	여	미국	20	대학2	기독교	1.5 ¹⁾ 세 (15세 때 이민)	처음	대학여름학기 언어연수	한국교회
권주원	여	한국 (영 주권 자)	19	대입 예정	성당	1.5세	2-6세 미국거주, 중1때 미국행	언어연수	Korea town
이혜진	여	미국	18	대입 예정	기독교	2세	3번째	언어연수	한글학교
최필립	남	미국	19	대 2	기독교	2세	4번째	언어연수	한국교회 (한글학교)
홍은하	여	미국	27	대학 원	기독교	2세	3번째	언어연수(자 취)	한국교회 (한글학교) Korea town
박규영	남	미국	26	대졸	기독교	2세	2번째	국제교육진흥 원	한국교회 (영어사용)
이화평	여	미국	22	대4	기독교	2세	5번째	연세대 언어연수	아빠 중국계 엄마 한국계 (한국교회 가본 적 없음)
Caren Lee	여	미국	24	대졸	기독교	2세	2번째	서울대 (한국에서 초등영어 교사활동)	아빠 한국계 엄마 멕시코계 (미국교회)

1) 1.5세에 대한 접근은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7세에서 18세 사이에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1) 재미한인 청소년

면담에 응한 재미 한인 청소년들은 총 11명이다. 이들은 주로 대학생이며,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한국의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받고 있었다. 어학연수를 받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었다.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비용은 두 명 빼고는 대부분 부모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두 명은 한국에 계신 할머니가 지원을 해 주셨다고 한다. 이들과의 인터뷰는 한국어와 영어가 혼용되어 이루어졌고, 영어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영어 대화는 한국어로 번역되어 인용되거나, 직접 인용이 필요한 단어의 경우 직접 사용되었다.

면담참가자들의 이민세대는 2세가 9명으로 대부분이었으며, 2명은 1.5세였다. 한국 방문 경험은 모두 2회 이상이었으며, 성장과정에 한인교회를 다닌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부모 및 주변인들의 권유를 통해 한국방문과 한국어 연수를 하게 되었다. 또한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한국어 연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었다.

2) 조선족 청소년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 청소년들과의 면담은 총 8명과 수행되었으며, 이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 한국의 대학이나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어학연수를 받고 있었다. 이들은 어학연수를 마치고 한국의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조사자가 만난 이들 20대 초·중반의 조선족 청소년들이 현재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한국유학, 취업, 그리고 해외경험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는 어린 시절 한국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이미 한국을 방문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었다. 면담 참가자의 이민세대는 3세와 4세에 해당되었다.

이들이 한국에서 유학을 준비하는 동안의 체제 비용은 부모님의 도움에서 나왔고 한국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엔 대학의 장학금에 많이 의존했다. (한국에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한국정부의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조선족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점은, 이들의 부모들 가운데는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면담 참가자 중 강해는 수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임성의 경우엔 부모님이 모두 한국에 체류 중이다 (물론 임성은 따로 살고 있다).

그리고 삼겹살집이나 식당 서빙 등 “알바”를 통해 용돈을 버는 경우도 많다.

〈표 3〉 조선족 청소년 면담 참가자 개요

성명	성별	국적	연령	현재신분	종교	이민세대	한국방문	현재 체류방식
임성	남	중국	26	대졸(중국); S대 언어교육원 연수 후 현재 구직 중	없음	3세대	4번째 방문	S대 언어교육원 수료 후 취업준비
권서화	여	중국	24	대졸(중국); A대 대학원생	개신교	3세대 (외가쪽 4세대)	2번째 방문	A대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석사과정
강주	남	중국 (한국 국적 신청중)	20	고졸(중국); S대 언어교육원	개신교	4세대	2번째 방문	S대 언어교육원; 한국 대학 진학 준비 중
최영미	여	중국	23	대재(중국); 사천성 S민족대학 3학년	없음	3세대	첫 방문	국제교육진흥원 단기교육과정
최선화	여	중국	21	고졸(중국); 어학연수생	없음	4세대	첫 방문	국제교육진흥원 단기교육과정; 한국 대학 진학 준비 중
김화연	여	중국	20	고졸(중국); 어학연수생	개신교	4세대	첫 방문	국제교육진흥원 단기교육과정; 한국 대학 진학 준비 중
이수군	여	중국	24	대졸(중국); S대 언어교육원	없음	3세대	첫 방문	S대 언어교육원; 한국 대학원 진학 준비 중
황진	여	중국	21	고졸(중국); S대 언어교육원	개신교 (현재 안다님)	3세대	첫 방문	S대 언어교육원; 한국 대학 진학 준비 중

3) 재일한인 청소년

면담을 위해 한국에 유학이나 연수를 하고 있는 재일한인들을 섭외하였고, 면담에 응한 사람들은 총 10명이다. 하지만 연령대가 30대인 3명을 제외하고 20세에서 26세까지의 면담 참가자들만 분석에 포함하기로 한다. 따라서 분석에 포함된 재일한인 청소년들은 총 7명이다.

이들은 주로 유학이나 연수를 위해 한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거주하고 있는 곳

은 경향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풍족한 유학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어서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으면 기숙사를 이용한다고 한다. 개중에는 기숙사 시설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일부러 밖에서 생활하기도 한다고 한다.

체제비용은 단기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대학 재학 중인 경우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어학연수나 학부 유학인 경우는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매우 적고,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축을 쓰거나 부모의 원조를 받을 수밖에 없다.

〈표 4〉 재일한인 청소년 면담 참가자 개요

성명	성별	국적	연령	현재신분	종교	이민세대	한국방문	현재 체류방식
김조국	남	한국	24	석사과정	없음	3세	2회	대학재학
야마모토 미찌코	여	한국	20	교환학생	없음	3세	3회	대학재학
최은희	여	한국	26	박사과정	없음	3세	3회	대학재학
장희성	여	한국	21	학부생	없음	3세	3회	대학재학
송경순	여	한국	21	학부생	없음	3세	2회	대학재학
카와하라 마유미	여	일본	21	어학연수	없음	3세	6회	언어연수
초큐 사츠키	여	한국	25	어학연수	없음	3세	4회	언어연수

4) 고려인 청소년

면담에 응한 독립국가출신 한인 청소년들은 총 9명이다. 독립국가연합에서 온 한민족 청소년들의 경우 주로 한국에서 유학을 간 유학생들이나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들과의 교류 등으로 한국에서 제공하는 유학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한국의 대학원이나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중 한명은 교환학생 신분이었으며, 또 다른 한명은 어학연수를 받고 있었다. 이들의 유학 경비는 모두 정부나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교환학생의 경우는 자신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면담은 독립국가연합 출신의 조사원에 의해 주로 러시아어로 수행되었으며, 한국어가 가능한 1명은 연구진에 의해 한국어로 수행되었다.

면담 참가자들의 이민세대는 4세가 주를 이루었으며, 부모 중 한명이 한인 출신이 아닌 경우는 이민세대에 대한 개념이 명확치 않았다. 연령대는 19세에서 24세

까지이다. 이들은 한국방문 경험이 1회에서 2회 정도가 대부분이었으며, 유학을 위해 한국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체류기간은 4개월부터 2년까지 다양했다. 출신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4명, 카자흐스탄 2명, 러시아가 3명이었다.

〈표 5〉 고려인 청소년 면담 참가자 개요

성명	성별	국적	연령	현재신분	종교	이민세대	한국방문	현재 체류방식	기타
쏘냐	여	우즈베키스탄	23	대학원생	기독교	4세대	2번째(9개월째)	유학(재외동포재단)	
정올라	여	카자흐스탄	22	대학원생	기독교	4세대	10개월째 체류 중	유학(재외동포재단)	
김이리나	여	우즈베키스탄	23	대학생	없음	4세대	1년째 체류중	유학	
따냐	여	러시아	19	교환학생	무종교	잘모른다고 함(2세대 아니면 3세대라고 함) 아버지고려인 엄마 현지인	4번째 방문	교환학생 (몽골대학과의 교류)	부:고려인 모:야쿠 찌야인
장안젤라	여	러시아	23	대학생	기독교	4세	2년째 체류	유학(재외동포재단)	
박니까	여	우즈베키스탄	23	대학생	기독교	4세	10개월째 체류	유학(재외동포재단)	
김안드레이	남	카자흐스탄	23	대학생	기독교	4세	8개월째	유학(재외동포재단)	
김안젤라	여	우즈베키스탄	19	어학연수	기독교	4세	4개월	정부지정학부장학생	
장안나	여	러시아	24	대학생	무종교	4세	10개월	재외동포재단	

5) 기타국가 체류 청소년

기타국가에 거주하는 한민족 청소년들의 경우 주요지역 이외의 외국에서 성장해 온 경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면담을 실시했다. 해외한민족이 거주하는 주요 국가인 미국,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 이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했던 경험이 있는 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면담이 실시되었다. 이들의 주요 체류국은 유럽,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다양했다.

〈표 6〉 기타국가 출신 해외한인 청소년 면담참가자 개요

성명	성 별	국적	연 령	현재신분	종교	이민세대	한국방문	현재 체류방식	기타
이호영	남	한국	18	대학2	기독교	한국 출생 6세 때 이민		대학에서 학업	아버지가 목사 인도네시아 거주 12년
소형준	남	한국	17	대학1	기독교	한국 출생 7세 때 이민		대학에서 학업	아버지가 목사 필리핀 거주 10년
박진영	여	독일	19	대학2	기독교	독일 2세		대학에서 학업	독일8년, 미국 10년
이정현	여	캐나 다	18	대학1	기독교	1.5세대		대학에서 학업	캐나다
김혜리	여	한국	20	대학3	무	6세 -18세 케냐거주		대학에서 학업	케냐
장현석	남	독일	21	대학4	무	1.5세대	11세에 독일로 이민	대학에서 학업	독일
서효진	여	한국	19	대2	기독교	주재원 자격	3살에 파나마 9살에 다시 브라질-15세에 돌아옴.	대학에서 학업	파나마, 브라질
박종순	남	한국	18	고졸 (태국); 어학연수	개신교	1.5 (2살 때 태국으로 감)	3번째	국제교육진흥 원 단기교육과정 ; 한국 대학 진학 준비 중	태국
손규찬	남	한국 (태국 태생)	18	고졸 (태국); 어학연수	개신교	1.5 (태국에서 태어남)	3-4번째	국제교육진흥 원 단기교육과정 ; 한국 대학 진학 준비 중	태국

국가를 살펴보면 독일, 케냐, 브라질, 인도네시아, 태국이다. 이들의 체류 신분은 주로 유학이었으며,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여 대학을 다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대학 입학을 준비하며 어학연수를 받고 있는 청소년도 2명 있었다. 연령대는 17세에서 21세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총 면담에 참가한 청소년은 9명이며, 국적은 6명

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독일이 2명, 캐나다가 1명이었다. 기타국가 출신 한민족 청소년들은 주로 부모의 권유로 한국의 대학에서 유학을 하기 위해 체류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한국에서 향후 진로를 계속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려면 한국에서의 인맥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자신 스스로 결정을 하기도 한다.

IV. 한민족 정체성의 의미

1. 재미한인 청소년

1) 한민족 정체성 인식 계기: 부모, 한국어, 음식, 한국방문

재미한인청소년들이 한민족 정체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는 부모의 한국어 사용에 대한 강조나, 한국 음식과의 친숙성, 한국 방문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면담에 참가한 재미한인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가 한국어 사용을 강조하는 편이었다. 미국에 살지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에 입학하기 전이나 대학의 여름방학 기간 중에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유제롬: 어 엄마가 저한테 맨날 한국말을 못하면 어떻게 해, 한국 사람이니까 전 가족하고 말하면 맨날 미국말을 하니까 우리 엄마가 한국말을 좀 해라라고 말해줬어요.

질문자: 부모님하고 얘기 할 때는 그냥 영어로 하시고? 아니면...

유제롬: 한국말로 다해요.

질문자: 그럼 고등학교 때까지도 계속 한국말로 하셨어요?

유제롬: 네. 부모님한테.

특히 윗 형제가 한국어 연수를 받는 경우 동생들도 같이 연수를 받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제롬의 경우 누나와 함께 연수를 받고 있었으며, 최필립의 경우는 내년엔 동생이 연수를 받으러 올 계획이다.

이민 1세대인 부모는 한국말에 익숙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2세대인 자녀는 미국 학교에서 교육 받고, 미국사회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영어가 제1언어가 된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 간 대화에서 부모는 한국말을 사용하지만 자녀들은 영어로 대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대간 많은 단절감을

느끼던 재미한인 청소년들은 한국어 연수를 받는 과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보다 친밀해지는 것을 느끼기도 한다. 특히 장래의 직업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된다.

정경은: 네. 근데 예전에는 제가 영어로 말하고 부모님이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질문자: 아 미국에서 같이 살 때는?

정경은: 네. 그래서 특히 화날 때는요. 제가 미국말로 바꾸고 우리 엄마하고 아빠는 한국말로 바꾸죠.

질문자: 이번에 오고 나서 부모님이랑 통화하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뭐라 그러지? 한국어가 많이 늘었던가 프로그램 온 거를 좋아하세요?

정경은: 네. 좋아해요. 우리 아빠는요 조금 한국에 대한 생각이 나쁘거든요. 어렵게 살아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많이 안 온 거 같아요. 안 왔는데요. 우리 엄마는 아주 자랑스러워해요. 한국에 대해서...

질문자: 그러면 한국어 배우라고 부모님이 하시지 않아요? 아버님의 경우는 안 하실 수도 있겠네요? 어머니의 경우는...

정경은: 네. 아니 그래두 우리 아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질문자: 경은씨가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정경은: 네. 아빠도 특히 한국 사람들이랑 생활하거든요. 일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취직할 때 그것도 중요하고... 내가 동양 사람이니까 미국회사에 취직을 해도 동양 사람하고 대화를 더 많이 할 거 같다고 생각해요... 일 때문에도 중요하고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네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제인: 네. 우리는 부모님은 계속 한국말로 쓰고요. 어렸을 때 오빠랑 저 한국말 잘 몰랐을 때 영어로 같이 대화했는데요. 엄마아빠는 한국말. 우리는 영어. 그런데 이제 좀 배우니까요. 한국말로 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한국어 사용과 함께 한국 방문은 한국문화를 습득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주변에 재미한인 친구들이 많은 권주원의 경우 미국에 사는 한인으로써 한국문화를 아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특히 1.5세로써 한국어에 익숙하다는 점도 한국문화에 대한 거리감 없이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질문자: 그리고 연세 프로그램 같은 거가 주변에 같은 교포 친구들이나 선배 언니들이나 다 한번 씩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 같아요? 한국에? 한국에 여름방학

때...

권주원: 네. 다들 나왔다... 제 친구들도 연세 프로그램 안 해도 나왔다 들어가거든요.
주로...

질문자: 나와 보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권주원: 그런 거 같아요. 한국인인데 한국 문화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
있어도 한국인인데...

아버지가 중국계 이민 2세(4세 때 미국으로 이민)이고 어머니가 한국계 이민 1.5세인 이화평의 경우 고등학교 때와 대학교 2학년 때 한국방문 경험을 통해 한국문화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엄마의 가족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지는 계기가 된다. 자신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부분이 엄마의 문화적 배경과 관련된 것임을 알게 되고, 자신의 외가 방문을 통해 자신과 엄마의 연결고리를 찾고 싶어 한다. 역시 이화평의 경우도 한국 음식을 먹을 때, 또 한국 농담을 이해할 때 자신이 한국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고 하였다. 김제인의 경우도 부모님의 한인 정체성 강조와 함께 한국식 음식에 대한 자연스런 애착은 자신이 한인 정체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된다.

김제인: 저는 부모님이 미국에 있을 때 미국사람 아니라고... 꼭 한국 Korean-American 이라고 그렇게 키우셔서 계속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구 한국 음식이 더 맛있구... 네. 대학교가서 대학교 식당에 진짜 음식이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갈 때 라면하고 핫반하고 도시락 김하고 같이 싸먹고 고추장하고 그거 먹을 때 아~ 한국 사람이구나...

멕시코계 엄마와 한인계 아버지를 둔 Caren의 경우도 한국식 음식을 먹을 때, 한인계 친구들과 가족들을 만날 때는 코리안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고 했다. 특히 한인들은 강한 가족유대와 보다 닫힌 커뮤니티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삶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은 자신의 한인 배경과의 연결을 인식시켜준다.

Caren: 한인들은 매우 긴밀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강한 가족의식은 그래서인지 다른 집단이나 문화, 다른 인식들을 거부하기도 해요.

특히 Caren은 자신의 한국 이름을 이야기 하면서 남자 이름을 갖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한다. 위로 언니 둘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아들을 원해서 한국식 아들 이름을 지어놓고 있었다고 말한다. Caren은 미국에서는 전혀 몰랐던 아버지의 가족들이 한국에 많이 살아계셔서 방문 기간동안 이들을 만나느라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말한다.

2) 한국에서 이질감을 느끼는 정체성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재미한인 청소년들은 한국인의 핏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미국에서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느끼고 한국인의 후손이라고 느끼지만 한국에서는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하였다. 한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꿈을 갖고 있는 박규영의 경우 자신도 한국에서 한국어를 하게 될 때 “외국인”이 아님을 느끼게 될 것 같다고 말한다. 한국에서는 자신에게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할 것을 요구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지고 있다.

박규영: 제가 한민족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때가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마 미국에서는 제가 더 한국사람 같다고 느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좀 구석에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여기에 속한다고 느껴질 때, 그때는 외국인이라고 생각이 안들 것 같아요. 저는 아웃사이더 같아요.

일부 재미 한인 청소년들의 경우 한국체류기간 동안 한국에 적응을 하게 되기도 한다. 일단 생김새가 비슷한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데서 편안함을 느끼며, 가장 기본적으로 음식이 마음에 든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3) 정체성과 진로 선택

한국어를 배우면 향후 진로 선택에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특히 사업 분야에서 국제적인 업무를 담당하면 한국에서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때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유제롬의 경우는 한국어를 배워서 향후 사업이나 건축 분야의 진로에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최필립의 경우도 한국과 관련된 국제 비즈니스 분야로 진출하고 싶어한다. 또 미국 뿐 아니

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이혜진의 경우도 중국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살려 국제 업무에 종사하고 싶어한다.

유제룡: 한국말을 열심히 배우면 그러면 나중에 다시 돌아 올거죠. business 같은데...

business랑 architecture 들어가면 거기서 잘하면 한국에 와서 뭐 여기서 하던

지 잘 모르겠는데...미국에서 배우고 한국말 아니까 같이 되면 좋게 생각 되요.

질문자: 뭐 그러면은 필립씨가 생각하기에... 이런 Korea cultural background 같은 거
가 좀 나중에 advantage가 될 꺼 같아요?

최필립: 네. business하면 international 그렇죠.

질문자: 아까 international business. 한국에서의 경험이 career에 미래의 직업이랑
relationship 있을 거 같아요?

이혜진: 네. 그럼요. 중국 경제가 막 일어나고 있구요. 내 한국 배경이 중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또 다른 청소년은 사업과 관련된 일 뿐 아니라 장차 한국과 미국을 연계시키는 외교관련 일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하였고 미국에 살더라고 한인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아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한다.

정경은: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미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을 돕구 교포
들을 도우는 일도 하고 싶어요. 한국말을 사용하고 한국 사람과의 관계를 일으
키고 싶어요. 만들어 가는 거죠. 언어를 영어를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한테 도
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민 온 사람한테 그래서 외교적인 일을
안 해도 미국에서는 그런 이민 온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거를...

한국에 체류하며 한국에서 교사 일을 하고 싶어하는 박규영의 경우 한국어를 더욱 유창하게 하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MIS관련 전공을 마치고 회사에 취업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 둔 경험이 있는 그는 한국에서의 교직에 관심을 두고 있다.

향후 작가를 지망하고 있는 김제인의 경우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적 정서를 개발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재미한인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하는 그녀는 한국에 와서 자신이 진짜 한국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

게 되었다고 한다.

자신의 민족 정체성이 진로와 직접 연결되는 경우로 역사를 전공하고 있는 홍은하의 경우도 한인계 배경을 부정할 수 없음을 인식한다. 특히 그녀의 전공분야는 냉전시대 역사로 한국전쟁에 대한 사료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에 따라 한국에 와서 언어연수를 받고 한국역사에 대한 이해가 배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사회에서 소수민족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역사 및 문화가 학계에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민족적 배경을 아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자 진로 결정 시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2. 조선족²⁾ 청소년

1) 정체성 인식 계기: 조부모, 민족 집거구, 한국과의 접촉, 운동경기 응원

조선족 청소년들이 중국에서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경험할 기회는 매우 적었다. 단지 중국어를 잘 못하는 조부모를 만났을 때 자신들의 선조가 한국 땅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중국 국가 교육의 틀을 넘어서면서 자신들이 한민족이라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된다. 자신들의 과거가 이제까지 거의 설명되지 않았다는 것, 자신들의 선조가 어떻게 중국에 오게 되었는지를 사실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찾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다.

질문자: 한국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까. 보통 ‘내가 누구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할 때 한국인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나는 중국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임성: 지금은 주로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상은 한국 사람이니까 어떤 때는 한국인에 대한 감정이 있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한국 국적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 앞으로 자기가 ‘조선족이라고 하는 것을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잊어야겠다 조금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2) 중국동포 청소년을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선족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조선족 표현에 대해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여기서는 일상적으로 이들이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사용하기로 한다.

황진: 아니에요. 알고 싶습니다.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중국에 오지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할머니도 돌아가셔서 지금 할아버지만 살아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는데 저희 외할머니는 북한사람 이었습니다. 12~3세에 북한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외할머니의 아버지가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으러 중국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외할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우리 어머니가 태어났습니다.

이수균: 저는 스스로 친척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조상들이 어떻게 중국에 오게 되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런 역사에 대해서 저희 가족이 대가족이기 때문에 소설을 쓰고 싶습니다. 저희 큰 고모가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물어보려고 하고 자료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꼭 소설을 쓰고 싶습니다.

중국 내에서 소수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소수민족의 자치구역의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자치구역 내에서 민족 언어와 풍습을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이 모여 사는 기회가 없어지면서 이들의 민족 정체성도 점차 약해지게 된다.

질문자: ‘내가 조선족이다’라는 것을 언제 느끼게 됩니까?

강주: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의 고향은 시골인데 그 시골은 동네가 거의 다 조선족이에요. 다 조선족인데 한국말이 제일 많아요.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가는 사람들 많아서 거기에 가면 중국말 들을 수 없어요. 거의 다 한국말 써요.

질문자: 다 알아들어요?

강주: 제가 늦게 알아들어요. 기본적인 것은 알아듣는데 어려운 것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조선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계속 있었어요. 그때는 노인들이 다 한국분이어서 그렇게 관계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음악이나 음식이나 생활습관, 온돌방 안에 어떻게 배치하는 것 등이 한족과 아무튼 달라서 그래요.

질문자: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보통 한족이랑 다르고 만나는 사람이 조선족이고, 집이라든가 쓰는 언어라든가 음식 같은 것이 좀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노는 것도 다르군요.

강주: 노는 것도 말이 안 통하니까 그 시골 동네가면 거기서 친구들 잘 안 놀아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니면 혼자 놀아요.

이들이 한국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경험하는 또 하나의 계기는 축구 경기와 같은 각종 행사를 통해서이다.

김화연: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중국에서 게임 같은 것 있잖아요. 축구시합, 월드컵 같은 것 할 때는 중국이 다른 나라와 할 때는 중국을 많이 응원하고 한국이 다른 나라와 할 때는 한국을 많이 응원해요. 그런데 중국과 한국이 경쟁할 때는 망설이지 않고 그냥 봐요.

질문자: 누가 이겨도 좋다는 말씀인가요?

김화연: 누가 이겨도 다 좋지요. 그리고 중국에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제 기분도 따라서 좋고, 한국에서도 이제 북한문제가 많이 해결되어갈 때 그런 것이 많이 좋았어요.

질문자: 그러면 취미화씨는요?

최선휘: 저는 여기 와서 특히 크게 느끼게 되었어요.

질문자: 중국에 있을 때는 많이 못 느꼈나요?

최선휘: 중국에 있을 때는 조선인, 조선족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알고 있어요. 한국과 경기 같은 것을 하면 어떤 때 중국을 응원하고 있을 때가 있으면 한국 사람들이 조선족인데 왜 한국 응원하지 않느냐고 물어볼 때도 많았어요. 그래도 그 때는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여기 와서 크게 느꼈어요.

황진: 특히 축구경기를 할 때 한국팀과 다른 나라가 경기를 하게 되면 항상 한국팀이 이겼으면 하는 마음과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게 될 때 항상 한국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들에서 그러한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한국의 축구경기를 보게 되면 함께 한국을 응원합니다.

질문자: 그러면 중국과 한국이 경기하게 되면 어떤 팀을 응원하게 됩니까?

황진: 저는 중국 팀을 응원하게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한국팀을 응원합니다.

2) 국가 정체성 대 민족 정체성

20세 전후의 조선족 청소년들은 중국에서 태어난 부모 밑에서 자라났으며 중국의 주류사회에 편입하기 위해 일반 한족 학생들과 동일한 조건 속에서 성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은 조선족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학교에 다니고 집에서도 중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어를 잘 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의 상상 속에서 한국과의 연결은 매우 희미하다고 할 수 있다. 스스로를 “중국인”으로 여기고 있으며, 소수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스스로 “조선족”이라는 생각을 하면 살아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한족 친구들과 섞여 살면서 자신이 조선족이라는 것을 확인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와 민족의 경계선이 일치한 상황 속에서

살아 온 한국 사람들이 “민족”이란 정체성을 통해 중국 조선족을 바라보려고 하지만, 조선족 청소년의 경우엔 중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이 소수민족으로서의 조선족 정체성보다 훨씬 중요한 정체성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민족이란 정서/개념을 갖기에는 중국 조선족 청소년들은 중국인이라는 국가 정체성이 너무 강하고, 조선족이라는 (한국에 오면 소외를 경험하는) 정체성이 너무 부담스럽다.

권서화: 내가 왜 한국인이냐고 나는 중국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중국에서 자라서 ‘나는 중국인이다’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대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한국 사람들을 많이 접하고 나니까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건너가고 우리가 말이 통해서 우리는 한민족이다’ 그래서 ‘한국인이다’라고 말했는데, 중국에 사는 조선족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은 56개의 민족이 있는데 모든 민족을 합쳐서 중국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 중 하나가 조선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배우고 접하기 때문에 나는 중국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략) 지금은 ‘중국조선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 정체성과 진로선택

향후 진로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 한국의 일반 청소년들의 모습과 큰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이들은 좋은 대학, 전망 있는 학과에 진학해서 공부하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꼭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었다. 가능하다면 한국보다 더 나은 사회, 더 가능성 있는 사회를 선택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민족의식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들이 중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가능한 혹은 손쉬운 통로였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현실에 가까운 설명일 것이다. 강주의 경우 (비록 현재 한국 국적을 신청하고 있지만)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능력을 굳이 자신의 미래로 연결시키고 싶어하지 않았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나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이 결코 그에게 매력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는 할 수만 있다면 스웨덴 같은 곳-계급과 민족의 위계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곳-으로 가서 한국어 이외의 자신만의 또 다른 능력을 통해 살아가면 좋겠다는 상상을 하고 있다.

질문자: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취직하고 싶어요? 아니면 중국에서 취직하고 싶어요? 생각해 본적이 있어요?

강주: 다른 나라에 가고 싶어요.

질문자: 한국이나 중국 말고 다른 나라요? 어느 나라입니까?

강주: 유럽쪽으로 가고 싶어요. 스웨덴에 가고 싶어요.

질문자: 스웨덴은 어떻게 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강주: 텔레비전 보니까 거기가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일하는 것을 봐도 별로 힘들지 않고요. 저는 젊으니까 여러 곳에 다녀야 하고 많이 보고 지식을 많이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질문자: 그러니까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능력을 기반으로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군요?

강주: 나중에 거기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싶어요.

질문자: 학위를 또 그런 곳에서 받고 싶다는 얘기네요? 유럽에서요?

강주: 아니면 거기서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권서화의 경우에도 사실은 조선족이라는 지위는 연변과학기술대를 입학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대학에 유학 나오는 과정에서도 조선족이라는 것 때문에 한국과의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었고 결국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나오게 된다. 하지만 권서화는 자신이 조선족이라는 것을 결코 자원으로 이용하고 싶은 생각을 갖지 않고 있으며, 자신이 조선족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취직할 생각도 없다. 그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성취를 이루는 기회로 삼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한국을 넘어서 더 큰 세계로 유학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다.

질문자: 그러면 여기에 얼마 동안 머무르게 됩니까?

권서화: 2년 정도 머무를 것 같아요. 제가 졸업하면 떠날 것 같아요.

질문자: 그러면 1년 반 정도 더 남아 있네요. 그것을 마치면 중국으로 귀국할 생각입니까?

권서화: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시다. 아마도 한국을 떠날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 다른 곳은 어디요?

권서화: 다른 곳에서 유학을 좀더 하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조선족이라는 지위는 한국어 습득, 한국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한국 유학을 위한 각종 정보에 있어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 그리고 한국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능력은 이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임성은 중국의 한 무역회사를 다니면서 한국에 몇 차례 왔었다. 그러다가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현재는 한국에서 회사를 찾고 있다. 임성의 부모는 한국에 귀화하고자 하는데, 따라서 임성의 부모는 그가 한국에서 취업하기 바라고 있다.

질문자: 부모님은 임성 씨가 한국에 머무는 것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임성 씨가 원하신다면 중국에 가서 다시 일하기를 원하세요?
 임성: 부모님은 한국에 있는 것을 원합니다.
 질문자: 만약에 돌아간다면 어떤 일들을 하고 싶습니까?
 임성: 한국과 관련된 무역업을 하고 싶습니다.

중국에서 조선족 학교를 졸업한 최영미, 최선화, 김화연의 경우에도 자신들의 조선족이라는 위치와 능력을 이용해서 중국과 한국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생각하고 있다.

최선화: 저는 원래 한국에서 대학교를 경영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중어중문과로 가서 중국어를 다시 배우려고요.
 질문자: 그래요?
 최선화: 중국에 산다고 해도 중국어를 잘 배우는 것은 아니니까요. 한국에서 배워두는 것도 배우고, 저는 될 수 있으면 열심히 해서 박사공부까지 하려고요. 그래서 본래는 사업가를 하고 싶었어요. 일단은 먼저 열심히 해서 박사 공부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중국하고 한국 사이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요.
 최영미: 저는 자기 성격과 취미를 결합해서 일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사람 사업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일단 중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대학원을 지망하려는 생각입니다. 외국어 대학 통역관련 학과를 다녀서요. 이제 통역을 잘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를 충분히 알아서 여러 가지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또 일본어를 포기하지 않고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잘 배워서 통달하게끔 그렇게 생각해서 작은 힘이라도 이바지 하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이들 청소년들은 실제로 한국 방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장래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과의 연관성/조선족이라는 지위를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생활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민족의식”이

나 “한민족”의 연대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자신의 처지에서 자기 개인의 성취를 위한 최선을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한민족이라는 통로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 그리고 조선족 청소년들에게 조선족이라는 정체성은 그리 매력적인 정체성이 아니다. 물론, 김화연, 최선화의 경우처럼 조선족 학교를 다녔고 (민족의식에 입각한) 한국 역사 강의를 들은 경우에는 좀 더 강한 민족의식을 갖게 되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최영미의 경우에는 이 두 사람만큼 강한 한민족으로서의 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다. 그녀에게는 국가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3. 재일한인 청소년

1) 정체성 인식계기: 부모, 친척, 특정 사건

재일한인 청소년들의 경우 정체성 문제에 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가 있지만 정체성 혼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면담 참가자 중 한 명인 김조국의 예에서 보듯이 이름부터 ‘조국’이라고 붙이고 거의 강압적으로 한국인임으로 강조하고 자식의 일생을 결정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자식이 한국 핏줄이라는 것은 이야기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부모 세대에서 자식의 아이덴티티를 교육하면서 스스로 심각한 혼란에 빠지는 것을 볼 수도 있다. 일부 재일한인들은 고교생이 되어서야 자신이 재일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부모의 소극적인 은폐가 보이며, 자식이 알아채도 할 수 없다는 태도 정도로 생각된다. 면담 대상자였던 사츠키의 부모도 자식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생각하는 데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어 오히려 반발을 사게 만들었다. 이런 것들은 부모 세대가 겪는 아이덴티티의 혼란을 자식에게 투영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차별을 실감하며 자란 부모 세대에 비해 자식 세대는 보다 적극적이고 유리하게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규정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질문자: 최초로 왔을 때 뭔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보조는?

김조국: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따로 정착하게끔 만들어주는 기관이나 그런 건... 왜냐면 특히 아버지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다. 어학당도 다니지 마라.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저는 언어도 부족했는데 그냥 수업

에 들어가고.

질문자: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김조국: 다른 재일동포 친구들하고 사귀지 마라. 그런 식으로 애기했어요. 넌 한국인들과 잘 어울려서 한국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사츠키: 환경도 중요하죠. 우리집은 원래 총련계인데 한국인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해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일본인과 결혼한 형제도 있는데, 아버지는 한국인과 결혼해야 된다고 합니다. 고교까지는 아버지가 한국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여 본명을 사용했습니다. 고교생이 되고부터는 제가 정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교부터는 취직과 관계있기 때문에 일본명으로 바꾸라고 해서 반발했습니다. 어머니도 고교 때 통명에서 본명으로 바꾸었는데 아버지는 조선학교 출신입니다. 맘에 들지 않았어요. 부모의 염려는 이해가 가요. 차별을 직접 경험했으니까. 우리 3세가 되면 차별은 거의 없어졌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대로 살면 된다는 거죠. (중략) 씨는 한국인인데 일본에서 태어났다. 그 뿐이지 깊이 생각 안 해요. 살아가는 데 어릴 때는 한국인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귀찮으니까 그냥 지나친 거죠. 시대도 변하고 나이도 먹어서인지 어떻게 상관없다고도 생각하고 한국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질문자: 알 것 같아요.

사츠키: 부모에게 계속 넌 한국인이란 소리를 들어 왔는데, 모순은 그러면서도 한국어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한국에 데리고 가 주지도 않고, 엄청 모순 아닌가요? 어릴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름도 본명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고교생이 되니까 통명을 쓰라고 하고.

재일교포는 남한 출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친척들을 찾거나 방문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재일교포들은 한국의 친척들이 생활이 어려울 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고 자식들의 교육을 도와주기도 했다. 그런 경우에는 후손들끼리도 교류가 지속되어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친척을 찾거나 만나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것 같다. 부모 세대에서 청소년들에게 친척과 적극적으로 만나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친척과 만나지 않도록 하기도 한다.

질문자: 혹시 본관은 아세요?

최은화: 본관은 경주 최 씨예요.

질문자: 거창에는 경주 최 씨가 있긴 있을 텐데 할아버지 고향하고의 접촉은 혹시...

최은화: 거의 없어요.

질문자: 시도 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도요?

최은희: 네. 가정상황이 복잡해서... 재일교포 경우 그런 게 많아서요. 이모 시택에서 이모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저희 외할아버지가 시아버님 유골을 한국으로 가져가셨는데요. 그때에도 복잡한 일이 생겼단 얘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재일교포 중에 강제로 끌려오신 분들도 많은데, 어찌다가 일본에 남게 되신 분들은 가정사정이 복잡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 집도 그런 것 같아요.

재일교포들은 조선학교에 다니면서 매일 매순간을 한국인이라고 각성시켜 주는 환경이 아니면 한민족과 관련된 자의식을 가지기는 어렵다. 조총련에 소속하고 조선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도 가정 내에서는 모두 일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자신이 학교 밖에서까지 항상 재일한인이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지는 않다. 일본학교에서 같이 다니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국적의 차이는 그리 의식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의식되는 것은 특별한 장면에서만이다. 가령 출입국관리국이나 국적이 표시된 서류에서이다. 국적이 현실적인 장애가 되는 것은 취직을 할 때인데 기업에서 국적 차별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항상 의식이 되는 문제인 것 같다.

질문자: 한국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미찌코: 친구와 여권이 다르죠. 수학여행 때도 그랬고, 저는 고교에서 영어 코스를 선택해서 뉴질랜드로 갔어요. 여행 수속에서 다른 아이들과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16세가 되면 외국인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게 크죠. 그리고는 운전면허증에 국적이 한국으로 되어 있고, 이럴 때 나는 역시 한국인이구나 하고 다시 실감하죠. 그리고 친구와 대화 중에 제사 이야기를 하면 일본 아이들과 다르다는 걸 알고 자신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죠.

송경순: 저는 집안에서도 조선 사람으로서 교육을 받았고, 일본사람과도 조금 다른..

장희성: 그래도 민족정신은 갖고 있어요.

송경순: 축구에서 보면 월드컵이 있잖아요. 한국 대 일본의 시합을 하면 한국을 응원하고 한국 대 조선이 하면 조선을 응원해요.

질문자: 일본하고 중국하고 축구하면?

장희성, 송경순: 그건 일본.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재일한인 청소년들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총련계냐 아니냐에 따라서 축구 경기에서의 응원 국가도 남이냐 북이냐가 선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선적을 가졌던 청

소년들은 실리적인 목적 때문에 한국 국적으로 바꾸기도 한다. 조선학교에서 민족의식을 강하게 교육받았던 장희성과 송경순은 취업과 출입국 상의 편리를 위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질문자: 국적은 한국 국적을 가졌어요?

장희성, 송경순: 한국이에요.

질문자: 여번에 들어올 때 바꿨어요?

장희성, 송경순: 월드컵 때.

질문자: 한국국적으로 북조선에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죠?

장희성, 송경순: 네

질문자: 조선국적으로 한국에 들어올 때 싫은 소리가 있었죠?

장희성: 네.

2) 혼란스러운 정체성

한국의 해외교포 중 민족적 정체성에 대해 가장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재일교포인 것 같다. 그 이유는 혼란스러울 정도로 여러 가지 차원으로 정체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국에 들어와서도 이런 혼란은 반복된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어를 잘 구사하고 못하고, 주민등록법상 한국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여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생활경험은 한국에 체류하면서 자신은 더 한국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해지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질문자: 한국인이라고 할 때 한국인이라는 범주를 어떤 식으로 판단하나요?

김조국: 예. 우선 저는 스스로 지금은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은 잘 안 해요.

왜냐면 저는 군대를 안 가고 그리고 여기에 일 년 이상 연속적으로 체제를 못 하거든요? 일 년에 한번 꼭 외국에 나가야 되요. 여권 행정상.

질문자: 그건 왜 그러나요? 재외국민이라서 그러는 건가요?

김조국: 재외국민이라서 그래요.

질문자: 재외국민이라는 건 한국여권을 가지고 있지요?(예) 근데 호적은 한국에 없나요?

김조국: 호적은 한국에 있어요.

질문자: 근데 주민등록증이 없나요?

김조국: 예.

질문자: 주민등록번호 발급 신청이라는 이런 것도 없나요?

김조국: 있어요. 근데 제가 발급신청을 하면 군대에 가야 되요.

질문자: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같은 건 어떻게?

김조국: 없어요. 지금.

질문자: 원래 의료보험 혜택이 없는 건가요? 원래 의료보험 가입할 수 있는 틀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김조국: 그니까 외국인으로서 아니면 해외동포로서 거소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주는, 그걸 작성하면 된대요. 저도 몰랐는데 얼마 전까지.

질문자: 의료보험은 가입할 수 있는 거죠?

김조국: 그걸 작성해서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번호를 받아야 가입할 수 있죠.

질문자: 가입할 생각은 없나요?

김조국: 가입해야죠. 빨리. 요즘에 알아가지고, 저도.

사츠키: 한국에 와서 의외였던 건, 일본에 있을 때가 재일한국인이라는 것은 의식하고 있었어요. 양친의 영향으로 일본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게 동기가 돼서 자신은 한국인답게 살겠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서 나는 역시 한국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사실은 내가 여기 와서, 한국인이라는 생각이 강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말을 배우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변해 갈 것인가가 기다려지는군요.

이들은 한국에서도 귀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일본에서도 정주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이중의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다. 결국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유목민처럼 존재의 본질을 찾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지만 이들의 여권, 주민등록상 거주지 등 다양한 법적, 제도적 정체성은 이를 쉽게 허락하지 않고 있다.

김조국: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갈등하게 되면 저도 그랬지만 유목민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유목민이라는 아이덴티티에 걸 맞는 행동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면 해외여행에도 가고 싶고 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고 그런 욕구가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요건이 안 되가지고 못했는데.

3) 정체성과 진로 선택

재일한국인으로서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닌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느끼기도 하지만 자신은 두 나라를 매개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인 위치에 있다고 인식하기도 한다.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최은희의 경우 자신은 장애에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 인식 갈등을 중재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은희: 제가 지금 역사를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게, 역시 역사인식 문제의 갈등이 많이 생겼잖아요. 위안부문제 그렇고 강제연행 문제 그렇고...한일 간의 안 좋은 분위기가 있는데요, 그런 걸 해결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일본에서 태어났고 혈통은 한반도에 있고 하니까 둘 다 자기 나라라고 생각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양국 간의 관계가 더 좋아지게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인 입장에서 일본인 입장도 어느 정도 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중개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데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재일한인 청소년들의 경우 대체로 한국에 남거나 한국 관련 일을 하는데 긍정적이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그리 좋지 않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된 경우에도 이후 한국과 지속적인 접촉을 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이들은 한국과 일본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하며, 한 곳에 정착하기 보다는 “왔다갔다”하는 삶을 살고 싶어한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에서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을 선택한다는 쪽이 우세하다는 느낌이다.

김조국: 저는 원래 꿈이 교수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박사는 하고 싶는데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분야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뭔가 학술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대중적으로든 간에 일본과 한국을 맺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질문자: 그니까 교수가 된다면 한국 대학에서 하고 싶어요? 혹은 일본 대학에서 하고 싶어요?

김조국: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질문자: 한국에 남고 싶다는 기분이나 계획은?

미찌코: 남고 싶지만, 일본 학교 그만두고 여기 편입하고 싶은데요, 이화의 수준이 높아서 졸업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일본의 대학 졸업하고 일본과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일부 면담참가자들은 한국에서 배운 언어나 관련 분야를 살려 직접적으로 한국에 취업하기보다는 일본에서 직업을 가질 생각을 하고 있다. 또 직접적으로 진로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향후 사회생활에서 재일한인으로서 한국어와 한국사회에서의 경험을 살려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의 오해를 감소시키거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질문자: 어렵게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데 이것을 살려서 앞으로 진로를 정한 것은 있습니까?

미찌코: 제일이니까 한국인이 하는 말도 알지만 일본인의 기분도 알죠. 예를 들어 독도 이야기를 할 때 일본인과 한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전 그런 것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한국인 친구가 말을 하고, 역사를 잘 아는 일본인 친구가 얘기를 하고 다투는 거죠. 양쪽 기분을 다 아니까 그럴 때 제가 사이에서 조정을 할 수 있죠.

미찌코: 비즈니스나 거래를 할 때 나는 한국인과 일본인과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 고려인³⁾ 청소년

1) 정체성 인식 계기: 한국 상품, 한류, 한국어, 음식

고려인 청소년들의 경우 한국 상품의 품질이 좋아지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한국 유학생의 러시아 진출이 늘어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장 안젤라: 요즘에 고려인들 한국에 대한 관심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질문자: 안젤라가 생각하기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왜 많아지는 거 같아요?

장 안젤라: 여러 가지 LG나 삼성 되게 유명한 회사에 게다가 유학생도 많고 좋은 편이죠...

또한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드라마, 음악, 문화 등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니까: 한국 드라마, 음악, 문화 같은 것은 젊은 사람한테 큰 영향을 주었는데 그래서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한국어 그리고 한국에 대해 관심이 생겼습니다. 고려인들은 오늘날 잘 사는 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려인들이 잘 사는 민족으로 여깁니다. 아마도 옛날에는 살기가 좀 힘들었지만 그래서 고려인들이 잘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습관이 남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점차 자신의 민족정체성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기도 한다. 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다가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서 같은 민족임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음식도 비슷하고 김치를 먹는 것도 같다고 말한다.

3) 여기서는 독립국가에 거주하는 한민족 청소년을 일반적으로 독립국가의 한인들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용어인 “고려인 청소년”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하지만 한민족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지 한국인의 정체성과 동일시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정체성은 고려인으로 대표된다.

질문자: 본인이 고려인으로서 강하게 느낀 적 있으세요?

쑈냐: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민족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지 5년 되었습니다. 처음엔 외국어로 배웠고요. 그런데 점점 자기 모국어로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얼굴도 비슷해서 아, 많이 닮았구나! 그런 느낌도 느끼고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식도 많이 비슷하지 않지만 같은 점이 있습니다. 김치 보면 고려인들도 김치라고 하지 않고 ‘침차’라고 하고 국수 같은 것도 반찬도 많이 비슷해요.

이들의 고려인 정체성, 즉 자신이 한민족이라는 의식은 본국에 있을 때 더 강하게 나타나며 오히려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한다. 러시아에서 생활할 때는 외모에서부터 오는 차이, 음식, 부모의 한국어(고려말) 사용 등을 통해 완전히 러시아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지내지만 막상 한국에 오면 한국음식을 먹는다고 한국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낀다.

장 안젤라: 태어났을 때부터 김치 먹으면 한국인이죠.

질문자: 그러니까 집에서 아직도 김치 해서 먹어요?

장 안젤라: 한식...

질문자: 한식 먹고 그럼 집에서 한국말...(여기는 한국사람 사용하는 한국어가 아닌 고려사람 사용하는 말은 고려말이다.)

장 안젤라: 부모님들끼리...

질문자: 부모님들이...

장 안젤라: 저한테는 안하시고 왜냐면 옛날에 고려말 못했을 때 부모님들이 고민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질문자: 아. 자식 못 알아들게...

장 안젤라: 예. 이제 알아들잖아요. 혼내세요. 비밀 이야기도 못하시고...

질문자: 그러니까. 부모님도 한국 왔다 간적 있으세요?

장 안젤라: 아버지가 사업하셔서 옛날에 한국이랑 관련해서 다녔구요. 그러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어머니는 여기 오신 적이 없어요.

질문자: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자신이 Korean 한민족... Korean ethnic 한민족이라는 걸... 고거를 언제 제일 강하게 느끼세요. 난 이제 한국 사람이다. 그런 느낌...

장 안젤라: 러시아에 있을 때요. 왜 그러냐면 러시아 사람만 있으니까 무시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느낌이 나오죠. 내가 완전히 러시아 사람 아니다. 그런 느낌도 나오고. 외모도 다르고 그런데 여기 오면 내가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런 느낌...
질문자: 여기 와서는 한국 사람이라는 느낌보다는 좀 러시아 쪽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장 안젤라: 솔직히 말을 하면 여기엔 김치만 먹으면 한국사람 아니죠.

2) 상황에 따른 정체성, 다중 정체성

고려인이라는 정체성은 이들이 살고 있는 본국이나 현재 체류하고 있는 한국에 서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들이 사용하는 고려인 정체성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들은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에서는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별 의문 없이 고려인이라고 말했지만 제3국에서 자신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직면했을 때는 러시아인이라고 말하게 된다고 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정체성이 다르게 정의되는 것과 관련된다. 외국에 나갔을 때는 자신의 출신국가 국민임을 내세우는 게 더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따냐: 고려인 대해? 음..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저를 고려인으로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에 이사해도 모두 물어보았을 때 무슨 민족이냐? 제가 “나는 고려인이다.”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가지 뿌리를 고려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몽골에 왔을 때 늘 아주 자신 있게 대답했던 “나는 고려인이다.”라는 말을 자신 없게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언어, 문화 그리고 전통이든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 때는 “나는 러시아인이다.”라고 하면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들의 고려인 정체성은 한국에 와서도 한국이나 북한 사람과는 다른 제3의 정체성으로 드러난다. 아래의 사례도 자신의 거주국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고려인 정체성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한국인과 동일시되지 않고, 한국인이 아닌 고려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인다.

니까: 저는 북한 사람도 아니고 남한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고려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우즈베크 아이들이 일본으로 중국으로 아니면 한국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때 제가 나는 고려 사람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에 왔어도 한국 사람으로 느끼지 않아요. 언어 그리고 문화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 느끼지 않고 외국인으로 느낍니다.

역시 한국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은 외국인이며, 언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인과 다르다고 말한다. 단지 한국은 조상의 고향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며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안드레이: 제가 “나는 한국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한국에서 외국인입니다. 외모만 비슷하지 언어이든가 문화든가 많이 다르죠. 카자흐스탄에서 카작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한국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우리 역사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으로 거의 대부분 봅니다. 저도 제가 고려인으로서 자랑스럽다 아니면 실망스럽다라고 하지는 않고요. 그냥 자기 조상 고향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재미로 알고 싶습니다.

고려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처음에는 이것도 저것도 확실치 않은 부정적 정체성이었지만 한국에 와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보다 풍부한 정체성으로 거듭나기도 한다. 자신의 국적은 우즈베키스탄, 사용하는 언어는 러시아어, 민족 배경은 고려인이며, 이름은 러시아식 이름이지만 성은 한국식 성이어서 명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대답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러한 다양한 배경은 유럽식, 동양식, 한국, 북한, 고려인등을 아우르는 풍부한 사고방식을 갖게 해준다는 장점을 깨닫게 된다. 아래 김 안젤라의 진술은 혼란스러운 정체성이 거듭나는 과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

김 안젤라: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 있었는데 많은 한국인들이 우즈베키스탄으로 들어왔습니다. 항상 한국 사람들하고 만나면 그들의 질문에 “넌 누구야?”라고 하면 대답할 때마다 망설입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정확할건가? 여권을 보면 국적은 우즈베키스탄입니다. 민족은 고려인으로 되어 있고 러시아말로 합니다. 이름을 볼 때 마찬가지로입니다. 성은 한국성인데 이름은 러시아 이름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가? 올바른 대답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어떤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우즈베크 고려인으로 부르고 어떤 한국 사람들이 고려인으로 하고 나머지는 왜 고려인으로 하느냐? 고려인은 한인이라고 했습니다. 민족은 똑같은데 그냥 다른 곳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때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우리는 진짜로 하늘 땅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피하고 싶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후 그런 질문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냥 저는 고려인 4세입니다 라고 합니다.

한국에 왔을 때 아주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한국에 왔는지 집에서 부모님들하고 있을 걸 후회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을 생각났습니다. ‘넌 혼자 그런 길을 선택하고 한국어를 꼭 배워야해. 한국에 꼭 가야 돼. 한국은 네 조상고향이다.’라고 자주 하셨습니다. 우리 대학교에 외국학생을 위한 말하기 콩클이 있었습니다. 제가 1등 했습니다. 제 말하기 제목은 ‘어느 청소년의 이야기’이었는데 그 내용은 어느 날 한 청소년은 고려말, 조선말, 한국말 단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같은 질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한국에 유학으로 왔습니다. 그 청소년은 바로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집니다. 지금 자랑스럽게 안녕하세요라고 할 수 있고 우리 할아버지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청소년이 저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자랑스럽게 그 얘기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엔 그 때 우리 할아버지가 도와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울었습니다. 그 순간에 진짜 고려인으로서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한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한 가지 사고방식이 아니라 여러 동방, 서유럽, 유럽적인 방식입니다.

3) 정체성과 진로선택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독립국가연합 출신 한민족 청소년들은 한국어를 더 배우고 한인들의 네트워크 역할을 하고 싶어한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한국과 관련된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한다. 러시아에서의 구직 가능성이 낮은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의 러시아 관련 기업에 취직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

쏘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석사 과정 공부하면서 한국어를 더 배울 생각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살고 있는 고려인들이랑 연결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지.. 앞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번역 필요한다면 번역해 줄 수 있습니다.

장 안젤라: 왜 그러냐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한국말 잘하는 사람 별로 관심 없고 필요하지도 않고 필요 없고... 러시아 그냥 한국이랑 관련 한 것도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있기는 한데 한국에서 뽑아요. 직원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 그러니까 승진도 할 수 없구요. 게다가 우리 한국과 졸업한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우리 선배들 취직해야 되잖아요. 저도 취직해야 되는데 딱 보면 선배들이 한국말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취직할 수 있을까요.

질문자: 그럼, 한국에서 취직 하는 게 더 좀 가능성은 많은 거예요?

장 안젤라: 네, 많죠.

질문자: 한국에서 러시아 말을 필요로 하는 이런 회사...

장 안젤라: 여기에 회사는 많죠.

질문자: 중앙아시아로 진출하려는 회사들에 취직하는...

장 안젤라: 러시아뿐 만이 아니라 중앙아시아도 있잖아요.

질문자: 그러면은 선배들 중에 고려인 선배들 중에 이렇게 한국회사에 취직한 선배들은 있어요?

장 안젤라: 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려인들 러시아 사람이지만 외모는 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재미있게 지낼 수 있어요. 사고방식 거의 비슷비슷하고 좀 편하게 일할 수 있어요.

5. 기타국가 거주 한인 청소년

1) 정체성 인식 계기: 특정 사건, 음식, 운동경기, 한국기업

동남아시아나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서 살아가던 청소년들의 경우 특정사건을 접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운동경기나 한국기업 진출을 목격할 때 한국과의 관련성을 인식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민족 정체성 보다는 한국인인지 아닌지 하는 한국인으로서의 인식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살아가던 이들의 삶에서 막상 자신의 법적 지위나 제도가 동원되어야 할 상황에서는 정체성에 대해 의식하게 된다. 어린시절 독일에서 보내고, 이후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사는 미국의 한 지역에서 중,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곳의 아시아계 이민자들과 별 차이없이 지내던 박진영의 경우, 막상 대학입학과 학비 재정지원 자격에서 미국시민권이 없었던 자신은 외국인임을 깨닫게 된다.

박진영: 독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중, 고등학교는 미국의 Orange county에서 보냈거든요. 그리고 Orange county에는 아시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 문화가 섞인 곳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게 다양한 문화가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종차별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라든가...

특히 저는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제 친구들은 저 보다 짧거나 거의 같은 기간 동안 있었지만,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에 속한다는 느낌은 없어요.

질문자: 하지만 그런 법적 지위는 그냥 공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나? 자기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한 거 아냐?

박진영: 그렇긴 하지만 정작 대학에 지원하려고 보니까 저는 단지 ‘외국인’에 불과하더라구요. 미국 시민에게는 굉장히 열려있는 시스템이지만, 외국인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가령 장학금이라든가 하는 게 전혀 주어지지 않아요. 사실 버클리에 지원해서 되긴 했는데, 재정적인 문제로 그냥 포기했어요. 학생 대출이나 이런 것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년에 \$35,000 이나 내야 하는데... 저 말고도 이런 문제에 당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9/11 이후에 외국인을 배척하는 분위기라서... 그래서 인종차별과 이러한 법적 지위 문제 때문에 그곳에 속한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또 다른 면담참가자는 한국인이 되게 만든 특정사건으로 ‘수능’을 들었다. 단순히 언어, 문화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절차를 밟았기 때문일 것이다.

서효진: 내가 한국인이라고 특별히 느낄 때는...수능 봤을 때, ‘나 내가 한국인이구나’,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를 느꼈어요. (웃음)

문화적으로 한국인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의견은 주로 ‘음식’과 관련된 것이었다. 다음의 제보자 장현석, 김혜리 모두 다른 건 몰라도 음식만큼은 한국음식을 선호하게 되는 것을 기술하였다.

질문자: 한국과 떨어질 수 없다 하는 느낌을 받을 때는 없나?

장현석: 음... 잘 모르겠지만... 음식에 있어서는 한국 문화와 절대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질문자: 집에서 한국 음식을 먹으며 자랐기 때문에?

장현석: 네, 고등학교 다닐 때, 서양음식을 하루 세 끼 다 먹었거든요. 그래도 별 문제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부터는 한번 피자나 햄버거 먹으면 그 다음 식사는 꼭 한국음식을 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김혜리: 저도 입맛은 2년 전에 비해 많이 변했어요. but 요즘 들어서 맵고 시원한 게 맵기는 거예요. 뭐 어디가자 하면 ‘내가 웬일로 한식을 찾냐’하고.

음식과 함께 스포츠 경기에서 한국을 응원 할 때 한국인 정체성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으며, 일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서도 한국인 정체성을 공유한다고

생각하였다.

손규찬: 월드컵 같은 때 응원하고 그럴 때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요. 야구도 한일전 같은 경기를 할 때 응원하고 할 때 내가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같아요.

박종순: 일본을 싫어하게 되는 것도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일본인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들은 외국에 거주하는 동안 한국과 관련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 부모의 한국 선호 때문에 은연중에 한국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키게 된다. 특히 한국의 대기업 브랜드 가전이나 통신제품이 외국에서 광고되고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 행사에서 한복이나 한국 음식이 나왔을 때 자부심을 갖기도 한다.

소형준: 한번은 아빠와 함께 미국에 갔는데, 라스베이거스요. 카지노에 놀러갔어요. 천장에 아주 커다란 스크린이 있고, 멋진 쇼를 보여주었거든요. 그런데 쇼 중간 중간에 LG 광고가 뜨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이들이 본다고 생각하니까 기분 좋았어요.

질문자: 하지만 LG는 그냥 한 회사에 불과하지 않나?

소형준: 네, 하지만 그렇게 큰 비즈니스 도시에, LG가 떴다는 것은... 어쨌든 그런 걸 보면 ‘그래, 나는 한국인이야’.

이정현: 저도 LG 핸드폰만 보면 자랑스러워요. 한국에만 있었으면 잘 몰랐을 텐데..

김혜리: 저희 부모님 때문에 그런가봐요. 저희 부모님께서 한국에 관련된 이름이 어디 나오기만 하면 좋아하시거든요. 아마 부모님과 친하다 보니까 저도 영향을 받았는지, “어, 삼성, 엘지 들어왔네” 하고 그렇게 조금씩 코멘트하는 게 세뇌가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케냐에서도 뭘 보면 “어 삼성이 서포트해줬네”하고 느껴요. 근데, 막상 그게 삼성 이름을 못하는 게, 왜냐면 owners are not Koreans. 그래서 한국 거라는 걸 잘 몰라요.

2) 제3의 정체성, 글로벌 시민

여러 나라에서 거주하거나 거주했던 제보자들은 각기 국가에 명확히 속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한국에 대해서도 유아, 청소년 상당 기간을 떨어져 살아서 그런지 국가를 기반으로 한 명확한 정체성을 느끼기는 어려운 듯 하였다. 다음의 제보자들은 자신이 한국도 다른 나라에도 절대적으로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

다. 특히 소형준의 경우 필리핀에서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international school에서 친하게 지낸 친구들은 거의 미국 친구였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미국 친구들과 더 공유하는 부분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미국인과는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이호영의 경우엔 인도네시아에도, 미국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속하지 않는 모호한 정체성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제3의 정체성을 가진 아이들(Third Culture Kids)”이라고 스스로 정의하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출신국이나 성장국이 다르며 성장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그 국가의 대표적인 학교가 아닌 외국인 학교에서 교육받은 경우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모호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아예 “글로벌사회의 시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이호영: 전 어떤 ethnic group에도 속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 단지 TCK일 뿐이죠.

질문자: TCK가 뭐지?

이호영: TCK. Third Culture Kids. 자기 자신만의 ethnicity라 할 수 있죠. 어느 한 문화에 속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인도네시아에도 제 주변에 보면 저와 비슷한 친구들이 꽤 있어요. 정의를 내리자면... 그냥 대충 아무다 다 들어갈 수 있는 범위이지요. 부모의 출생 국가가 아닌 곳에서 성장기를 보낸 사람이라면 다 이러한 집단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독일을 국적으로 하는 장현석의 경우에도 굳이 독일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다. 독일적이지도 않고 한국적이지도 않은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것을 이유로 들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모호하다고 하였다.

장현석: 전 독일에서 자랐지만, 한국 가족 밑에서 자랐죠. 그리고 American Institution에서 교육을 받았구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이것저것 다 섞어놓은 것 아닐까요. 누군가가 저보고 어디 출신이냐고 물으면 그냥 전 a citizen of the global society라고 대답하죠.

3) 정체성과 진로 선택

많은 제보자들이 대학 이후 한국에서 진로를 계속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다. 특히 대학원을 외국에서 선택하는 경우에는 거의 그 곳에 영구히 머물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인도네시아 출신 이호영의 경우, 한국에서의 진로도 고려를 하고 있었다. 한국에도 인도네시아에도 속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한국에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질문자: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마친 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 한국에 계속 있을 생각도 있나? 30살 정도 되었을 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호영: 아마 한국에 머물 거예요. 대학원도 가고, 왜냐하면 한국에서 일하고 싶거든요.

질문자: 한국에서 어떠한 직장을 잡고 싶어?

이호영: 스포츠 의학을 하고 싶어요. 여기서 일하려면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미국으로 가게 되면 아마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잘 모르겠기도 하고.. 하지만 하고 싶기도 해요. 한국이 변해가고 있으니까 가능할지도 몰라요.

이 밖에도 진로 결정에 있어서 한국 문화에 익숙한 점을 들면서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제보자도 있었다.

질문자: 유학 갔다가 한국에 돌아올 생각인지?

서효진: 만약 외국에서 직장을 얻게 되면, 기회가 되면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한국이 편한 것도 있으니까.

질문자: 한국에서 뭐가 편해?

서효진: 아무래도 익숙하잖아요. 많이 생각을 안하고 다녀도, 뭘 먹는다든지 사러 다닐 때... 외국에서는 아무래도 신경을 써야하잖아요. 행동하는 거라든지 사람한테 말할 때도 사실 모국어가 아니니까 신경이 쓰이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진로를 한국에서 정하고 싶어하기도 한다. 물론 이들의 거주국이 한국과 관련하여 경제 수준이 어떠한가도 이들의 향후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태국에서 온 한인 청소년들의 경우 한국 국적으로 한국에서 직업을 구하고 싶어하며, 군대에 복무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또한 여러 언어를 잘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기업에서 통역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었으며, 양국을 매개하는 문화 중개인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손규찬: 네. 직업은 한국에서 구하고 싶어요. 여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싶어요.

박종순: 저는 직장보다 군대 쪽으로 가고 싶어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ROTC를 해서 장교로 가고 싶어요.

질문자: 그러면 전공을 무엇을 하고 싶어요?

박종순: 저는 기계공학을 하고 싶어요.

손규찬: 저는 경영을 하고 싶어요.

박종순: 군대에서는 통역병을 하고 싶어요. 영어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손규찬: 저는 삼성이나 다른 대기업에서 제가 태국어도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다음달에 삼성에서 3주 동안 통역하기로 했어요.

박종순: 저도 처음 왔을 때 삼성에서 3일정도 통역했어요.

손규찬: 태국에 삼성이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저는 태국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 도움을 주고 싶어요. 한국 사람이 태국어를 잘 하지 못할 때 도움을 줄 수 있고, 한국이 태국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문화중개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V. 요약 및 결론

이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 기타국가 출신의 해외 한민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체성의 의미 및 진로선택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민족정체성과 관련하여 재미한인 청소년들의 경우 한국어 사용과 함께 한국 방문은 한국문화를 습득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재미한인 청소년들은 한국인의 핏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미국에서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느끼고 한국인의 후손이라고 느끼지만 한국에서는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하였다.

조선족 청소년들의 경우도 스스로 중국인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족이란 개념이 이들의 정체성에 크게 중요시 되지 않는 것이다. 즉,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민족 정체성보다 강하다. 하지만, 중국에서 중고등학교를 조선족 학교를 다닌 학생들의 경우에는 확실히 민족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좀 더 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과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한국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두 가지 모두를 의식하게 된다.

재일한인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의 영향으로 한민족(한국인) 정체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민족 정체성에 대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여진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고, 주민등록법상 한국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여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생활경험은 한국에 체류하면서 자신은 더 한국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해지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들은 한국에서도 귀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일본에서도 정주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이중의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재일한인으로서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닌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느끼기도 하지만 자신은 두 나라를 매개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인 위치에 있다고 인식하기도 한다.

독립국가연합 출신 한민족 청소년들의 경우 한국어를 배우면서 점차 자신의 민족정체성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기도 한다. 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다가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서 같은 민족임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음식도 비슷하고 김치를 먹는 것도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민족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지 한국인의 정체성과 동일시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정체성은 고려인으로 대표된다고 말하고 있다. 고려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처음에는 이것도 저것도 확실치 않은 부정적 정체성이었지만 한국에 와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보다 풍부한 정체성으로 거듭나게 된다.

여러 나라에서 거주하거나 거주했던 기타 국가 출신 제보자들은 각기 국가에 명확히 속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한국에 대해서도 유아, 청소년 상당 기간을 떨어져 살아서 그런지 국가를 기반으로 한 명확한 정체성을 느끼기는 어려운 듯 하였다. 자신의 출신국이나 성장국이 다르며 성장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그 국가의 대표적인 학교가 아닌 외국인 학교에서 교육받은 경우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모호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아예 “글로벌사회의 시민”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반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문화적으로 한국과 묶여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민족적 배경이 향후 진로에 어떻게 개입되는지를 알아보았다. 재미한인 청소년들의 경우 한국어를 배우면 향후 진로 선택에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특히 사업 분야에서 국제적인 업무를 담당하면 한국에서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때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한국적 정서를 개발시키는 것과 한국 역사를 아는 것도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조선족 청소년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조선족이라는 지위는 한국어 습득, 한국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한국 유학을 위한 각종 정보에 있어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 그리고 한국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능력은 이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생활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민족의식”이나 “한민족”의 연대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자신의 처지에서 자기 개인의 성취를 위한 최선을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한민족이라는 통로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 이들의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기도 한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재일한인 청소년들의 경우 대체로 한국에 남거나 한국 관련 일을 하는데 긍정적이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그리 좋지 않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된 경우에도 이후 한국과 지속적인 접촉을 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이들은 한국과 일본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하며, 한 곳에 정착하기 보다는 “왔다갔다”하는 삶을 살고 싶어한다.

고려인 청소년들의 경우 대부분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한국과 관련된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한다. 러시아에서의 구직 가능성이 낮은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의 러시아 관련 기업에 취직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

한편, 기타국가 출신 제보자들은 대학 이후 한국에서 진로를 계속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다. 특히 대학원을 외국에서 선택하는 경우에는 거의 그 곳에 영구히 머물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진로 결정에 있어서 한국 문화에 익숙한 점을 들면서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제보자도 있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진로를 한국에서 정하고 싶어하기도 한다. 물론 이들의 거주국이 한국과 관련하여 경제 수준이 어떠한가도 이들의 향후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통적으로 이들은 외국에서 살 때는 한민족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지만 한국사회에 들어와서는 더욱 한국인과 다름을 느끼게 된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주변적 정체성을 겪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호한 정체성을 인식한다. 하지만 역으로 자신들의 중간자적 위치는 모국과 본국을 매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에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특히 출생

국가가 부모와 다르고 성장한 환경도 다른 청소년들은 자신들을 글로벌사회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내세우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한국어나 한인이라는 배경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과 자신의 거주국을 매개하여 사업을 하거나 미래 직업을 구상하기도 한다. 결국 이들은 이념적으로 한민족과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혈연적 연결성 때문에 한민족에 귀속감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보다 현실적으로 또 상황에 맞추어 자신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거나 혹은 새롭게 활용하려는 측면이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해외 한인 이민자들은 모국을 떠나 거주국에서 근거지를 두고 생활하게 되지만 모국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된다. 이들의 거주국과 모국 사이의 에이전트 역할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및 이주민들의 향후 역할에 대해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이주민이 한국으로 이주하여 가족을 이루고 자녀들이 성장해감에 따라 이들은 현재 거주국인 한국과 자신의 모국 혹은 부모의 모국간의 관계를 연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들로 하여금 일방적인 한국사회에의 동화를 강조하며 이들의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배경이 고려되지 않은 보편적인 한국인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들이 적극적인 국가간 에이전트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의 모국에 대한 관심과 연계가 적절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준규. 2007. “코리안아메리칸의 디아스포라적 정체성: 뉴욕 재미 한인 문화단체를 중심으로.” 『북미주 한인의 역사(하)』. 국사편찬위원회. pp. 52-77.
- 윤인진 외. 2005. 『재외동포 차세대 현황과 육성방안: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재외동포재단.
- 윤인진. 2000. “남북한 사회통합과 재외동포의 역할.” 《통일문제연구》 12(1): 5-24.
- 이정훈 · 윤인진. 1998. “재일동포의 민족교육과 모국수학의 현황과 발전방안.” 《재외한인연구》 7: 175-222.
- 이창기 · 김중. 1994. “모국수학생의 민족정체감 연구.” 《서울대 학생연구》 29(1): 130-137.
- 임채완 · 전형권. 2006. 『재외한인과 글로벌 네트워크』. 한울아카데미.
- 조혜영. 2001. “외국어로서의 ‘모국어’학습과 민족정체성: 재미한인 학생들의 한국어 수업 참여 과정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34(2): 181-209.
- 최우길. 1999.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 변화에 대한 소고.” 《재외한인연구》 8: 187-241.
- 한준상. 1995. “교포자녀 모국방문 교육의 발전과제.” 『해외한민족 교포자녀와 민족 교육』.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pp. 45-57.
- Barth, Fredrik. 1969. “Introduction.” Pp. 9-38 in *Handbook of Ethnic Groups and Boundaries: The Social Organization of Culture Difference*, edited by Fredrik Barth. Boston: Little, Brown & Company.
- Clifford, J. 1994. “Diasporas.” *Cultural Anthropology* 9(3): 302-338.
- Fischer, Michael M. J. 1986. “Ethnicity and the Post-Modern Arts of Memory.” Pp. 194-233 in *Handbook of Writing Culture: The Poetics and Politics of Ethnography*, edited by J. Clifford and G. E. Marcu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lick Schiller, Nina. 1999a. “Transmigrants and nation-states: Something old and something new in the U.S. immigrant experience.” Pp. 94-119 in *Handbook of The handbook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 American experience*, edited by Charles Hirshman, Philip Kasinitz, Josh DeWind.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_____. 1999b. “Who are these guys? A transnational reading of the U.S. immigrant experience.” Pp. 15-43 in *Handbook of Identities on the move: Transnational processes in North America and the Caribbean basin*, edited by Liliana R. Goldin. Albany, New York: Institute for Mesoamerican Studies.
- Glick Schiller, Nina, Linda Basch, and Cristina Blanc-Szanton. 1992. “Towards a definition of transnationalism: Introductory remarks and research Questions.” Pp. 9-15 in *Handbook of Towards a transnational perspective on migration: race, class, ethnicity, and nationalism*, edited by Nina Glick Schiller, Linda Basch and Cristina Blanc-Szanton. New York: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 _____. 1995. “From immigrant to

- transmigrant: Theorizing transnational migration.” *Anthropological Quarterly* 68(1): 48-63.
- Glick Schiller, Nina, and G. Fouron. 1998. “Transnational lives and national identities: The identity politics of Haitian immigrants.” Pp. 130-161 in *Handbook of Transnationalism from below*, edited by Michael Peter Smith and Luis Eduardo Guarnizo. New Brunswick and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 Hall, Stuart. 1996. “The Question of Cultural Identity.” Pp. 595-643 in *Handbook of Modernity: An Introduction to Modern Societies*, edited by In Stuart Hall, David Held, Don Hubert & Kenneth Thompson. Blackwell Publishers.
- Lavie, S., and T. Swedenburg, 1996. “Introduction.” Pp. 1-25 in *Handbook of Displacement, diaspora, and geographies of identity*, edited by S. Lavie and T. Swedenburg.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Okamura, J Y. 1981. “Situational ethnicity.” *Ethnic and Racial Studies* 4(4): 452-172.
- Portes, A., and R. G. Rumbaut. 1996. *Immigrant America*.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afran, W. 1991. “Diasporas in modern societies: Myths of homeland and return.” *Diaspora* 1(1): 83-99.
- Takezawa, Yasuko I. 1995. *Breaking the Silence: Redress and Japanese American Ethnicit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Tololyan, K. 1996. “Rethinking diaspora(s): Stateless power in the transnational moment.” *Diaspora* 5(1): 3-36.

조혜영은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서 교육인류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교육인류학, 청소년문화, 해외한인청소년, 다문화사회, 청소년정책 등이다. 전자우편은 jhy@nypi.re.kr이다.

박동성은 동경대학교에서 인류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마을연구, 사회구조, 공유자원, 사회과교육, 청소년문화, 다문화사회 등이다. 전자우편은 ekrhr@snu.ac.kr이다.

양한순은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서 문화인류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관심분야는 중국의 사립학교, 중국의 시장경제와 근대성, 그리고 관광인류학이다. 전자우편은 hansuny@ajou.ac.kr이다.

최진숙은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lbany에서 언어인류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언어인류학, 라틴아메리카 사회와 문화, 다문화주의, 인종과 종족성 등이다. 이메일은 tostijin@gmail.com이다.

(2010. 4. 27. 접수; 2010. 5. 12. 수정; 2010. 6. 7. 채택)

Ethnic Korean Youths Abroad and Their Meanings of Ethnic Identity: Focusing on In-depth Interviews with Ethnic Korean Youths Visiting Korea

Hye-Young Jo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Dong-Sung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Han-Sun Yang (Ajou University)

Jin-Sook Choi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meanings of ethnic identity of ethnic Korean youths abroad. Especially, this study focuses on how they come to recognize Korean ethnic identity and what the Korean backgrounds and relationships mean to their lives. For this,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ethnic Korean youths from U.S., China, Japan, CIS, and other countries, who currently visit and stay in Korea for short or long term. Participants are eleven from U.S., eight from China, seven from Japan, nine from CIS and nine from other countries, which are Indonesia, Philippine, Thai, Germany, Canada and Brazil. This study, most of all, attempts to shed light that ethnic identities are changeable entities which are emerged through life process and situationally recognized. In addition, we try to show that ethnic Korean youths adopt ethnic identity or Korean backgrounds strategically in forming their future career plan.

Key Words: Ethnic Korean Youths Abroad, Ethnic Identity, Career Plan

한국이민학회 정관

제 정: 2007년 2월 2일

1차 개정: 2009년 7월 1일

2차 개정: 2010년 6월 14일

【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Association (약칭: KIMA)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국경을 넘는 인간의 이동에 따른 제반현상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학술활동을 활성화하고 국제학술교류를 촉진하여 인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 연구실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이민에 관한 연구
2. 국내 및 국제 학술발표회와 토론회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결과물의 간행
4.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5. 기타 학회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 제2장 회원 】

제5조 (회원 구분 및 자격)

- ① 본 학회의 회원은 개인회원, 기관회원 및 도서관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개인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자

격을 갖추고 본 학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1. 정회원은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이민과 관련된 분야를 강의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과정 중의 대학원생, 이민분야에 관심이 있는 법조인,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이민분야에 관심을 가진 석사과정의 대학원생으로 한다.
3.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또는 준회원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이민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국제기구 또는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학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특별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박사과정의 대학원생인 경우에는 정회원으로 본다.
- ③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 ④ 도서관회원은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와 연구결과물을 구독하고자 하는 도서관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② 회원은 학회지를 무상으로 배부 받는다.
- ③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학회가 주관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학회의 목적과 명예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제명 및 자격정지)

- ①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일을 하였거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 제3장 임원 】

제9조 (임원의 구분 및 임기)

- ①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4인

3. 감사 2인
4. 이사: 당연직 이사 이외에 선임직 이사를 50인 이내로 하되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5. 상임이사: 20인 이내로 하되, 총무, 편집, 연구, 기획, 섭외, 국제, 기타 회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② 전임 회장, 전임 부회장, 차기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차기회장은 상임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이 전임 회장의 유고로 승계한 경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승계한 잔여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0조 (회장의 선출)

- ①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가 차기 회장이 된다. 단, 제1차 투표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제1차 투표의 최고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표를 얻은 자로 정한다.
- ② 단일후보의 경우에는 가부투표를 실시하며, 총회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선출된다.

제11조(기타 임원의 선출)

- ①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②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권한과 의무)

-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1개월 이내에 차기 회장이 회장의 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총무이사는 학회의 일반운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예산 및 결산, 법인 등록 및 변경, 기타 다른 상임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④ 편집이사는 학회지 및 기타 연구간행물 발간을 담당한다.
- ⑤ 연구이사는 정기학술대회의 기획 및 개최, 제17조에 의한 연구회의 운영, 기타 학술활동을 담당한다.
- ⑥ 기획이사는 학회의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정책토론회 기획 및 개최, 국제세미나 개최, 기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⑦ 섭외이사는 회원유치,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뉴스레터 제작, 기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⑧ 국제이사는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⑨ 감사는 학회의 예산·결산과 사업을 감독한다.

【 제4장 조직 】

제13조 (총회)

- ①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두며,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 ②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③ 정기총회는 매년 정기학술대회일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정회원 20인 이상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 ④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결한다.
 -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 2. 회장과 감사의 선출
 - 3. 사업계획의 승인
 - 4. 결산의 승인
 - 5. 본 학회의 해산
 - 6. 기타 본 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 ⑤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관의 개정은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본 학회의 해산은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4조 (이사회)

- ① 이사회는 감사를 제외한 제19조 제1항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 ② 이사회는 의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안
 - 2.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정관의 개정안
 - 3.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정회원의 가입자격 인정
 - 4. 제8조에 의한 회원의 제명 및 자격정지
 - 5. 회원에 대한 포상
 - 6. 기타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안건의 심의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④ 이사회 의결은 출석한 임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상임이사회)

- ① 본 학회의 일반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 ③ 상임이사회는 학회 운영을 위한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 ④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 1. 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안
 - 2. 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정관의 개정안
 - 3. 회원의 회비
 - 4. 본 학회의 명의로 수행하는 연구수탁사업 등의 전체 사업금액 중 학회귀속분의 비율
 - 5.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상임이사회에서의 의결은 출석한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편집위원회)

- ① 본 학회의 학회지 및 연구결과물의 간행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이사 중 회장이 임명한다.
- ③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학회지 및 연구결과물의 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연구회)

- ① 본 학회의 연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공 또는 연구주제별 연구회를 둘 수 있다.
- ② 연구회의 운영은 연구이사가 담당한다.
- ③ 연구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5장 재정 】

제18조 (재산)

- ① 본 학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 1. 회원이 납부한 회비
 - 2. 국가 기타 공공단체의 보조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에 따른 수입금
 4.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5. 본 학회의 기금
 6. 기타 수입
- ② 제5조의 회원 구분에 따른 회비의 금액은 상임이사회가 결정한다.

제19조 (재산의 관리)

- ① 본 학회 재산의 보존 및 관리는 회장이 관장한다.
- ② 회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재산의 처분,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2. 제4조 이외의 사업과 관련하여 본 학회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또는 본 학회의 권리 포기하는 행위(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기채(起債) 또는 금전차입(상임이사회가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재정보고) 회장은 결산 등 본 학회의 재정내역을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장 해산 】

제22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3조 (재산귀속)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국가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제 장: 2008년 8월 1일

일부개정: 2010년 6월 14일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한국이민학회(이하 학회라 칭함) 회칙 제16조에 규정된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 및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편집위원의 임기 및 선임)

- ① 편집위원장은 회장단의 협의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전체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동시에 바뀌지 않도록 한다.
- ③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본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이민학》 원고의 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
2. 《한국이민학》의 편집 및 출간
3.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

제5조 (운영)

- ① 본 위원회는 《한국이민학》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평가자를 선임·위촉하고 평가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② 《한국이민학》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접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 ③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⑤ 편집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한국이민학회 회장에게 청구한다.
- ⑥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장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 ⑦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으며, 편집간사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제1조 이 내규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이 내규는 총회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이민학》 발간지침

제 장: 2008년 8월 1일

일부개정: 2010년 6월 14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이민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이민학》(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접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한국이민학》의 발간주기)

- ① 《한국이민학》은 연간 2회(6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호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한국이민학》의 발간번호는 제○권 제○호로 한다. 《한국이민학》의 발간연도에 따라 “제○권”의 숫자가 순서대로 부여되며, 같은 연도에 발행한 《한국이민학》의 순서에 따라 “제○호”가 부여된다.

제3조 (편집위원회)

- ① 한국이민학회 회칙 제16조에 규정된 편집위원회가 《한국이민학》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접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맡는다.
-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및 20명 이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정관 제16조 제2항에 의거 편집이사 중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부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논문투고)

- ① 《한국이민학》에 게재할 논문의 주제는 한국 및 세계의 이민 관련 이론적·경험적 연구여야 하며, 논문투고자의 자격은 회원으로 제한한다.
- ② 논문의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제출된 논문은 국내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현재 게재를 심의 중이어서는 안 된다. 단, 외국어로 작성되어 저명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로 번역하여 실을 수 있다.

- ③ 논문 제출 시 원고는 워드프로세서(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kimanet2007@gmail.com 로 투고신청서와 함께 전자메일로 송부한다. 투고신청서는 본 학회 홈페이지 (<http://www.kimanet.org>)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원고와 함께 송부한다.
- ④ 제출된 논문은 오·탈자의 수정을 제외한 내용상의 편집과 수정을 하지 않고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논문투고자가 진다.
- ⑤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⑥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작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순서대로 기재한다. 두 사람 이상의 복수 저자일 경우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표기한다.
- ⑦ 기타 논문의 투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의뢰)

- ①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부위원장 및 해당 전공의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논문의 원고를 해당분야의 편집위원에게 할당하고, 심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한다.
- ② 해당분야 편집위원은 할당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실적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해당분야 편집위원이 추천한 심사위원 중 3인을 선정하여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소집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 ④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출신학교, 소속기관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논문의 심사)

- ① 논문의 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게재가”, “부분수정”, “근본수정”, “게재불가” 중 하나의 심사결과와 관련 의견을 작성하여, 의뢰 받은 기간(통상 2주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분수정이라 함은 수정 후 게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의미하고, 근본수정이라 함은 수정 후 재심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의미한다.
- ② 위촉받은 심사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분야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논문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각자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논문심사의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논문의 체계와 완성도
2. 연구내용의 독창성과 창의성
3. 연구내용의 학술적·정책적 기여도
4. 연구방법의 적합성
5. 기타 편집위원회가 정한 사항

제8조 (논문게재의 판정)

① 논문게재의 판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가, 가, 가 가, 가, 부분 가, 가, 근본 가, 가, 부	가, 부분, 부분 가, 부분, 근본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근본	가, 부분, 부 가, 근본, 근본 가, 근본, 부 부분, 부분, 부 부분, 근본, 근본 부분, 근본, 부 근본, 근본, 근본 근본, 근본, 부	가, 부, 부 부분, 부, 부 근본, 부, 부 부, 부, 부

※ 가: 게재가, 부분: 부분수정, 근본: 근본수정, 부: 게재불가

② 해당분야 편집위원은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논문 게재 여부를 판정하고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 (수정후게재 판정 투고논문의 게재)

-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수정후게재”의 판정을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기한 내에 수정·보완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② 수정·보완된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는 해당 편집위원의 판단을 기초로 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의 판단을 기초로 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재심 판정 투고논문의 게재)

-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재심”의 판정을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기한 내에 수정·보완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동 규정은 여러분의 지적에

따라 삭제)

- ② 수정 · 보완된 논문의 재심은 초심에서 부분수정, 근본수정 또는 부의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들에게 맡긴다.
- ③ 재심을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기간(통상 1주일) 이내에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의 재심 결과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수정 · 보완된 논문의 재심 결과, 초심에서 “게재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심사위원의 2인 이상이 “게재가”로 평가한 경우에는 논문 게재를 확정한다.

제11조 (게재불가 판정 논문의 심사 재신청)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신청”임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으며, 이때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은 당초의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한 위원으로 한다.

제12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

- ① 논문투고자는 심사 과정이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상세한 사유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는 이의 제기 사유를 검토한 후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재심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사유를 이의 제기자에게 통보한다.
- ④ 재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5조 이하에 의거, 새로운 투고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한다. 이때 심사위원은 원래 심사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한다.

제13조 (표절 지적의 처리)

- ① 편집위원회는 표절이란 의견이 제시되고 표절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심사를 중단한다.
- ② 이때 편집위원회는 표절 지적 내용과 관련 자료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③ 논문투고자는 다툼이 해결되었음을 증빙하는 내용의 자료를 첨부하여 재투고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유지)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와 논문투고자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 (판권 등)

- ① 《한국이민학》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한국이민학회에 귀속한다.

- ② 논문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 또는 발간물 등에 게재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이민학》에 게재된 논문임을 밝혀야 한다.

제16조 (논문게재예정증명 등) 논문게재예정증명 또는 논문게재증명은 각각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 또는 《한국이민학》가 발간된 후 논문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한다.

제17조 (보칙) 《한국이민학》의 발간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원고 제출 및 집필 요강

원고 제출 및 게재

1. 《한국이민학》은 한국 및 세계 이민문제와 관련된 이론적·경험적 연구들을 싣고 있다.
2. 《한국이민학》에 게재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가진 것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단, 국제 저명 학술지에 외국어로 발표된 논문은 한국어로 번역하여 게재할 수 있다.
3. 《한국이민학》은 수시로 논문을 접수한다. 《한국이민학》에 투고를 원하는 사람은 원고를 워드프로세서(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한국이민학회 사무국’(kimanet2007@gmail.com)으로 투고신청서와 함께 전자메일로 송부하여야 한다. 투고신청서는 본 학회 홈페이지(<http://www.kimanet.org>)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원고와 함께 송부한다.
4. 제출원고는 한국어로 쓰여진 것으로, 다음 원고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5. 접수된 논문은 심사위원 3인 이상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
6. 게재 결정 이후 투고자는 원고를 수정한 후, 최종원고를 담은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한다.

원고 작성지침

1. 원고 논문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A4 용지에 단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원고의 분량은 각주, 참고문헌, 도표 등을 포함하여 25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연구단편(research notes)은 10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원고는 국문으로 제목표지(논문제목·저자이름·요약문·핵심단어), 본문, 각주, 참고문헌, 표, 그림, 부록, 저자소개의 순으로 작성한다. 아울러, 영문으로 논문제목, 저자이름, 요약문(English Abstract), 핵심단어(Key Words)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5.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만 한자를 괄호 속에 함께 쓰도록 하고, 기타의 외래어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원문 뒤에 괄호 속에 함께 쓴다.
6. 원고의 제목표지에는 논문의 제목, 저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저자가 두 사람 이상인 공동연구의 경우 중간점(·)을 사용하여 옆으로 나란히 기재한다. 감사의 글, 연구비 지원기관, 교신저자 등은 *표를 하여 같은 면에 각주로 기재한다.

7. 논문의 국문 핵심단어와 영문 핵심단어는 3-5개 제시한다.
8. 국문과 영문 요약문(연구단편 포함)은 200자 원고지 5장 또는 A4 용지 단면 1/2장 이내로 작성한다.
9. 본문에서는 논문의 제목을 본문의 첫 장에 기재한다.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논문 심사위원이 저자를 알아볼 수 있는 서술은 삼가야 한다. 세부적인 본문 서술 요령은 다음과 같다.
 - 1) 본문은 내용의 구성을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3단계 정도의 소제목을 추천한다. 소제목은 I., 1., 1), (1), ① 형식으로 단계적으로 구성한다.
 - 2) 저술 인용방식은 저자의 이름과 저서의 출판 연도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인용 페이지를 기재하도록 한다. 같은 저술을 되풀이 인용할 때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
 - (1) 저자의 이름이 본문에 언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출판 연도를 괄호 안에 제시하고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름과 출판 연도를 모두 괄호 안에 제시한다.
예 1, “…… 설동훈(1999: 10)”; 예 2, “…… (설동훈, 1999: 10)”
 - (2) 저자의 이름이 외래어인 경우, 한글로 쓰고 원명은 괄호 속에 담는다.
예, “…… 그라노벤테(Granovetter, 1985)”
 - (3) 2인 공동저술일 경우, 두 사람의 이름을 모두 제시한다.
예, “…… (유길상·이규용, 2001)”
 - (4)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일 경우 첫 번째 인용에서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제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외”를 사용한다.
예, “…… (이규용·유길상·이해춘·설동훈·박성재, 2007)”과 그 이후 “…… (이규용 외, 2007)”
 - (5) 출판 예정인 저술을 인용할 때는 “출판예정”(또는 “forthcoming”)을 부기하고, 미간행물일 경우에는 “미간행”(또는 “unpublished”)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예, “…… (Gereffi, Spener and Bair, 2002 forthcoming)” 또는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0 미간행)”
10.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한국어 문헌은 저자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외래어 문헌을 알파벳 순으로 제시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 표기를 한다. 다음은 참고문헌 작성 원칙에 따른 예다.
 - (1) 도서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유길상·이규용. 200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유길상·이해춘·설동훈·박성재. 2007.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및 중장기 관리 체계 개선 방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Lin, Nan. 2002.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rnelius, Wayne A., Takeyuki Tsuda, Philip L. Martin, and James F. Hollifield (eds.). 2004. *Controlling Immigration: A Global Perspective*, 2nd Edi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ereffi, Gary, David Spener, and Jennifer Bair (eds.). 2002 (forthcoming). *Free Trade and Uneven Development: The North American Apparel Industry After NAFTA*. Philadelphia, PA: Temple University Press.
- (2) 학술지 게재 논문
- 박경태. 2001. “사회적 자본으로서 NGO의 역할과 아시아 이주노동자 문제: 필리핀과 홍콩의 NGO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52(겨울): 184-205.
- 설동훈·김윤태. 2004. “대만의 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체계.” 《중소연구》 28(3): 69-117.
- 이혜경·정기선·이정환·설동훈. 2002. “국내의 한국기업의 외국인력 관리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식 관리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6(3): 47-77.
- Granovetter, Mark.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3): 481-510.
- Brown, Jacqueline Johnson, and Peter H. Reingen. 1987. “Social Ties and Word-of-Mouth Referral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4: 350-362.
- (3) 단행본 수록 논문
- 이철우. 2004. “피로써 구별되는 국민들: 혼혈인과 한국사회.” 정인섭 편,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박영사. pp. 233-261.
- 町村敬志(마치무라 타카시). 1992.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と世界都市形成.” 梶田孝道編, 『國際社會學: 國家を超える現象をどうとらえるか』.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pp. 114-133.
- 森田桐郎(Morita, Kirirora). 1987. “資本主義の世界的展開と國際勞働力移動.” 森田桐郎編, 『國際勞働力移動』.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pp. 1-54.
- Bourdieu, Pierre. 1986. “The Forms of Capital.” Pp. 241-258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edited by John G. Richards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4) 번역도서
- 伊東順子(Ito, Junko). 2001. 『病としての韓國ナショナリズム』. 東京: 洋泉社. (김혜숙 역.
2002. 『한국인은 좋아도 한국민족은 싫다』. 개마고원).

Castells, Manuel. 1989. *The Informational City: Information Technology, Economic Restructuring, and the Urban-Regional Process*. Cambridge, MA: Basil Blackwell. (최병두 역. 2001. 『정보도시: 정보기술의 정치경제학』. 한울).

Weber, Max. 1946.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translated and edited by Hans H. Gerth and C. Wright Mil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5) 번역논문

Weber, Max. 1893. “Die landliche Arbeitsverfassung.” *Schriften des Sozialpolitik* 58: 62-86. (임영일 · 차명수 · 이상률 역. 1991. “농업노동제도.” 『막스 베버 선집』. 까치. pp. 289-314).

Weber, Max. 1946[1919]. “Politics as a Vocation.” Pp. 77-128 in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translated and edited by Hans H. Gerth and C. Wright Mil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6) 미간행 학위논문

최홍엽. 1997.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미간행).

Lee, Young Hwan. 1991. “The Effects of Individua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n Labor Market Outcomes: A Case Study of Korea.”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Stanford University.

(7) 학술회의 발표논문과 미간행 자료

설동훈.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권리와 생활실태.” 『한국아동권리학회 2006년 춘계학술대회: 아동 소외의 현장 —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한국아동권리학회. pp. 54-81. (숙명여자대학교 제2창학관 켄마홀, 2006 · 5 · 19)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0.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백서: 인권침해의 현장보고』.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미간행).

Schrecker, Ted. 1996. “The Borderless World and the Walled City: Metaphors for North American Social and Economic Life in the Twenty-First Century.” Paper Presented at a workshop a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Vancouver, BC, Canada, March 1996. (Unpublished).

(8) 인터넷 자료

서울특별시. 2001. 『서울 거주 외국인에 대한 여론조사』. (<http://www.metro.seoul.kr/kor2000/research/total/down/11/11-12.pdf>에서 가용. 인터넷; 2002년 7월 31일 접속).

U.S. Department of State. 2001.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01*. (Available from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4107.pdf>. Internet; accessed February 7, 2002).

ABCNEWS. 1998. "Women Forced to Work: Forced Abortions Are Conducted on U.S. Territory." *ABC News World Headlines*, April 1, 1998. (Available from <http://www.abcnews.com/sections/world/DailyNews/saipan0331.html>. Internet; accessed March 25, 1998).

(9) 동일 저자의 같은 해 저술

설동훈. 2002a. "국내 재중동포 노동자: 재외동포인가, 외국인인가?" 《동향과 전망》 52 (봄): 200-223.

_____. 2002b.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현대판 노예인가, 외국인 용병인가?" 《당대비평》 6(1): 53-68.

Petras, Elizabeth McLean. 1980a. "The Role of National Boundaries in a Cross-National Labour Market."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4(2): 157-195.

_____. 1980b. "Towards a Theory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 New Division of Labor." Pp. 439-449 in *Sourcebook on the New Immigration: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dited by Roy Simon Bryce-Laporte. New Burnswick, NJ: Transaction Books.

11. 표와 그림은 별지에 작성하고, 제목은 표와 그림의 위에 적는다. 주는 "주:"라고 시작하고, 출처는 "자료:"로 시작하여 표와 그림의 아래에 적는다.
12. 이 요강에 미비된 기타 사항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발행한 《한국이민학》 제1권 제1호의 관례에 따른다.
13. 원고 작성에 대한 문의처

☎ 561-75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 연구실 내 한국이민학회 사무국

전자우편: kimanet2007@gmail.com

전화: (063) 270-2917

한국이민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정: 2010년 6월 14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이민학회(이하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이민학》(이하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학술지의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들에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는 모든 사람과 그 저작물, 그리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논문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우리 학회를 통해 투고,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윤리규정

제4조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고 발표하는 모든 저자는 학회 정관에 천명된 목적의 달성과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본인의 학자적 양심을 따라 독창적인 논문을 작성·투고하며 본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위반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학회의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 ①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사회상규에 반하여 논문 출판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 (여기서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변조”는 연구 재료나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일정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아무 기여도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함).

- ② 전호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③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6조 (편집위원의 윤리적 의무) 본 학회의 편집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이나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과 관계없이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만을 근거로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⑤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⑥ 저자는 편집위원장에게 투고한 논문에 대해 특정한 인사를 심사위원으로부터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내용을 본 후 결정해야 한다.

제7조 (논문 심사위원의 윤리적 의무) 본 학회의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 심사를 위촉 받은 모든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① 모든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심사 의견서를 편집위원회에 보내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곧바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높은 수준의 학술적 기준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논문의 내용과 결과의 해석, 설명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자신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 저자와의 개인적 친분 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에 보내는 심사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심사위원은 논문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요구되는 특별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되며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심사 의견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논문이 학술지를 통해 발표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 ⑤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존의 연구가 정확하게 인용되어 있는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논문의 내용이 다른 논문과 같거나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 (논문 저자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전조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논문 저자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①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 ② 논문이 학술지에 이미 발표되었을 경우 인터넷에서 논문 삭제
- ③ 학회 홈페이지 및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위반 사실 공시
- ④ 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에 위반 사실 통보

제9조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전조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①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 ②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으로부터 해촉 및 재위촉 영구 금지
- ③ 학회 홈페이지 및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위반 사실 공시
- ④ 윤리규정을 위반한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의 소속기관에 위반 사실 통보

제10조 (이의 신청) 당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학회는 이를 판단할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 회원 중에서 5명으로 구성한다.

제12조 기타 본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상규에 따라 판단한다.

제13조 본 규정은 2010년 6월 14일자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 《한국이민학》은 한국이민정책발전재단의 지원을 일부 받아 출판되었다.

한국이민학 제1권 제1호

인쇄일: 2010년 6월 30일

발행일: 2010년 6월 30일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 연구실 내 한국이민학회 사무국 ☎ 561-756

전화: (063) 270-2917 팩스: (063) 270-2916

전자우편: kimanet2007@gmail.com

인터넷 홈페이지: www.kimanet.org

출판인: 윤관백

출판처·인쇄처: 도서출판 선인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324-1 꽃마루 B/D 1층 ☎ 121-050

전화: (02) 718-6252 팩스: (02) 718-6253

전자우편: sunin72@chol.com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

값 10,000원

ISSN 2093-6044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Vol.1 No.1 2010

Articles

The Employment Permit Program for Foreigners in Korea, 2004-2010:

Issues and Prospects

■ Dong-Hoon Seol

An Analysis of the Foreign Workers Labor Market in Korea

■ Kyu-Yong Lee

Statelessness: The Worldwide Situation and Global Responses

■ Chulwoo Lee

Politics of Immigration in the Imperial Japan:

The Case of Immigrant Voting Rights for Chosun Immigrants

■ Choonghoon Lee

Ethnic Korean Youths Abroad and Their Meanings of Ethnic Identity:

Focusing on In-depth Interviews with Ethnic Korean Youths Visiting Korea

■ Hye-Young Jo, Dong-Sung Park, Han-Sun Yang, and Jin-Sook Choi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Association